

2-1. 남북여성교류에서 경험한 차이와 연대

첫째는 남북여성교류를 통해 그동안 학습을 통해 막연하게 알고 있던 북한여성들을 직접 만나 접촉하고 대화하면서 발견하게 된 남북여성의 이른바 이질성과 동질성, 그리고 차이와 닮음의 문제이다. 남북여성교류는 1991년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여성들의 지원으로 민간차원에서 최초로 판문점을 통해 남과 북의 여성들이 교환방문하면서 1993년까지 4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3차 평양토론회를 통해 중군위안부 문제를 남북여성의 공동의 과제로 삼은 이래, 2000년 12월 동경에서 열린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을 통해 남북 여성들이 일본천황을 공동기소하는 데까지 그 교류의 성과가 진전되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남한의 여성들은 북한여성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이질성과 동질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회고한다.

1991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의 토론 주제 가운데 하나가 '가부장제와 문화와 여성'이었다. 여기서 남과 북의 여성들의 가부장제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다른지 나타났다. 남측에서는 이화여대의 조형교수(사회학과)가 발제를 통해,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 문화에 대한 개론적 설명과 함께, 남북의 여성들이 상호협력하여 가부장적 문화지배를 극복할 것에 대한 방법론적 모색에 초점을 두었는데, 특히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군사화의 영향이 가부장제 문화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에게 더욱 피해를 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sup>6)</sup>

이에 대해서 북측에서는 김선옥(당시 북 해외동포영접부 부부장, 여맹 중앙위원회 위원)은 가부장제 자체보다는 여성억압이 계급적 지배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여성에 대한 계급적 압박도 통치자들이 그들의 계급적 지배에 유리하도록 여성의 정치적, 법률적 권리를 박탈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며, 북한 여성은 주권행사 측면에서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했으며, 남녀간의 완전한 법적 평등을 실현하였고, 여성의 인신 구속 등 사회의 온갖 낡은 제도를 청산함으로써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7)</sup>

이것은 남북의 여성들이 만나서 가부장제에 대한 인식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 알게된 하나의 예이다. 이를 통해서 남한의 여성들은 가부장제 문화에 의해 억압속에 살고 있고, 북한의 여성들은 해방되었다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북한여성들의 제도적·법적 차원의 해방에 대한 공식적 선언과 현실사이의 모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어왔다.<sup>8)</sup> 북한사회와 여성들이 공적으로 표방하는 법적, 제도적 차원의 해방과 현실의 여성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근사치와 거리가 있는가를 아는 것은 북한여성들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를 위한 전제가 바로 북한여성(주민)과의 접촉, 북한문헌, 방송 등 매체 등과 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연관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북한문헌의 담화의 이중성'<sup>9)</sup>이라고 한다.

6.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여성의 통일 의식과 태도조사 및 통일 의식 함양방안 연구 : 평화통일과 여성의 과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연구용역), (1999), 135쪽.  
7. 같은 글, 140쪽.  
8. 북한여성들에 관한 이해를 돕는 자료로, 김귀옥, '현대 북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본 북한여성', 여성과 평화 제1호 (2000)를 참고하시오.  
9. 김창수, 멋진 통일운동 신나는 평화운동, 책세상 (2000), 52쪽.

김창수에 의하면,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 인민들을 동원해내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체제를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선전할 필요가 있었기에 북한의 현실과 그들이 내세우는 담화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것이 '북한문헌의 담화의 이중성'인데 북한의 처지와 담화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북한을 '타자화'하지 않고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중성을 이해하지 않고 통해 북한을 바라볼 때 또 다른 형태의 왜곡된 시각이 형성됨으로써 남과 북의 여성들의 차이를 중층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남북여성교류에 참석했던 남한의 여성들에 의하면, 교류를 통해 이전에 북한사회와 여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해와 고정관념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하게 됨을 밝히고 있다.<sup>10)</sup> 남북의 여성들이 여성해방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언어의 사용에서부터 개념이해<sup>11)</sup> 등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에서부터 중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연대까지 만남을 지속해 왔다는 것은, 특히 민간차원에서의 향후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에서 그 성과와 한계를 보면서 사례로 삼아 분석해볼 가치가 있다.

남북여성들은 교류를 통해 1992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남북여성들의 공동의 과제로 채택하여 식민지 지배의 청산과 배상문제 해결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한 한 이래, 남북의 생존자 할머니들이 함께 대면하여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 범죄를 고발하고(1992년 12월 동경, 일본의 전후 보상에 관한 국제 공청회), 비엔나유엔인권대회(1993년 6월) 등 국제회의에 공동으로 참가, 그후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까지 공동으로 대처해 왔다. 남북의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연대한 것은 각기 다른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린당한 여성의 인권회복과 식민지배청산과 배상 등의 공동의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만나 대화하고 이를 통해 상호신뢰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를 넘어서 여성들의 공동의 주제를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가 거듭되면서 점차 확인하게 된 입장과 관점의 차이, 추상적 차원의 평화논의, 남북한 정부의 입장에서 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함으로 인해 오는 긴장 등 토론회를 통해서 나타난 갈등을 극복하고 여성들의 대화를 지속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 더구나 1994년 김일성 주석 사후의 조문파동과 조-미 핵문제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 조-미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베이징과 동경 등에서 만나 대화를 지속하였다. 지난 10년간의 남북여성교류를 통해 남과 북의 여성들이 차이를 넘어서 연대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대화의 지속과 신뢰의 형성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공동의 과제를 통해서 만남을 지속하고 대화를 계속하였다. 대화의 지속은 상대방의 닮음을 발견하는 첫 번째 조건이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준다. 계속된 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서

10.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남북한 여성교류와 남한측 참석자의 태도에 대한 분석', 여성의 통일 의식과 태도조사 및 통일 의식 함양방안 연구, 154-160쪽.  
11. 예를들어, 남한여성들은 남국이 다른 제도하에서 살아오므로써 민족이 이질화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상호이해와 신뢰회복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북한여성들은 '동질성회복'이란 단어부터 그 개념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민족동질성 회복'이란 질적이 차이가 생긴 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인데,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았다고 해서 다른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북측은 대신 '민족대단결' 개념을 사용하여 '민족분열 과정에서 생긴 오해와 불신을 풀고 한겨레로서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화해와 단합으로 단일민족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의 책, 158쪽.

로 얼마나 다른지 차이가 나는지도 확인할 수 없고 막연한 추측과 가정, 이로부터 발생한 오해가 형성될 뿐이다. 신뢰는 구체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며 이해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대화가 지속될 수 있게 해주는 토대가 된다.

둘째, 입장의 차이를 넘어서 공동의 이해에 기반한 과제를 발굴하게 되었다. 갈등해결 방법론 가운데 하나가 갈등하는 양자에 있어서 '사람'보다는 '문제'에 집중하고, 서로 다른 '입장/명분'을 강조하기 보다는 '공동의 이해(이익)'를 발견하여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win-win 방식이 있는데, 남과 북의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통해 공동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젠다를 발굴할 수 있었던 것은 남북여성의 차이를 넘어선 연대를 위한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중재자 혹은 조력자의 발견이다. 남과 북의 여성들은 동북아세아의 평화를 염원하고 일본의 과거를 사죄하고 배상함으로써 고통당한 여성들을 인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일본여성들의 도움을 통해 대화를 시작하고 지속시킬 수 있었다. 특히 남북관계, 조-미관계가 경색되었을 때, 제3지역에서의 만남, 이들을 통한 의사소통의 지속이 없었다면, 아마도 여성교류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차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술적 요소는 중재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민화협의 기능 가운데 하나도 중재의 기능이다).

2.2. 새로운 형태의 북한인식 : 무관심과 북한혐오의식

현재 우리가 만나는 북한여성들은 일차적으로 이러한 공적인 담화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에, 여성교류를 통해서 남한 여성들은 이른바 '이질성'을 보다 심각하게 느끼게 된다. 한편 남한에 온 북한여성들(공적으로 북이탈여성주민)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만남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북한여성들이 (집단화된 의미에서) '우리'와 무척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처음의 호기심과 관심은 낮설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수용하게 하기도 하지만, 횟수를 거듭하고 그들과 크고 작은 이해가 얽힐수록 낮은 호기심은 '여전히' 낮은 거부감으로, 또 계속 되는 '다름'에 대한 확인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와 '다름'에의 느낌, 인식은 물론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남한에 온 북한여성(주민)과의 빈번해진 접촉을 통해 우리가 형성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북한에 대한 편견, 즉 '혐북(嫌北)의식'이다.

반소 반공주의의 전통적 냉전의식은 어느 정도 약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反北'이데올로기와 착종되어 비체계적이고 산만하면서 그로테스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새로운 형태의 '반북의식'은 통일비용 부담의식, 북한의 후진성, 서구화의 낮은 수준 즉, 촌스러움, 테러리스트 집단의 이미지, 비뚤어진 자존심 등 다양한 형태의 대북 혐오감을 반영한 '혐북(嫌北)의식'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2)</sup>

이러한 북한혐오의식이 남한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별로 없지만, 탈북자(여성들)들이 남한사회에서 취업 등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데서 드러난다. 매스컴을 통해 부각되는 성공한 몇몇의 탈북스타들을 제외하면 비슷하게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력서에 북한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직종여하를 떠나서 취업이 거의 거부당한다는 점이다.<sup>13)</sup> 탈북자들이

12. 조민, '남북화해협력시대 통일운동의 전개방향', 민주평통 '통일연구회' 제4차 정책포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0.12.20.) 자료에서.

남한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면 남북간의 교류가 활발해 지고 빈번하게 만나게 될 때 남한사람들이 북한사람들, 특히 북한여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지 추측하게 해 준다.

기본적으로 남한여성(사람)들이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여성(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의식은 무관심으로 보여진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에서 수행한 '여성들의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1000명의 여성들이 "만일 통일 후 북한주민이 귀하의 이웃에 살게 되는 것을 귀하는 환영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적극 환영'(17.1%), '조금 환영'(25.4), '그저 그렇다'(44.7), '조금 반대'(8.9%), '매우 반대'(3.9)로 나타났다.<sup>14)</sup>

이러한 무관심의 표현은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38.4%), 이산가족상봉(17.2)으로 대답한 것과 상당한 거리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sup>15)</sup> 여성개발원에서 수행된 의식조사의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의 민족이니까'에 62.9%의 상당히 높은 응답을 보였다.<sup>16)</sup>

우리는 그동안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하나의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를 가장 많이 내세워왔다. 그것은 진실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같은 민족'에 대한 개념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단지 '선언적'이고 '집단화'된 것이 아닌가 한다. 선언적이라 함은 '같은 민족' 혹은 '통일'의 문제를 여성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그것이 함께 이웃해서 사는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로 되돌아 왔을 때 무관심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무관심 속에서 북한사람들의 개별적 고유성과 차이, 그들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적 상황은 구체적으로 이해되거나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집단화되어서 특히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남한사람들보다 '못산다' 혹은 '(경쟁적이지 못해) 열등하다' 등의 우열을 가리는 차별의 논리를 강화하게 된다.

다시말해, 통일후 나와 함께 이웃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다는 것을 통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되어야 한다는 대답이 심각하게 고려해 보지 않고 그동안의 잘못된 안보교육과 언론의 영향으로 인해 형성된 '우리는 한민족이다'라는 선언적 차원의 민족주의적 정서에 의해 '쉽게' 선택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무관심은 자연스럽게 '북한 사람들은 잘 못산다' <촌스럽다>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 > (그래서) 부담스럽다 > 싫다'라는 태도로 발전할 수 있다.

2.3. 남한사회의 군사주의 문화, 그리고 '차이'·'다름'의 문제

여성평화운동에서 남한사회의 군사주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분단이 여성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추적을 하면서 비롯되었다. 가부장적 군사주의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사상의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성과 획일주의를 지적할 수 있다. 분단사회

13. 이것을 필자가 '평화를만드는여성회'를 통해 알게된 탈북여성의 경험담에 근거한 것이다. 예를들어 식당의 경우 취업하기가 어렵다. 취업의 경우라도 같은 일을 해도 일당을 적게주는데, 주인에게 항의했더니, 탈북여성이 남한의 다양한 음식종류를 잘 모르기에 바쁜 시간에 능률적으로 일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아기 돌보기 등의 일도 남한아기들을 잘 못볼 것같다는 이유로 거절당한다고 한다.

14.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같은 글, 39-40쪽.

15. 같은 글, 25쪽.

16.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평화운동의 현황 및 이론체계, 발전방향(보고서초고), (2000), 79쪽.

의 반공주의, 국가안보 제일주의 속에서 배타성과 획일주의는 '나와 적의 이분법'을 통해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발굴하고 감시하고 처벌함으로써 제거하려는 감시와 통제의 제도화를 구축하였다.17) 여기서 배타와 배제의 대상은 일차적으로는 북한/북한주민이며 남한내부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비전향 장기수)을 비롯하여 조선족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이고 또한 가부장적 군사주의 문화 속에서 여성 역시 중층적 차별과 폭력의 대상이다.

3. 차이와 다양성을 조직화하고 연대하기 위하여

3.1. 문화상대주의를 넘어서 인권·평화 등 보편적 가치를 획득한다.

차이를 넘어선 연대를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있다. 조혜정에 의하면,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원리로 '획일성의 복제'와 '다양성의 조직화'라는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 남북통일 혹은 '민족'의 사회통합은 두 개의 별도의 정치 경제 체제를 가진 두 국가의 통합이 아니라 그 동안의 근대사와 분단체제가 만들어 낸 여러 이질 집단을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정도로 통합해 낼, 곧 '다름'을 조직화해 낼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한다.18) 그에 의하면, 남과 북이 만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방식의 차이보다는 서로 만났을 때의 상황적 조건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는 자세와 그것을 해낼 능력일 것이라고 한다.19) 이것은 남한의 여성들이 의식조사를 통해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사람들과 이웃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또한 상황적 조건을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능력을 갖추려면, 위에서 언급된 '북한문헌의 담화의 이중성'을 인식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조혜정 교수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다양성'을 조직화해내는 것이다. 여성평화운동에서도 어떻게 다양성을 조직화해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비판20) 역시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즉 문화상대주의의 접근은 반공 반북주의적 편향에 의한 북한 비하 및 비판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서로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차이를 차이로 받아들임으로써 상호 공존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차이의 상호 공존 논리의 틀 안에서는 보편적 가치나 기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남한 혹은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에 기울어지게 된다고 한다. 즉 북한이나 남한이 갖고 있는 부정적 관행이나 대중적 의식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고, 북한에 존재하는 억압적인 반다원적 문화를 북한의 '특수성'으

17. 권혁범, '내 몸 속의 반공주의 회로와 권력', 우리안의 파시즘, 삼인, 2000; 홍성태, '50년 전쟁체제의 사회적 결과', 남북간 대립 사회체제의 동요와 새로운 갈등구조의 이해:상생적인 민족공동체의 구성을 위하여 (2000년 비판사회학대회(제3회) 자료집), 한국산업사회학회, (2000).  
18. 조혜정, '남북통일의 문화적 차원: '북조선'과 '남한'의 문화적 동질성·이질성 논의와 민족주의·진보주의 담론', 송자·이영선 편, 통일사회로 가는 길, 오름, (1996), 32쪽.  
19. 같은 글, 41쪽.  
20. 권혁범, '통일에서 탈분단으로: '민족동질성 회복'론 및 '민족번영'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당대비평 (2000년 가을 12호), 166-7쪽.

로 인정할 때 그것은 자칫하면 비민주적 가치체계를 정당화하는 암시를 하게 되어, 결국 무가치적, 몰가치적 특수론의 한계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다.

이렇게 문화 상대주의를 비판하는 권혁범 교수는, 이를 보편적 가치, 즉 '인권'의 틀에서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체계에 대한 동의를 내면화함으로써 북한의 사회 문화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는 관용의 태도를 가지면서도 그것의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차이' 속의 공존 혹은 '타자와의 공존'과 '차이의 극복'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는 윤리적 지침이 생긴다고 한다.21)

보편적 가치로서의 적극적 '평화' 역시 '통일'을 대치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비폭력적 갈등해결과 공생과 공존을 위한 절차와 과정에 관한 기술과 태도를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인권과 더불어 차이를 넘어 연대에 관한 가치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2. 다중적 정체성을 통해 다양성을 수용한다

차이, 다름에 대한 담론에서 종종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과도한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혈통중심의 민족주의이다. 그것이 저항적 민족주의건 배타적 민족주의건 우리들에게 '민족주의'와 '민족의식'22)을 형성하게 한 기저에는 '우리는 하나',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에의 강한 의식과 단일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다. 이러한 단일 민족, 같은 민족의식이 바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적 정체성은 내부적 통합의 논리를 제시하는 동시에 외부의 타자에 대한 배타성의 논리를 형성하는 근거가 되어왔다는 점에서 비판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평화운동의 과제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적 배타성을 형성하는 정체성에 관해 질문함으로써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청된다.

즉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는 한 민족, 하나다'라는 단일적 정체성(single identity)이 '차이'와 '다름', 그리고 '이질성'을 수용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단일정체성에 대한 집착이 주는 폐해는 국경이 개방되는 지구화의 흐름 속에서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조선족 차별, 외국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노동자 착취와 폭력행사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통일과정이나 통일이후의 북한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태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중적 정체성, 다양한 정체성의 형성에 대한 제안이 있다. 이 또한 민족중심의 정체성이나, 혹은 민족적 정체성을 정체성의 일부로 두고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논의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백낙청은 남과 북의 주민과 해외의 조선족(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등)을 포함하는 '다국적 민족

21. 같은 글, 169쪽.  
22. 이만열 교수는 조혜정의 위 글에 대한 논평에서 '민족의식'과 '민족주의'가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두 가지가 차별성을 두어야 하는데, 민족의식은 민족이 공유하는,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의식일반으로, '민족'의 통일을 논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이데올로기성이 부여되어 때로는 착취성을 띠, 그리하여 파시즘이나 나치즘에서 보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만열, '[문화와 사람의 통일]에 대한 논평 및 답변, 송자·이영선 편, 같은 책, 115쪽.

공동체(multi-national ethnic community)<sup>23)</sup>을 제안한다. 그가 말하는 '다국적 민족공동체'는 여전히 '민족'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적 정체성을 표방하고 있으며 그 공동체가 "민중적이고 자주적이며 개방적인 사회의 건설"을 통한 세계사적 의의를 추구하면서도, '한민족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동체적 정체성이 확대된다면 적어도 국내외에 거주하는 조선족에 대한 차별의식을 감소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

여성신학자 강남순은 "한 인간이나 집단 또는 사회의 정체성이란 고착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되고 생성 중에 있는 것, 즉 역사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아시아인/한국인/일본인"의 각자의 고유성만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형성되는 '단일정체성'이 아닌, 다양한 문화/가치관과 겹치고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분리되기도 하는 '복합정체성'(multiple identity)으로 나아가 할 때라고 한다. "21세기에 우리가 관심해야 할 것은 도착적인 집착이나 비현실적인 단일 정체성 추구가 아니라, 21세기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인류평화의 증진과 확장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가의 문제"<sup>24)</sup>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조혜정은 '다중적 주체'론을 펼치고 있다. 그는 '국민감정'이라는 주술적 단어가 다양한 사람들을 '국민'이라는 동일적 주체로 묶어<sup>25)</sup> 다양성·다원성이 발달하지 못하게 한 요소가 되었다고 보면서, (개개인의 욕망조차 관리 가능한 고도 기술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더 이상 본질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기 보다는 개개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구상의 인류공동체, 전지구적 시민 사회, 국가 공동체, 지역 공동체, 페미니스트 공동체 등 다양한 차원의 운명공동체가 생기고 다중적 주체 형성에 관한 논의가 일고 있는 시대에 나누어진 국토를 하나로 만드는 것을 지상 명제로 합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위험하다고 한다. 즉 다양한 형태의 상호의존성과 자율성과 유연성을 지닌 사회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sup>26)</sup>

한편, 임지현은 민족주의 담론의 생산자인 남과 북의 권력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었던 민중적 주체의 회복이라는 면에서 '다중적 정체성'<sup>27)</sup>을 제창한다. 그가 제안하는 다중적 정체성의 지향점은 전일적 민족적 정체성에 가져 억압되었던 성과 계급의 다른 정체성의 복원을 통한 민중의 다중적 주체성의 회복에 있으며, 이는 21세기 자본의 논리에 포섭되지 않는 민중(타자화된 우리와 우리화된 타자) 사이의 수평적 연대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논리에 입각해 있다고 한다.

한반도의 분단의 극복과 화해, 통일, 평화를 다룸에 있어서 정체성 문제를 여성평화운동/교육<sup>28)</sup>

23. 백낙청, "21세기 한민족공동체의 가능성과 의의",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작과비평사, (1998), 188-99쪽.  
24. 강남순, "21세기 아시아에서 '함께'하는 여성신학", 「아시아 여성, 신학과 문화」 아시아기독교여성문화연구원 소식지 2000년 봄호, 17쪽.  
25. 조한혜정/김수행, '반공/반제 규율사회의 문화/권력-한 남한 지식인의 탈북지식인을 향한 말걸기/준전시 체제적 국가주도 발전과 근대적 주체형성', 조한혜정·이우영 엮음, 탈분단시대를 열며 : 남과 북, 문화 공존을 위한 모색, 삼인, (2000), 158쪽.  
26. 조혜정b, '분단과 공존 : 제3의 공간을 열어 가는 통일 교육을 지향하며', 조한혜정·이우영 엮, 같은 책, 347쪽.  
27. 임지현, "한반도 민족주의와 권력담론-비교사적 문제제기", 당대비평 2000년 봄호(통권 10호), 삼인, 203-206쪽.  
28.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ice-breaking(서먹함 깨기) 단계에서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나의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문화지도그리기'라는 것이 있다. 나를 중심으로 하여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다양성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를 그룹 속에서 소개하고 다른 참여자의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안에 얼마나 다양함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준다.

의 주제과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다원적 이해가 민족의 상층인 분단의 극복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지구적 차원의 민중의 연대, 인도주의와 평화주의로의 지평의 확대를 촉매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3.3. '소수자' 의식을 통해 연대성을 확장시킨다.

다중적 정체성을 갖는다 함은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다원성의 확인은 '차이'를 '차별'로 전환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관용은 필리프 사시에의 말대로 "내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용인하는 것, 즉 내가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대로 용인하는 것"<sup>29)</sup>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앞에서 지적한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비판점이 다중적 정체성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중적 정체성의 형성에만 머무르면, 즉 차이와 다름은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용과 공존 그 자체에 머무르고 더 이상의 연대를 위한 행동을 추동해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존(coexistence)/'함께 있으면서 존중함'(정화열)은 차이와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보다는 차이와 다름을 '존중'할 때 가능해 지는 것이다. 영어로 표현해서 living together with respect for difference라고 하는데, 이러한 존중은 '연대성'이라는 실천을 통해서 사회화된다. 물론, 다중적 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우리사회에 확산시키는 것도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럼에도 연대성을 고려한다 함은 우리 선택하는 정체성 인식이 가치중립적 혹은 비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지향점을 노정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소수자와의 연대를 뜻한다.

소수자와의 연대는 '자신을 소수자로 인식하는 전환(conversion)'을 통해 진정으로 가능해 질 것이다. 소수자, 마이너리티는 숫자의 의미보다는 권력관계에서 파생되는 개념이다. 여성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소수자이다. 따라서 여성이 권력관계에 있어서 소수자 의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한인섭 교수는 "사람은 누구나 (잠재적) 외국인인듯이, 누구나 (잠재적인) 소수자이다."<sup>30)</sup>라고 한다. 소수자, 약자의 가능성은 사회적으로는 확률의 문제이고 사회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한다. 오늘의 다수가 오늘의 소수자·약자와 일치하고 연대의 손길을 뻗치는 행위를 통해 공동체의 생존과 공생의 미덕이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수자 인식으로의 전환은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대한 비판적 성찰을 요구하는 하나의 도전이다. 자본주의의 경쟁사회에서 중심적 가치관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여 '주류 사회'에 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른바 학연과 지연 중심, 파벌·계파·가신정치 등은 바로 주류와 비주류를 나누고 갈라냄으로써 자신들의 이해를 지켜내는 데 사용되는 권력유지의 메카니즘이다. '선민의식' 또한 중심·주류의식을 반영한다. 유대인의 선민의식이나 게르만 민족주의, 일본의 신도이즘 역시 자기 집단의 유일적 배타성을 강조하여 타

29. Philippe Sassier, Pourquoi la tolerance,(왜 톨레랑스인가, 필리프 사시에, 홍세화 옮김), 상형문자, (2000), 16쪽.  
30. 한인섭, '왜 소수자·약자의 인권인가',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제주인권학술회의 2000), 사람생각, (2000), 20쪽.

집단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데 정당화한다. 또 우리 모두 '단군의 자손'이라거나,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의식, 가난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대열로 들어간다거나, OECD에 가입한다는 등은 모두 과도한 중심의식 혹은 중심에 편입되고자 하는 열등의식의 반영이다.

'소수자 인식으로의 전환'의 적극적 의미는 연대성에 있는데,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서 연대해야 할 대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과거 민중운동, 민중신학에서 '민중을 위한(for) 혹은 민중과 함께(with)'인가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 이것은 민중운동가와 민중신학자들의 운동과 실천으로서의 신학함(doing thology)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었다. 유대인이었던 한나 아렌트는 일생에 걸쳐서 pariah(최충민, 천민) 혹은 이방인(outsider)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인식을 운명적 혹은 지적인 성취로서 선택적으로 의식하고 살았다.<sup>31)</sup> 그의 정체성에 대한 선택은 일생에 걸쳐서 사회적으로 동화되거나 순응하지 않고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적극적 옹호, 즉 세계를 향한 사랑(amor mundi)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수자 인식으로의 전환은 개인의 선택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적 연대성의 확대를 위해 인권과 평화운동을 통해 조직화되어야 한다. 자신을 정치적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경제적 빈곤층과 일치시키는 인식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감수성을 통해 지금까지 추상적 차원에서 선언적으로 언급되던 '차이'를 넘어서 연대가 진정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3.4. 배려·돌봄의 윤리를 평화운동의 원리로 수용한다.

여성과 평화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여성의 평화운동에 대한 감수성은 본성적인가 혹은 양육하는 자로서의 여성의 경험을 통해 사회화된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여성의 평화감수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여성의 '돌봄(care)·배려'의 윤리이다. 여성학자 루디에 의하면, 여성의 생활상의 실천이나 노동방식이 생명을 돌보고 배려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평화운동에 대해서 더 강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모성적 사고 그리고 여성들이 가진 '돌봄·배려의 윤리'는 군사주의와 같은 기존의 지배적인 사고방식과 실천들을 비판할 수 있는 우월한 관점이며 일상생활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고 한다.<sup>32)</sup>

이러한 배려의 윤리가 통일교육의 차원에서 수용되고 있다.<sup>33)</sup> 학교통일교육을 고민하는 교사들에 의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일방적 호전주의와 냉소적 태도의 지양에서 진정한 우호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리고 남한 사회의 팽배한 경쟁주의를 극복하고 더불어 함께 살수 있는 태도를 길러 주기 위해서 통일교육에 배려윤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 즉 돌봄·배려의 윤리에서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책임을 무엇보다도 우선시 하고,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관계의 유지 발전을 무엇보다도 중시하기 때문에 경쟁적이고 적대적인 교육, 일방적인 희생과 이익만을 강조하는 교육을 반대하고, 대신 상호 의존, 상호 존중과 신뢰, 친밀감, 협력에 기초한 상호생적인 교육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31. Young-Bruehl, Elizabeth., Hanna Arendt, For Love of the World, Yale Univ. Press, (1982), xv.

32. Ruddick, S., 'Notes Toward a Feminist Peace Politics', in Gendering War Talk (1993), 정현백, 같은 글, 191-3쪽에서 재인용.

33. 박찬석 외 지음, 통일교육론, 백의, (2000), 105쪽 이하.

캐롤 길리건, 루디, 나딩스 등에 의해 발전된 여성윤리로서의 돌봄과 배려의 윤리는 지금까지 한스 요나스의 '책임 윤리'<sup>34)</sup>와 더불어 생태페미니즘과 근본생태주의에 의해 수용되어 인간과 자연, 지구생태계의 관계성, 존재의 그물망에 대한 윤리적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제 배려의 윤리는 전체 인간의 보편적 윤리로 확장되고, 더불어 차이의 수용과 다름을 인정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평화운동의 과제로 수용되어야 한다. 정화열 역시 배려의 윤리를 여성들만의 도덕적 정향 혹은 윤리적 경향으로, 그리하여 지역적 문제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배려의 윤리가 '인간 생활의 중추적 관심' 그 자체이기 때문며, 이 윤리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결짓는' 도덕의 길이라고 한다.<sup>35)</sup>

한편, 돌봄·배려의 윤리는 사회적으로도 제도화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통일 이후의 사회를 성평등이 보장되는 제도적·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그 구체적 방법이다. 여성들이 제도적 통일과정에 성평등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 4. 평화의 기술과 태도의 형성, 평화문화의 구축

위에서 논한 다양한 정체성으로의 확대, 소수자 인식으로의 전환, 관용과 배려·돌봄의 윤리의 수용 등은 모두 차이를 넘어 연대를 모색하는 데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이것들은 인식의 전환, 비판적 성찰에 관한 것으로 다양성이 수용되고 관용적이며 연대성이 확보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절차' 혹은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즉 통일, 통합, 공존, 평화는 고정된 이상과 가치개념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이루어지는 진행과정 중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평화를 만들어 가는 기술의 습득과 태도의 전환이다. 평화교육의 관심은 세가지 차원 즉, 기술, 지식, 태도로서의 평화에 대한 것인데, "평화의 기술"로는 비판적 사고, 협력, 공감, 단호함, 갈등해결, 정치문제 등이며, "평화적 태도"로는 자아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 생태학적 관심, 열린 마음, 전망, 정의에 대한 헌신 등이다.<sup>36)</sup>

평화교육은 여성평화운동의 중심과제 중의 하나이다. 평화교육은 결국 어떻게 사람들이 다름을 수용하고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관계를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다. 여성평화운동에서 평화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여성들의 평화운동에 대한 실

34. 한스 요나스는 미국으로 이주한 유대계 철학자로 1979년 「책임의 원칙」을 독일에서 처음 출판하였다. 이 책에서 요나스는 20세기 기술 중심적 문명의 종말론적 위기를 매우 긴박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 그는 새로운 책임의 윤리를 가지고 기술중심적 문명의 문제를 비판했다. 책임의 윤리는 인류중심적 윤리가 아니라 지구 위의 인간과 자연을 보존·지속시키기 위한 '환경적 이상사회'이다.

35. 정화열, 몸의 정치(Body Politics), (박현모 옮김), 민음사, (2000), 197-200쪽. 정화열에 의하면 '배려'라는 말의 의미는 첫째로, 자아는 관계의 그물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관계는 여성으로부터 비롯되며 여성과 함께 태어난다. 둘째로, 배려는 관계적인 동시에 타율적이다. 즉 자기 중심적이거나 자기본위의 것이 아니라 타자지향적인 것이다. 셋째, 배려는 타자 또는 '당신'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대화라는 '유동적인 경험'을 통해 나타난다. 타자 중심성은 기본적으로 모든 윤리의 '고향'이다. 배려라는 윤리의 원형을 타자 중심성의 원리에서 기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려의 관점에서 윤리를 여성화하는 것을 여성만을 위한 것, 여성만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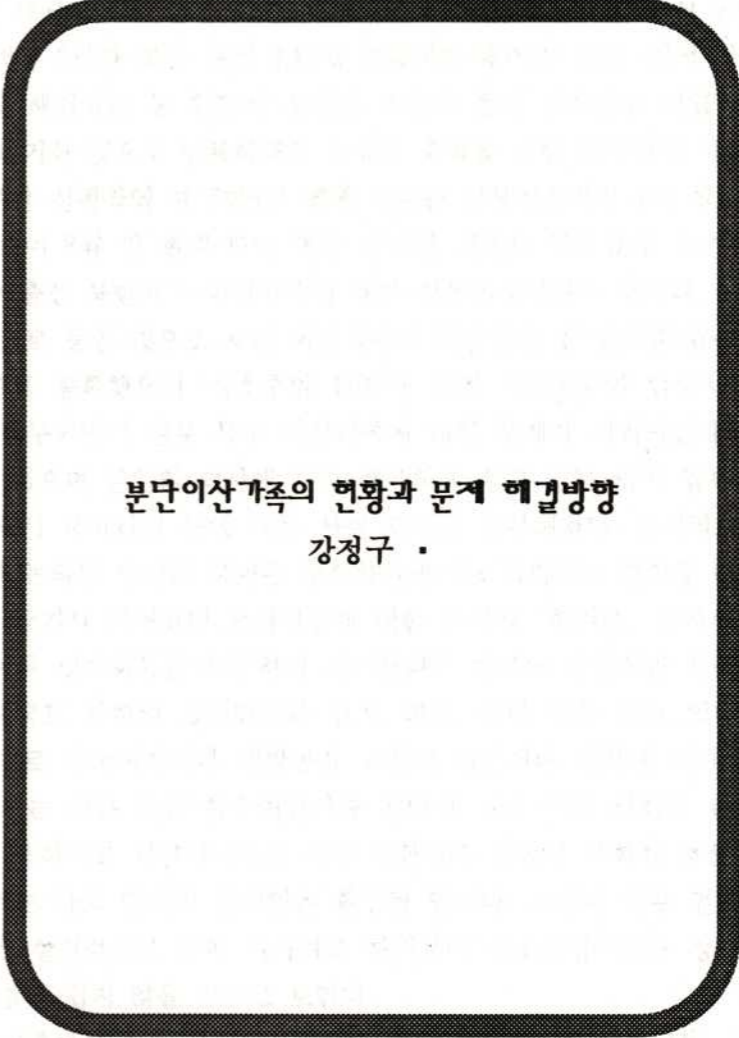
36. David Hicks, Education for Peace,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고병헌 옮김), 서원, (1993), 28-34쪽.

천이 평화교육을 통해서, 즉 일상의 평화문화의 형성을 통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론, 여성평화운동이 여성들의 일상성, 생활세계 속의 평화형성에만 집중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여성들은 평화를 위한 정치·사회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방위비 삭감과 군축, 그리고 징병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등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이렇게 여성들의 평화운동은 이른바 일상의 폭력에 저항하면서 미시적 차원의 생활세계의 평화문화 형성으로부터 북한돕기운동, 군축운동, 제도적 차원의 통일논의에 주류화 등 총체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sup>37)</sup>

‘평화는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과정과 절차이다. 평화의 내용을 어떻게 기술과 태도로서 형성해 갈 것인가가 평화교육에서 핵심적 요소임을 위에서 언급하였는데, ‘차이’를 넘어서 ‘연대’하는 것은 바로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과 절차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갈등의 비폭력적 해결과 차이의 관용적 수용, 연대성의 확대 등을 통해 평화는 우리에게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37. 정현백, 같은 글(주1), 201쪽.

2001년 2월 17일 오후 세션  
남북교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



분단이산가족의 현황과 문제 해결방향  
강정구 ·

## 분단이산가족의 현황과 문제 해결방안

강정구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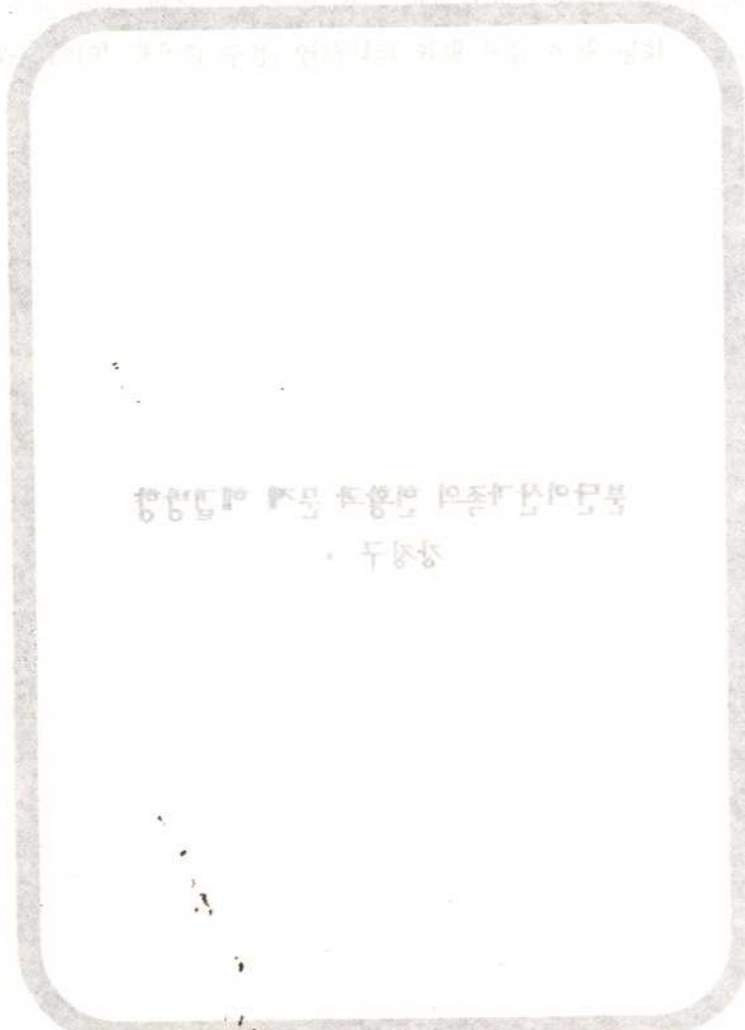
2000년 8월 15일 대규모 1차 분단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곧 이어 9월에는 비전향장기수가 송환되었다. 이것은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3항에 의거한 것으로 남북화해의 실질적 출발을 기한 획기적인 사변이었다.

1차 이산가족방문단 선정작업 때 7만6천 명에 이르는 상봉신청자가 1차 이후 증가하여 하루에 1천5백에 이르기도 하여 8월 말 현재 1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기할 사실은 이들 신청 가운데 10%는 남쪽 출신 북한거주 이산가족에 대한 상봉신청이라는 점이다. 이에는 월북자와 남북자 및 미귀환 국군포로 등인 것으로 보여 이산가족의 복잡함을 잘 말해준다(<한겨레>-2000-9-2). 동시에 비전향 장기수를 송환했으니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국군포로와 남북자를 송환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면서 일부 특수 이산가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북측은 “공화국에 남북자는 없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의거 입북자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남측 역시 북파간첩 등에 대한 사실 인정을 거부해왔다.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특수 이산가족 일반에 대한 논의를 남이든 북이든 정부차원에서는 기피하는 경향을 띠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금기시 되어왔던 북파간첩에 대한 논의가 『한겨레』 등에서 전개되고, 북파공작원 자신들이 보상이나 명예회복을 요구하기 시작했다.<sup>1)</sup> 이로써 간첩이란 북측만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측이나 미국도 북한의 요인암살과 납치, 파괴, 정탐 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전쟁이나 해방공간 기간에 월남이나 월북에 의해 서로 흩어진 가족인 분단 일반이산가족과는 다른 분단 특수이산가족 전반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제까지 의도적으로 묻혀지고 외면되어왔던 특수 이산가족 전반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인권 차원에서 고통을 덜어주려는 사회 일각의 움직임은 환영될 일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나 야권 정치세력들은 이들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 나가려고 하기보다 안보상업주의나 정략적 도구로 악용하고 있어 이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시론적 수준에서 이들 분단이산가족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고(2장), 일반이산가족에 대한 실태를 월남자를 중심으로 제시하고(3장), 특수이산가족과 특수 유족이산가족에 대한 제한적 수준에서 성격과 양태를 제시하고(4·5장),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특수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의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들추어내면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안한다(6장).

1) 2000년 11월 설악동지회 소속 회원 4·60명이 서울 서초구 정보사령부 앞에서 지회를 갖고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950·70년대 미군의 AIU(Army Intelligence Unit) 소속으로 북파공작원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 2000. 11. 3., <중앙일보> 2000. 11. 3.).



2. 이산가족의 성격과 분류

남쪽 정부는 이산가족을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개념 규정과 세부적인 분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이산가족을 분단과 정쟁에 기인한 것으로 한정하여 분단이산가족을 그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분단이산가족은 "해방 이후 남북분단이 직·간접으로 작용하여 가족 구성원끼리 흩어진 삶을 강요당하여 이산인 상태에 놓인 가족으로, 가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와 배우자였던 자"를 지칭한다. 이 개념에는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 뿐 아니라 일본과 남북한 사이나 남북한 역내의 흩어진 이산가족도 포함한다. 이 분단이산가족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다: 일반이산가족, 특수이산가족, 특수유족이산가족.

일반이산가족에는 자의에 의하여 남과 북으로 옮긴 월남실향민과 월북실향민, 38선 또는 휴전선이 국경 아닌 국경선이 됨으로써 가족 및 친지의 왕래가 끊겨진 자연이산가족, 6.25전쟁이나 48년 2월부터 시작된 작은전쟁의 과정에서 헤어짐을 강요당한 역내이산가족으로 나눌 수 있다.

특수이산가족 역시 직·간접으로 분단과 전쟁 때문에 헤어짐을 강요당하였지만 직접적으로는 분단 및 전쟁과 관련된 특수한 활동 때문에 헤어짐을 강요당한 경우이다. 이 특수이산가족에는 남남자와 남북자, 남파공작원과 북파공작원, 미귀환 국군포로와 인민군포로 등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특수유족이산가족은 남과 북에서 각기 보도연맹 등과 반동 등으로 몰려 처형된 좌익유족 이산가족과 반동유족 이산가족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들 분단이산가족은 대부분 해방공간과 6.25전쟁 과정에서 발생되었으나 일반이산가족가운데 월남 및 월북 실향민의 경우 휴전이후에도 자진 월북이나 월남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90년대중·후반 북한의 식량난을 계기로 탈북 식량난민의 급증으로 월남실향민이 늘어났다. 또한 특수이산가족가운데 남남자와 남북자, 남파공작원과 북파공작원은 90년대까지도 지속된 것으로 보여 분단이 해소되지 않고는 이러한 특수이산가족이 비록 극히 제한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위의 일반 이산가족은 이산가족으로서의 고통과 시련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수 및 특수유족 이산가족의 경우 특수업무 관련 당사자 외에 그 가족들이 연좌제, 불순성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수난을 더 겪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드러내놓고 이산가족이라고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숨기는 삶을 강요당하였다.

이산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분류와 발생시기를 결합한 표는 아래와 같다.

2)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남북자는 어부 436명을 포함해 모두 487명에 이른다. 그러나 재미유학생이었던 이재환을 남북자로 분류하고 있고, 대부분의 어선의 경우 군사분계선을 넘어 영해침범으로 나포된 경우가 많고 현지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체 숫자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경향신문> 2000-12-04 06면).

표1. 분단이산가족의 범주와 발생시기

큰 범주	작은범주	해방공간 (45. 6. 15.-50. 6. 24)	6.25전쟁 (50. 6. 25 - 53. 7. 27)	휴전이후 (53. 7. 28 - 현재)	기타
일반 이산가족	월남자	XXX	XXXXX	XX(탈북 식량난민 등)	
	월북자	XXX	XXXXX	XXX(재일교포 북송9만 등)	
	역내 이산가족	X	XXX		전쟁고아 등
	자연 이산가족	XXX	XX		총련과 거류민단
특수 이산가족	남남자	X	XXXXX	X(공작과 보복용)	
	남북자	X	XXXXX	X(어부, KAL승무원 등)	
	남파공작원	XXX	XXXXX(비전향장기수 등)	XX(비전향장기수 등)	
	북파공작원	XXX(백의사, KLO 등)	XXXXX(HID, AIU, UDT 등)	XX(철약동지회, 실미도, AIU). 5-60년대 총 7726명 실종, 이중 2150명 60년대 실종	미군관할 실종자 3000명
	미귀환 인민군포로		XXXXX (반공포로석방, 유격대 등)		반공포로석방 27,000
	미귀환국군포로		XXXXX		국방부추정 19,000, 생존확인 343
특수 유족 이산가족	좌익빨갱이 유족이산가족	XXX	XXXXX (보도연맹, 부역자 등)	X	보도연맹원 약 20-25만
	우익반동 유족이산가족	XX	XXXXX (반동수청자 등)	X	남한공식발표 127,000
	* 'X'는 해당 이산가족이 발생한 시기와 그 상대적 빈도수를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 분단이산가족을 소 범주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절대적인 숫자에서는 실향민이 가장 많고, 다음이 특수유족 이산가족인 보도연맹원과 우익 반동이산가족, 미 귀환 포로, 납치자의 순서이다.

둘째, 시기적으로는 6.25전쟁 중에 발생한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고 휴전협정 이후 70년대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산가족이 생성되고 있었으며, 탈북 식량난민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김대중 정부 출범 이전까지는 공무원 수준에서 특수이산가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남북자와 남남자가, 국군포로와 인민군 포로, 남파공작원과 북파공작원과 같이 남북이 각기 주체가 되어 동일범주의 특수이산가족을 발생시켜 왔었다. 이는 등가상대 범주라고 볼 수 있어 이산가족의 인식과 해법에는 이들 등가상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곧, 남쪽이 보낸 북파간첩은 부인하면서 남파간첩에 대한 문제제기만을 한다면 이는 형평성에 위배되어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넷째, 남과 북은 대부분의 특수이산가족에 대한 원인제공, 곧 특수한 목적을 가진 '불법행위'인 납치나 공작원 파견 등을 해 왔다. 그럼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조차 부인 또는 '확인도 복인도 하지 않는(NCND)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섯째, 이산가족 전 영역에 걸쳐 흔히들 반공논리와 역사의 왜곡에 의해 북쪽만을 일방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나 위의 셋째 특징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남쪽 역시 위법이나 반윤리적



인 행위를 일삼아 왔다. 오히려 이러한 점에서 남쪽이 더 부정적 행위를 많이 저지른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3. 월남실향민 이산가족의 양태

해방 후 월남한 월남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반공과 반북 이데올로기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었다. 월남동기에 대한 정치·사상적 요인이나 계급적 요인의 과대 포장과 전쟁요인의 축소, 월남인이 수백만에 이른다는 터무니없는 숫자 부풀리기, 월남시기에 대하여 공산정권 수립에 반대하여 월남이 해방직후에 주로 이루어졌다는 왜곡, 한국전쟁시 미군의 무차별 폭격 등 전쟁·전투행위 그 자체 때문에 월남인이 양산되었다기보다 자발적으로 월남하였다는 인식 등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이들 월남 이산가족에 대한 전국규모의 실태조사는 월남인에 대한 이러한 기존의 인식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가를 잘 드러내 주었다<sup>3)</sup>.

이산가족에 대한 우리 남쪽의 기본적 인식이 이렇게 왜곡된 상태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제대로 풀어 나가기에는 힘들다. 이 장에서는 월남실향민 이산가족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밝힘으로써 앞으로 이산가족 전반에 대한 해결에 귀감을 삼고자 한다. 월북실향민의 경우 이에 대한 기초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분석은 할 수 없으나 일반적인 경향성을 중심으로 한정적인 논의를 하겠다.

1) 월남실향민 이산가족의 규모

공식 인구조사에 의한 월남인 통계는 1949년 인구조사는 1945~49년 사이 48만 1천 명, 1955년 인구조사는 45만 명, 1960년 인구조사는 이북5도 출생자를 63만 8천 명, 1966년 특별 인구조사는 북한 출신자를 69만 7천 명, 1970년의 인구조사는 북한지역 출생자를 67만 5천 명으로 각기 추정한다.<sup>4)</sup> 유의영은 1970년 현재 65만 명의 이북 출신 생존자를 기초로 해방과 한국전쟁 정전기인 1953년 사이에 120만 명이 월남한 것으로 추정한다. 권태환은 1945~49년 사이에 74만 명이 월남하고, 전쟁기간 중 65만 명이 월남하고 30만 명이 월북하였다고 보면서 총 월남인구를 139만 명으로 추정한다. 이 숫자 속에는 이북출신이 아니더라도 이북으로부터 이남으로 이주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에 북한태생에 한하는 월남자 수는 이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이북5도청은 1970년 현재 월남인구를 5백만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sup>5)</sup> 또한 미군정시에 경무부장을 지낸 조병욱이 미국국무성관리에게 제공한 황당무개한 주장, 즉 1948년 9월 이전까지 무려 4백5십만의 북한주민이 정치적인 이유로 월남하였다는 흑색선전이 있다.

3) 이에 대한 논의는 전적으로 다음 글에 의존하였다. 강정구, "해방 후 월남인의 원남동기와 계급성에 관한 연구" 강정구,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역사비평사, 1996. 이 연구는 조은, 강정구, 신광영이 실시한 전국실태조사에 바탕을 둔 것으로 사용된 자료는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여 1991년 3월에 『경제활동 및 생활실태 조사』라는 명칭으로 실시된 전국적인 조사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자료이다.

4) Kwon, Tai Hwan, Demography of Korea: Population Change and Its Components 1925-66, Seoul National Univ. Press, 1977; 권태환, 「인구성장의 추세와 요인」, 유의영, 「인구이동과 도시화」, 이해영·권태환 편, 『한국사회: 인구와 발전』 제1권,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5) 조형, 박명선, "북한출신 월남인의 정착과정을 통해서 본 남북한 사회구조의 변화" 변형윤외,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까치, 1985, 148쪽.

그는[조병욱은] 북한인민군은 현대소련계 무기로 무장한 4개 사단이 있고, 북한의 군사 및 준 군사력을 다 합치면 25만에서 33만에 이르는 병력을 가졌다고 말했다. 북한의 예산은 전부다 이러한 군사조직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 군사조직이나 정부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4백5십만이나 되는 북한 주민들이, 물론 모든 북한의 실질적인 지도자를 포함한, 38선 이남에 피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sup>6)</sup>

이러한 엄청난 과장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조장되면서 동시에 식량 배급제도 때문에 유령인구가 등장한 결과이기도 하다. 아래의 서술은 이를 잘 보여준다.

서울시청과 식량행정처 당국에서는 [1948년 3월] 18일부터 예정대로 유령인구의 일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첫날 하루의 조사결과를 보면 1천8백16세대 조사에 부재인구가 9백8십6명이나 나왔다고 한다. ... 회현동의 어떠한 반은 11세대 중 10세대가 유령인구를 가지고 있었다하며 61명이나 있었다고 한다.<sup>7)</sup>

1960년 이후의 인구조사는 어느 정도 정확하다는 판단 하에 60년, 66년, 70년의 각각 인구조사에서 산출된 북한태생 인원의 평균치를 구하면 67만이 된다. 인구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북출신의 경우 20%정도가 과소 보고된다는 인구학자의(권태환) 경향성 파악에 근거한다면 실제 월남인의 숫자는 84만 정도로 추정될 수 있다. 이 숫자에는 해방 전에 월남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해방이전의 월남인 비율을 10%로 설정하여 이를 삭감한다면<sup>8)</sup> 75-6만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추정치 에다 사망률을 감안한다면 84만은 약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월남실향민에 비해 월북실향민이 숫자적으로 작은 요인은 첫째, 남북의 절대 인구수가 2천만 대 950만으로 격차가 2배 이상이고, 둘째, 전쟁 중 미군이 공중전의 주도권을 잡고 있고 북한지역에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고 원자탄 투하 등의 위협을 가하였으므로 생존가능성이 남쪽이 훨씬 높았고, 셋째, 인민군은 수송능력이 낮아 인민군 자체의 수송도 제대로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민간인을 수송할 능력이 부족하였고, 넷째,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 퇴로가 갑자기 차단되어 월북을 유도할 수 없었던 상황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사상적 요인 때문에, 곧 공산주의가 싫어서 월북하지 않았다는 이데올로기적 인식은 아래의 여러 논의에서 드러나겠지만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아니다.

6)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8, vol. VI (Washington: U.S. Gov't Printing Office, 1974), p.1311; 한국전쟁 이전에 이미 월남인들이 무려 4백5십만이나 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은 해방공간에서 널리 퍼져 있었다. 김구도 그의 "건국실천원 양성소 창립1주년 기념식에 보낸 치사"에서 이와 유사한 월남인 수를 인용하고 있다. 백범김구사업기념사업협회, 『김구주석 최근 언론편집』, 1992. 또한 5.10제헌의회 선거 실시에 즈음하여, 조선민주당은 460만 월남인을 위한 특별선거구를 만들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특별선거구가 없이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한다면 월남이주민 460만의 대표는 1인도 선출 못할 것인 즉 5분지1 주민의 투표는 사표가 되는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6』, 557쪽

7)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6』, 595쪽

8) 해방이전의 월남인 수를 10%로 추정한 것은 본 "경제활동 및 생활실태조사"에서 전체 월남인에 대한 1944년 이전 월남인의 비율을 산정한데 근거한다.

## 2) 인위적 이산가족의 양산

왜 이렇게 일반 이산가족이 많이 생겼을까? 그것은 전쟁의 참화를 조금이라도 덜 입는 남쪽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군과 국방군은 인위적으로 월남자를 양산하였다. 북한은 한국전쟁중 미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인하여 사상 유례 없는 전쟁피해를 입었다. 군사시설인지 비 군사시설인지를 가리지 않고 진행된 초토화 폭격은 미 해군소장 스미스의 원산에 대한 묘사에서 그 정도를 짐작케 한다. “원산에서는 길거리를 걸어다닐 수 없다. 24시간 내내 어느 곳에서도 잠을 잘 수 없다. 잠은 죽음을 의미했다”(커밍스와 할리데이, 1990, 158~159). 북한에만도 총인구 950만 명 중 약 300만여 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전쟁은 북한 주민의 생존이 얼마나 처절하였나를 짐작케 한다.

이런 와중에 북한 주민들은 생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남한으로 죽지 않기 위하여 월남하게 되었다. 또 미군은 1950년 12월 총퇴각 때에 원자탄이 곧 투하된다는 소문을 유포시키는 등으로 북한 주민들을 회유하여 월남을 유도하고(전중식, 1996: 40, 136, 165, 176, 183, 190, 197), 흥남 공업단지의 엔지니어를 강제로 월남시키고, 또 흥남철수 시 북한 주민을 원산 앞 바다의 작은 섬으로 잠시 소개할 것을 거짓 요구하여 강제로 월남조치 했다.9) 이는 일종의 이데올로기 전쟁으로서 곧, ‘자유를 택해 남한으로 북한 주민이 월남한 것은 자본주의 자유세계의 승리’라는 선전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비자발적 월남 이산가족을 양산하였음을 의미한다. 월남인의 월남동기 가운데 전쟁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실은 미국이 이들 월남인을 불모로 반공선전의 엄청난 효과를 노려 의도적으로 양산한 것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인위적 이산가족의 양산은 북의 경우에도 적용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그 숫자는 남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전쟁 당시 북한은 수송능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미군의 공중전 장악으로 퇴각 시 인민군 자체의 수송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 3) 월남시기

실태조사에 의하면 월남인가운데 한국전쟁 이후에 월남한 사람이 75.9%, 즉 3/4이나 차지한다. 해방직후인 1945년과 1946년에 월남인 수가 증가하다 48년 49년에는 격감하게 되었으나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은 무려 1945년의 4배나 증가하게 된다. 특히 1950년과 1951년의 급증은 1950년 중국인민지원군과 북한인민군의 공세로 미군이 12월 총퇴각하는 과정에서 전쟁요인에 의하여 비자발적 또는 자발적 월남이 증가된 때문이다. 그러나 전선이 38선주위로 고착화되어 가는 1951년 하반기에 들어가면 월남인은 급감하게 된다. 1951년의 월남자수의 대부분은 51년 초반기에 월남한 것으로 추정된다.

월남시기에 따른 계급분포를 살펴보면, 전쟁 전의 월남자 경우 지배계급 41.7%, 중간계급 33.3%, 피지배계급 25%를 나타내어 지배계급 주도의 월남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전쟁 이후 월남자의 경우 각기 25%, 11.1%, 63.9%로 피지배계급 위주의 월남이 이루어졌다.

월북의 경우 1946년 6월 1차미소공위가 무산되면서 미국 군사정부의 좌익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되고 이어 10월인민항쟁을 계기로 좌익에 대한 검거선동이 일게 되어 월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48년 9월 북한정권의 출범을 위해 소집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와 4월의 남

9) 필자와의 면접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다.

북계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등에 참석하고는 돌아오지 않고 계속 북한에 체류하여 북한정권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정치사상적 요인 때문에 월북을 하였고 대부분 엘리트집단에 속한다. 그러나 6.25전쟁 중에 월북한 사람들은 남한 이승만 정권에 환멸을 느낀 엘리트 집단과 더불어 인민군 점령기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대중집단이 남한정권의 보복을 두려워 월북하였다.

## 4) 월남동기

월남동기에 관해서는 전쟁요인에 의해 월남한 비율은 약 40-46%, 정치·사상적 요인이 42-47%, 농지개혁 등 사회개혁에 따른 계급적 요인이 10%, 우연적 요인이 5%미만을 차지한다. 종교적 탄압의 범주는 정치·사상적 요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최소한 전쟁요인과 정치·사상적 요인이 월남동기에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월남 후 지속되어온 반공이데올로기 공세에 영향을 받아 정치·사상적 요인이 확대 인식되는 자기 인식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전쟁요인이 더 큰 동기일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계급별 월남동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검토하겠다.10) 정치·사상적 동기에서 월남한 비율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차별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지배계급 64.7%, 중간계급 55.6%, 피지배계급 35.3%가 각기 정치·사상적 이유로 월남하였으나, 전쟁요인에 의한 월남동기는 지배계급 23.5%, 중간계급 22.2%, 피지배계급 50%로, 지배계급일수록 월남동기가 정치·사상적 이유가 주가 되고 피지배계급일수록 전쟁요인이 주된 요인이 된다. 월남 1세대로부터 직접 수집한 자료의 경우 지배계급, 중간계급은 모두 사상적 요인이 월남동기가 되었으나, 피지배계급의 경우 정치·사상적 요인은 단지 30.8%에 그치고, 61.5%는 전쟁요인 때문에 월남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발견은 역시 계급이 월남인의 월남동기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해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월북자의 대부분은 정치사상적 요인 때문에 월북하였고 전투 와중에 휩쓸려 북한 점령에 협조한 사람들이 이 때문에 죽음을 당할까 우려하여 월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지식인 가운데 친 북한적이고 친 사회주의적 성향이 한국전쟁 기간까지 지속되어 월북을 하게 됨을 아래 일기는 잘 보여주고 있다.

1950년 9월 26일, 글줄이나 쓰고 그림 폭이나 그리던 사람들, 심지어 음악가·영화인에 이르기까지 쓸 만한 사람이 많이 북으로 가 버렸다. 학계로 말하여도 신진발랄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우리 같이 무기력한 축들이 지천으로 남아 있다. 간 그들이 모두 다 불세비키였다면 또 모를 일이지만 중립적인 입장을 지켰던 사람들 또는 양심적인 이상주의자들이 죄다 가 버렸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깊이 반성하는 바 있어야 할 것이다. ... 나는 오늘 저녁 한 사람의 양심적인 예술가를 또 북으로 떠나 보냄에 있어 그가 이 몇 해 동안 병고와 생활난과 고문의 위협에 허덕이었음을 생각하고 이 땅의 문화정책이 너무나 빈약함을 통탄하여 마지않는다(김성철, 1993:229~230).

10) 해방당시의 계급구조는 계급이 미분화된 상태로 있었기에 직업구조를 통한 계급구조 설정에 무리가 없는 것 같다. 또한 현실적으로 아마도 유일한 자료가 직업에 관한 자료뿐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지배계급은 지주, 부농, 자본가,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을, 중간계급은 판매직과 서비스직을, 피지배계급은 생산직과 농민 및 실업자를 각기 구성요소로 설정하였다.

5) 거주지역 월남 1세대의 경우 거주지역은 서울, 경기·인천 지역이 66.6%, 강원이 11.1%, 월남 2세대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77.6%, 강원 8.6%를 각각 보여 준다. 전반적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 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월남1세대의 경우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 하기는 힘들지만 지배계급의 경우 서울 50%, 경기·인천 25%로 서울 거주비율이 높으나, 피지배계급의 경우 서울 23.1%, 경기·인천 30.8%로 오히려 경기·인천 거주비율이 높다. 또한 월남시기별로 본다면 전쟁 전 월남인은 서울 57.1%, 경기·인천 0%, 강원 14.3%이나 전쟁 후 월남인은 서울 29.4%, 경기·인천 43.2%, 강원 11.4%로 월남 2세대와 같이 거주지역 분포가 체계적인 차별성을 띤다.

계급별 거주지역과 월남시기별 거주지역 또한 체계적인 유형을 나타낸다. 서울지역 거주비율을 보면 월남2세대는 지배계급, 중간계급, 피지배계급(아버지의 월남전 계급위치) 각 55.6%, 44.4%, 31.6%로 지배계급일수록 서울 거주비율이 높으나, 경기, 인천 거주비율은 오히려 16.7%, 22.2%, 36.8%로 피지배계급일수록 경기·인천 거주비율이 높다. 이는 월남 이전의 계급위치가 월남 이후에도 어느 정도 2세대에 계승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도 있다.

월남시기별 거주지역 또한 체계적인 차별성을 보여주는데 전쟁 전 월남자의 57.1%가 서울에 거주하고 14.3%가 경기·인천에 거주하나, 전쟁 후 월남자의 경우 36.4%가 서울에, 43.2%가 경기·인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쟁 전 월남자의 경우 서울 거주비율이 높고 전쟁 후 월남자의 경우는 경기, 인천 거주비율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도시 거주비율을 보면 월남2세대는 전체인구보다 도시 거주율이 높고, 월남1세대는 전체인구의 도시분포보다 낮다. 또한 아버지 출신계급이 지배계급일수록 도시 거주율이 높고 피지배계급일수록 도시 거주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전쟁 전 월남한 월남2세대는 전쟁 이후 월남한 2세대에 비하여 도시 거주율이 92.9% 대 77.3%로 앞서고 있다. 이는 전쟁 전 월남인들이 지배계급 위주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6) 계급관계 월남자의 계급분포는 피지배계급인 노동자, 농민이 절대적으로는 높은 비율을(70.6%, 54.2%) 차지하여 월남자의 절대다수는 피지배계급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전체 인구 중 피지배계급이 높은 점을(최소한 80%이상 추정) 감안한다면 피지배계급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지배계급의 경우 전체 월남자의 23.5%와 29.2%를 차지하여 전체 인구의 계급분포에 비하면 과대 월남한 셈이다.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적, 민중적 지향을 추구하고, 또 전쟁 전 월남동기가 주로 정치·사상적 요인과, 계급·경제적 요인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다.

계급별 월남시기에 대한 필자의 가설 즉 "지배계급의 경우 전쟁이전의 월남이 지배적이고, 피지배계급의 경우 전쟁이후 월남이 주도적이다"를 검증해 보았다. 지배계급의 경우 1, 2세대자료가 다 함께 전쟁이후 월남인이 전쟁이전 월남인 수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피지배계급의 경우 압도적으로 전쟁이후 월남자가 많음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지배계급의 경우 전쟁이전에 월남할 의향은 있었지만 38선의 강화 등으로 월남할 기회를 놓쳤거나, 한국전쟁 중 미군과 국방군이 점령하는 동안 반복활동 등에 연루되어 월남하지 않을 수 없는 지배계급 구성원이 많았으리라 짐작된다.

이제까지 월남실향민 이산가족의 실상을 전국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파악함으로써 기존의 월남인

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 이해가 얼마나 왜곡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월북실향민이산가족도 그 경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은 대부분 해방공간과 6.25전쟁 중에 발생한 실향민들이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휴전이후의 실향민은 90년대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 때문에 월남한 탈북 식량난민 수백 여명이 있고, 1959년부터 시작된 재일동포의 북송으로 약 9만 명에 이르는 월북실향민이 포함된다. 일반이산가족의 셋째 범주는 자연이산가족으로 해방이 되면서 갑자기 생겨난 국경아닌 국경성인 38선과 휴전을 계기로 생긴 비무장지대를 경계로 각기 흩어진 가족을 포함한다. 동시에 일본동포 가운데도 거류민단과 총련으로 분리되어 이들도 가족과 친인척과의 상봉이나 재결합이 봉쇄되어 자연이산가족이 되었다. 넷째 범주는 역내 일반이산가족으로 주로 6.25전쟁의 와중에 부모와 친척을 잃거나 헤어져 이후 상봉을 하지 못하는 이산가족이 있다. 이들 역내 이산가족의 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 4. 특수이산가족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특수이산가족은 직접적으로 분단 및 전쟁과 관련된 특수한 활동 때문에 헤어짐을 강요당한 이산가족을 일컫는다. 이에 남북 각기 납치자, 공작원, 미귀환 포로로 대별할 수 있다. 이제 각 범주별 이산가족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납남자와 납북자

특수이산가족 가운데 가장 베일에 잠겨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영역이 바로 납남자이다. 그러나 해방이후 남과 북은 지속적으로 적대관계와 적대행위를 일삼아 왔고 서로를 부정하는 사이였으므로 서로 간에 납치 행위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납남행위와 대북한 파괴공작은 해방공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백의사나 KLO(Korean Liaison Office) 등의 대북 테러단체들이 미국정보기관과 남한 내 극우단체의 주도로 활동하고 있었다.

KLO는 6·25 직전과 전쟁 중 주한미군 G-2에서 만든 비밀공작 행동대원들의 조직으로서 CIA와 밀접히 관련되어 북한의 정보수집, 파괴활동, 침투공작을 감행하였으며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한다(오연호, 1994). 이러한 적대행위는 미국 CIC와 월남인 결사조직이 손잡고 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KLO는 미군정 당시 월남한 극우주의자들로 구성된 대북 및 대공산주의자 테러집단이었던 비밀결사 조직인 白衣社와 미국 CIC가 공동으로 마련한 정능의 대북 암살단 훈련원을 한국전쟁 중 쓰고 있었다. 이 비밀결사체인 백의사 요원들이 현준혁의 암살, 1946년 3·1절 기념행사에서의 김일성 저격미수사건, 강양욱의 저격사건 등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이영신, 1993: 258).

이미 1946년부터 38선에서의 무력충돌과 북한지역의 무장침입 등이 행해져온 것으로 북한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납남자가 있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38연선에서 무장도발을 빈번히 감행하였다. 놈들은 1946년에 95회에 달하는 무장도발을 감행하고 683명의 무장인원을 북반부지역에 침투시켰다면 1947년에 이르러서는 454회에 걸쳐 무려 4,477명의 무장악당들을 침입시켰다. 또한 놈들은 1947년 한해 동안에 강원도 양양군 황해도 벽성군 일대에서만도 184회의 무장도발을 감행하였으며 그 침입 인원수는 1,724명에 달하였다.<sup>11)</sup>

11)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4,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33쪽

6.25전쟁 중의 납북자는 남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남한당국자는 북한은 9·28 당시 미군과 남한군에 의해 피랍된 숫자가 14,112명인 것으로 1959년 국제적십자에 통보했다고 전한다.<sup>12)</sup> 그러나 이와는 달리 북한은 "국제 적십자 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나라 적십자회 대표단 단장 기자의 질문에 답변"(<로동신문> 1957-11-27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전쟁 기간 리향한 사민들의 소식을 하루 속히 알고저 하는 그 가족들의 념원을 고려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부득불 적십자 국제 위원회를 통하여 337명의 월북 인사들의 소식과 200여만의 우리측 실향 사민 중 우선 14,132명에 대한 소식 조사 의뢰서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1952년 1월 2일 정전회담 중에 북한은 남한이 체제 우월성의 증거로 선전했던 '월남피난민 500만 명'은 '유엔군의 위협 하에 강제로 납치해간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듯이 월남자 가운데 많은 부분을 납치로 보고 있다(김귀옥, 2001).

실제 이들 실향민 가운데는 원자탄과 폭격을 피하여 살기 위하여 월남한 사람들 외에 강제로 월남을 강요당한 납치성 월남도 상당히 많다(전충식, 1996: 40, 136, 165, 176, 183, 190, 197). 흥남 인민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유영식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1950년 초겨울이었습니다. 당시 아내와 나는 폭격을 피해 신흥까지 피란 갔다가 서상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시다. 그런데 함흥지역을 점령했던 미군이 철수하면서 우리를 길에서 붙잡았습시다. 그리고 나만 강제로 트럭에 태워 흥남부두로 보냈습시다... 그 수송선에는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습시다(전충립, 1996: 194-195).

전쟁 중에는 위의 HID나 KLO 외에 호림부대, 구월산 유격대를 중심으로 미군이 만든 동키(Donkey), 부루 보이즈(Blue Boys), AIU, 해군 오엔아이(ONI), 해군359부대, UDT(Underwater Demolition Team), CID, 공군첩보대, 단독침투 특수부대인 관악산부대(<한겨레>, 2001-2-7), 대만의 장개석 첩보부대, 68년 1.21청와대 습격 사건의 보복차원에서 김일성 저격 목적으로 양성되었으나 실전에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공군의 실미도 특수부대<sup>13)</sup> 등이 요인납치, 파괴, 정탐, 폭파, 즉결처분 등의 공작을 해 왔고 이 가운데 수많은 납치가 자행되었다. 휴전 이후에도 공작차원에서 여전히 납치 등이 행해지고 1.21청와대 습격 사건 등이 발생하거나 미안마사건 등의 보복차원에서 납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세세한 내용은 노출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한영이나 고위 북한외교관의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있고 특히 이한영은 강제로 성형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비록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김귀옥의 발견은 주목된다(김귀옥a,b, 2000). 휴전 후인 53년 10월 어부로 고기를 잡으러 양도근처에 나왔다 그의 배가 미군회하 HID(Higher Intelligence Dept.)공작의 접선 배로 오인되어 군용선에 견인되어 납치되어 온 후 그는 결국 45년 동안 정보기관의 감시 속에 살아야 했다. 원산출신의 어느 전직 HID공작원은 50년 12월 원자탄 투하라는 흥흥한 소식에 약 7천 명의 피난

민과 함께 남쪽으로 살길을 찾아왔다. 그러나 주로 친일파 일제순사들의 심사와 고문을 받고 난 후 좌익혐의를 벗어나긴 했지만(어리석은 농부들은 고문에 못 이겨 거짓 간첩이 되어 옥살이를 했지만) 먹고 살길이 없어 결국 많은 월남인들처럼(약 70%가 월남자라고 한다) HID공작원이 되었다. 무장간첩이나 비무장간첩 질을 하다 55년 2월 8일 인민군창설기념일 금강산 근처 해안 가에 지뢰를 매설하고 돌아가다 인민군트럭을 붙잡았는데 뜻밖에 쫓차가 고장나 타고 있던 인민군사단장을 납치해 왔다. 납치된 일부는 여자로서 빨래, 식사준비 등 육체적 노역과 성 노역을 강요당했다.

납북자의 경우도 납북자와 같이 해방공간에서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6.25전쟁 중의 납북자는 남한이(당시 공보처 통계국) 공식적으로 발표한 피랍자 수는 82,595명이다. 그러나 1959년 외무부 정보국장 이수영의 주재로 열린 피랍자 명부 파악에 대한 대책회의에서 이수영은 이 명단을 국제적십자사에 그대로 보고할 수 없음을 밝히고 이러한 오차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여 공보처 통계국장이 납북인사 82,595명의 통계는 공산당의 죄악상을 폭로하기 위해 비 민간인인 군인과 경찰을 포함시켰고, 인명중복이 있었고, 행방불명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피랍인사 위주의 통계가 아님을 밝혔다. 결국 82,595명은 군인, 경찰 등 비민간인과 행방불명자까지 고의로 포함시켜 조작된 수치임을 실토했다<sup>14)</sup>.

휴전 이후의 납북자는 북한이 "공화국에 납북자는 없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의거 입북자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지만 남한의 통일부는 어부 436명을 포함해 487명이라고 한다(<경향신문> 2000-12-04, 06면). 군사분계선을 쉽게 넘어 북측 영해를 침범한 어부들이 비록 납북은 아니라 하더라도 강제 억류된 것은 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 납북자 가운데 재미유학생 이재근씨 등과 같이 월북한 사람도 포함하고 있고 통일부가 밝히는 납북자의 숫자는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납북자 가운데 2차 납북이산가족 교환 방문에서 남측 방문단으로 평양을 찾은 김삼례씨(73.여)는 방북기간 중 1987년 서해 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피랍된 아들 강희근씨(51.동진호 갑판장)를 상봉했다(경향신문 2000-12-04, 06면). 이에 대해 납북자 가족모임 관계자들과 한나라당 등은 이들 납북자는 일반 이산가족과 다르므로 통상의 이산해법 대상이 아니라 송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문제 해결에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 2) 남파공작원과 북파공작원

6.15공동선언의 합의에 따라 62명의 비전향장기수를 북한으로 송환한 이후 남한의 언론, 한나라당, 납북자 가족모임 등에서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돌려 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상호주의의 등가교환원칙에 의한 비전향장기수의 등가물은 북파공작원이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북파된 무장 및 비무장 간첩이다. 남쪽에 사는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간첩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어 왔고, 이러한 간첩을 내려보내는 북한정권에 대한 적대와 증오를 품어 왔으며 간첩공포에 가위눌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남한과 미국 역시 이렇게 무시무시한 간첩을 북한 못지 않게,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숫자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전시 중의 북파공작원은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수없이 활동하였다. 그러나 휴전이후에도 또 지금 정상회담 이전까지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령부에서 확인한 바

12) 대한민국의외무부 외교문서 제1회 공개자료: 분류번호 729.5 일련번호 146, "한국전쟁시 피납치인 명부관계, 1954" 마이크로 례번호 G-0001, 후레임번호 1065-1138

13) MBC "이제는 말 할 수 있다" 12회 '실미도 특수부대'

14) 대한민국의외무부 외교문서 제1회 공개자료: 분류번호 729.5 일련번호 146, "한국전쟁시 피납치인 명부관계, 1954" 마이크로 례번호 G-0001, 후레임번호 1065-1138

로는 “북한으로의 공작원 침투는 전쟁 이후 지난 70년대 초까지 계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실종된 공작원은 확인된 수만 모두 7726명”이며 “군은 이들 실종공작원마다 관련 파일을 기록해 보관 중”이며 60년대 이후에도 대규모 공작원 북파가 지속돼, 72년 7·4남북공동성명 전까지 실종된 북파공작원도 2150명에 이른다고 확인했다.<sup>15)</sup>

이 가운데 “지난 50년대 북파된 공작원 5500여명 가운데 77명을 북한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김성호 의원(민주당)은 2000년 11월 5일 밝혔다. 또 “군 당국은 북한에 체포된 77명에 대해 별도의 명부를 작성해 특별관리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에서 붙잡힌 공작원들의 남파 가능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남북 공작원 맞 교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60년대 이후 북파됐다가 사망 또는 실종된 2100여명의 공작원에 대해서는 ‘피포자’ 명단을 따로 보관하지 않고 사망 또는 실종자로 분류해 놓고 있어 전체 피포자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한겨레>, 2000-11-6).

청계산에서 ‘대한축산연구공사’라는 위장간판을 내 건 곳에서 공작훈련을 받은 김철중씨는 68년 6월 처음으로 북한지역에 침투하였다. 처음 번에는 사진 촬영, 둘째 번에는 인민군 탄약고와 유류 탱크 폭발, 세 번 째는 옥수수 수거 작업장에 부비트랩을 설치하여 인민군을 살해하고, 네 번째는 대남방송하는 인민군에 유탄발사기를 쏘았다. 다섯 번째가 68년 10월 중동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하루 종일 남북이 교전을 벌리게 한 공작이었다. 인민군을 죽이고 납치하기 위하여 크레모아를 폭발시킨 공작을 벌인 것이다. 이 덕분에 그는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이정훈, 2001).

또 신창원을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하게 한 광주의 김아무개는 확인 결과 대북첩보부대인 HID의 후신인 AIU(Army Intelligence Unit) 출신이었다. 그는 89년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특수부대에 입대해 특수부대에 근무하였으므로 90년대 초까지 이 첩보부대는 활동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는 “구체적인 부대 이름은 밝힐 수 없다. 국가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간다는 마음가짐이 있었다. 특수부대도 국가가 불러서 갔다. 훈련과정에서 ‘나’를 버리게 됐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내 목숨은 국가를 위해 있고 언제든지 바칠 수 있다. 그런 의무감과 사명감이 있어야 자긍심도 생긴다”고 말할 정도로 긍지를 가졌다고 한다.<sup>16)</sup>

특이한 점은 50년대 북파간첩의 경우 생존율은 10%에 지나지 않지만 60년대 이후는 90%에 이른다고 한다. 60년대부터 72년 7.4공동성명까지 13년 동안 북파간첩이 약 2150명 실종되었으므로 실제 파견한 숫자는 21,500명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다시 연간으로 환산한다면 매년 1800명 정도를 북파간첩으로 북한에 침투시킨다는 이야기이다. 이 숫자는 북한이 1950년 이래 남쪽에 파견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작원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다. 또 6.25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넘는데도 남한은 이러한 엄청난 간첩을 북한에 침투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김원웅 의원은 국방부 자료를 인용하여 1950년 이래로 1999년까지 총 남파공작원은 6,446명이며, 그중 생포자 3,177명, 사살자 1,644명, 자수자 275명임을 밝혔다(<동아일보> 2000-11-8). 실제 북한이 남파간첩을 얼마나 남한에 침투시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68년의 울진·삼척무장공비침투, 78년의 충남 흥천군 광천읍

15) “북파간첩 7726명이 사라졌다” <한겨레 21> 1999. 07. 29.

16) 이들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인간병기였다. “하지만 10대의 이씨는 혹독한 훈련 끝에 불과 몇 개 월만에 30kg짜리 모래배낭과 5kg짜리 발목 아대를 찬 채 12km의 산악을 1시간 이내에 주파했다. 국군 장비는 물론 에이케이소총, 소련제 기관총 등 북한군 장비 사용법까지 완전 습득한 그는 말 그대로 ‘인간병기’가 됐다.” [북파공작원] ① 우리는 ‘인간병기’였다(<한겨레>, 2000. 10. 09.)

의 ‘광천침투사건’, 96년의 동해잠수정 침투사건에서와 같이 북한 또한 90년대까지 간첩침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으로 남쪽 또한 최근까지 북파간첩을 침투시키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게 한다.

북한은 6.15공동선언에까지 명기하면서 이들의 송환을 촉구하여 결과적으로 남파간첩의 실체를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남한당국은 “80년 이후 북파공작원과 관련해 들어온 민원은 50년대 북파공작원 관련이 233건, 60년대 이후는 171건으로 모두 404건으로 알려졌다”지만 “사실 확인이 불가하다”와 “자료가 없다” 등으로 실체를 부인하고 있다(<한겨레>, 2000-10-11: 19면). 50-70년대 기간 미군의 AIU(Army Intelligence Unit) 소속으로 북파공작원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 설악동지회 소속 회원 4-60명이 2000년 11월 서울 서초구 정보사령부 앞에서 지회를 갖고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동아일보> 2000-11-3, <중앙일보> 2000-11-3). 국방부는 “북파공작원의 존재와 유공이 분명한 만큼 음지에서 조용한 보상이나 해결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공식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실체를 속이고 북한만을 악마로 모는 분단지향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현재 문제되는 부분은 60년대 북파된 요원들의 보상문제다. 59년 12월31일 이전과 70년대 이후 요원들은 사망, 실종의 경우 군무원 또는 군인 신분을 소급 부여해 풀어왔다. 그러나 60년대 요원들의 경우, 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반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법적 해결책이 없다. 북파요원의 존재를 어떤 방식으로든 공식화해 문제를 풀 경우 남북관계에 파장이 이는 등 국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북한도 강릉 잠수정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조용히 해결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자체 해결책을 찾고 있다. 북파요원들의 요구는 크게 △군인신분 회복과 △유공자 대우 △충훈탑 건립이다. 이 가운데 충훈탑 건립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다른 부분은 실정법에 어긋나 어려운 점이 많다... 만약 이런 [세부 내용] 부분이 공개되면, 자칫 ‘영도유격대’나 ‘실미도부대’ 등 다른 부분에서까지 보상 요구가 터져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기존 요원들의 보상도 어려워진다... 생존여부 확인 등은 다른 기관에서 해줘야 한다. 우리는 북파 사실 자체를 확인해주기 어렵다(<한겨레>, 2000-09-18).

### 3) 미귀환 인민군포로와 국군포로

장기수 송환과 더불어 국군포로 문제 역시 쟁점이 되었다. 국군포로의 수는 포로 및 실종대상자 4만1971명 가운데 군적정리 및 전산화 과정을 통해 정리된 수를 제외하고도 모두 1만9000여명에 이르고 6·25전쟁 이후 귀환포로 등을 통해 확인된 생존 국군포로의 수는 모두 343명에 이른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동아일보> 2000-09-04: 03면). 이들에 대한 송환을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으나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전쟁포로의 문제는 휴전협정에서 가장 우여곡절이 많았던 논란거리였다. 전쟁포로 송환원칙의 합의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중국사이의 의견충돌로 무려 19번의 휴회가 있었고, 199일간(1952.10.8-1953.4.25)의 최장기 휴회가 있을 정도였다. 다른 의제인 군사분계선, 휴전감시국제기구 구성, 군사력 증강 억제문제 등은 빨리 합의를 이루었으나 바로 포로송환문제 때문에 전쟁이 거의 2년 가까이 지연되었다. 이 지연 때문에 전쟁은 소모전에 들어가 남측이 13만, 북측이 25만 가까이 사상자를 내는 반인도주의적 결과를 내었으며, 남북주민의 전쟁참화와 고통은 더 심화되었다. 또

결과적으로 국군포로나 인민군포로의 이산가족문제를 대거 남겼다.

이의 근본적 요인은 미국이 스스로 조인하고 비준한(1951년 5-6월 경) 49년 제네바협정 11조의 (전쟁이 끝나면 전쟁포로는 지체없이 석방되고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자동송환원칙을 비준 한 두 달만에(1951년 7월 5일) 위배한데서 비롯되었다. 미국이 軍 심리전 책임자가 제안한 자유송환원칙을 전격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미국이 내세운 포로 자유송환은 포로들에게 자유의사를 물어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송환하는 것으로 도덕적이고 휴머니즘적이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자유송환 원칙은 겉으로 보기에 인도주의적 측면이 있긴 하지만 포로들을 적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포로들에게 폭력, 고문, 협박, 거짓 등으로 자유송환이 아니라 강제억류를 할 수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49년의 제네바협정도 공정한 자유의지의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고려되어(물론 다른 요인도 있지만) 자유송환 대신 자동송환원칙이 채택되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인민군포로가 수적으로 많고, 이 인민군포로 가운데 의용군으로 입대한 남쪽 출신이 있어 이들이 남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계산을 깔고 있었다. 비록 집이 남쪽이기 때문에 남쪽을 선택한 인민군포로까지 공산주의가 싫어서 남한을 택하였다고 선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자유송환원칙은 미국 스스로 조인하고 비준한 것을 겨우 두 달만에 뒤짚는 이율배반적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고, 북한에 수용되어 있는 미군포로의 송환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변호사출신인 예치순국무장관과 미군사령관인 린치웨이 및 미국국방부조차 이를 반대하였다. 그런데도 미국은 반공메카시즘에 힘입어 자유송환원칙을 채택하고 북한과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폭격과 무력공세의 강화로 이를 관철시켰다.

전쟁포로를 비교하면 우선 그 숫자에서 인민군포로가 국군포로보다 훨씬 많다. 인민군포로로 북쪽 송환자가 7만6천명 정도이고, 국군포로로 남쪽에 송환된 수가 7천6백 명 정도이다. 또한 이승만이 흔히들 ‘반공포로’라는 이름으로 2만7천명을 불법적으로 석방하여 남쪽에 잔류 내지 억류시켰다. 여기에다 방장련씨 등이 밝혔듯이 인민군으로 남부전선에 참전하다 인천상륙작전으로 퇴로가 막혀 빨치산이 되어 결국 포로가 되었지만 포로로 분류되지 못하고 국방경비대법 등으로 남쪽에 억류된 숫자가 한 포로수용소에만 2-3백 정도로 전체가 약 1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sup>17)</sup>

또 45년의 옥살이로 세계 최장기수 기록을 가졌던 김선명과 같이 인민군으로 체포되었으나 제네바협정에 따른 전쟁포로로 분류되지 못하고 국방경비대법에 따라 부역죄와 간첩죄를 뒤집어 씌고

17) 방장련(67·강원도 고성군)씨 등 6명은 최근 비전향장기수 사이트(<http://nadrk.org/long>) 게시판에 성명서를 띄워 자신들을 “한국전쟁 때 퇴로가 막혀 지리산 주변에서 빨치산 전투를 하다 잡힌 정규인민군 포로”라고 소개하고 “제네바협정에 따라 전쟁포로 신분으로 북쪽에 송환됐어야 하는데도 남한 당국의 포로교환협정 위반으로 50년 가까이 남쪽에 억류돼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쟁중 포로가 돼 51, 52년 광주포로수용소에 수용돼 있다가 종전이 되기 전 민간인형무소에 옮겨져 민간법원에서 남한 당국의 법률에 따라 사상범으로 장기형을 언도 받았다”며 이들은 이어 “죄 없이 희생된 포로들과 살아남은 포로들에게 사죄와 응분의 법적 배상, 지체 없는 송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방씨는 1일 “당시 광주포로수용소에는 정규 인민군으로 빨치산 활동을 했던 사람이 100명 남짓 있었으나 모두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이들 중 10여명과 연락이 닿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빨치산 출신 장기수 류락진(73)씨는 “광주수용소에 있던 포로 가운데 정규 인민군 출신인데도 ‘비상사태하의 특별조치령’으로 송환되지 않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200-300명쯤 됐었다”고 회고했다(<한겨레> 2000. 09. 04).

사형되거나 장기수가 된 경우가 수백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남쪽에 남게된 인민군포로 약 3만 6-7천 가운데는 비자발적으로 억류된 숫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민군포로에 관하여 남한과 미국이 저지른 불법성이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서도 잘 드러난다. 미국은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에 당혹하여 이승만을 제거할 쿠데타를 계획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철회하기도 했다. 또 포로수용소에서는 반공·친공 포로간에 자유송환 심사 과정을 둘러싸고 살육전이 전개되었고, 이 와중에 거제도 포로수용소장인 도드준장이 포로에게 납치되었다. 이를 계기로 포로들에 대한 잔학행위, 강제심사 등이 알려져 미국에 대한 비판여론이 세계적으로 고조되기도 하였다.<sup>18)</sup>

이러한 수용소내의 살육행위에 염증을 느낀 인민군포로 97명은 남과 북을 모두 등지고 인도나 브라질로 떠났다. 인민군장교 주영복은 20일간의 반공특공대의 고문과 구타에 못 이겨 도망을 쳐 결국 브라질을 택했다. 중국군 포로 가운데 1만5천은 주로 대만 특수부대의 노골적 폭력에 의해 대만으로 강제 송환되어 이산가족이 되었다.

이에 비해 국군포로는 숫자도 훨씬 적고 ‘반공포로’ 석방과 같은 불법행위가 북쪽에서는 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군포로로 남쪽 송환자는 8천3백(7천6백?) 명 정도이고, 북쪽 송환자가 330명 정도이다. 국군포로 전체의 숫자가 인민군포로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은 첫째, 인천상륙작전과 같이 국군의 퇴로가 차단되어 바로 포로가 되거나 빨치산이 되었다 포로가 되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둘째는 국군포로 가운데 많은 숫자는 북한의 ‘교화’에 따라 인민군으로 편입되었다. 아마 국방부에서 최근 미귀향 국군포로의 숫자가 1만9천이라는 이야기는 이들 편입된 국군포로도 포함한 숫자일 것이다.

장기수 최하종의 증언에 의하면 국군포로에게 “국방군 생활 중 배가 고프지 않았나?,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나? 인간대접 제대로 받을 수 있었나?”고 물으면 모두들 부정 일변도였다 한다. 그러면 인민군에 가면 배가 고프지 않고 후에 교육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인간대접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대부분 인민군으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1946년 친일파를 완벽히 청산하고 민주개혁과 토지개혁을 통하여 민중중심의 사회로 이행이 되어 남쪽의 껍박한 민중생활과는 대조를 띠고 있어 국군포로가 자발적으로 인민군 편입을 원했을 가능성은 높았다. 또 일부의 증언에 의하면 실제로 상당한 숫자가 자원했다. 제네바협정 제3협약 4조 a의 포로 정의는 전범자, 귀순자, 피 석방자를 포로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미귀향 포로를 ‘강제 억류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

또 브라질로 간 손천기의 회고에 의하면 포로생활 역시 남쪽과는 달리 북쪽에서는 “가혹행위는 없었고 나무 베기 등 노동과 학습·토론이 전부여서 포로들 사이 대립 역시 없었다”한다. 인민군 포로 가운데 인도나 브라질 행을 택한 숫자는 97명이지만 국군포로로서 제3국 행을 택한 숫자는 겨우 2명뿐이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인 손천기는 포로수용소의 살육전 때문에 제3국 행을 택한 남쪽

18) 이들 가운데 일부는 51년 거제도 84포로수용소에 억류된 인민군 출신 반공포로의 모임인 반공청년단에서 출발하여 회원을 1만8000여명 거느리고 있다. 창립 49년 만에 단체 이름에서 ‘반공’이란 단어를 없애고 통일안보중앙협의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안정일 총무국장은 “공산국가와도 교류하고 남북간 통일·화해 기운이 높아가는 시대 흐름에 맞춰 ‘반공’이라는 낡은 구호를 벗고 통일과 국가안보를 지향한다는 뜻으로 이름을 바꿨다”며 “창설 당시에는 국시가 반공인 줄 알고 따랐지만, 사실은 통일이 국시가 아니냐”고 말하여 통일시대의 도래를 실감나게 한다(<한겨레>, 2000. 9. 21).

에 수용된 인민군포로와는 다른 요인 때문에 브라질을 택했다. “중삼(서울 종로 3가 사창골) 출신 인 내가 서울로 돌아간들 사람구실을 할 것 같지 않아 외국행을 택했다”.

국군포로에 대한 북한의 강제역류가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최근 남한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만을 두고 북한이 국군포로의 자유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역류시켰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들은 휴전당시는 북한에 자발적으로 남았을 수 있고 또 인민군에 편입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최근 식량난과 경제난 때문에 늦게나마 남쪽 귀환을 시도하면서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 역류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살펴 본대로 이승만 정부는 인민군포로에 관한 한 많은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이러한 예도 국군포로 즉각 송환을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에겐 전제조건이 따른다. 곧, 남한 정부가 과거 인민군포로 처리과정에서 자행한 불법성 등에 대하여 늦게나마 공식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 이 피해 인민군포로들에 대한 복송의사를 지금이라도 확인하여 원하는 사람에게 국군송환과 맞교환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남한정부가 이러한 과거의 불법사실을 계속 부인해 왔으므로 이 시점에서 이를 시인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되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 역시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그래도 자기부정을 해야 하므로 이를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 5. 특수 유족이산가족

특수유족이산가족은 남과 북에서 각기 보도연맹원과 빨갱이로 몰려 학살된 좌익유족 이산가족과 반동으로 몰려 처형된 우익유족 이산가족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들 특수 유족이산가족은 해방공간의 좌우익 투쟁에서부터 생성되어 6.25전쟁이 시작되면서 약 30만에 이르는 보도연맹원에 대한 집단적 학살, 6.25발발 시 1800여명의 대전형무소 수감자에 대한 집단적 처형과 같은 수감자 학살, 노근리나 이리역 같은 미군에 의한 학살, 북한인민군 과 빨치산 및 토착 공산세력에 의한 학살, 수복과정에서 남한 군과 경찰에 의한 부역혐의자에 대한 무차별 학살 등으로 절정을 이룬다. 대표적인 경우인 보도연맹원과 형무소 수감자에 한정하여 세부적으로 그 양태를 살펴보고 전반적인 규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국민보도연맹원 학살

보도연맹은 이승만 정부가 좌익세력에 대한 통제와 회유를 위하여 만든 전국조직으로 연맹원이 30-35만 명에 이르렀다. 6.25전쟁이 터지자 이들 연맹원이 북한 점령의 참병역을 할 것을 우려하여 평택이남의 전체 회원에 대한 학살명령이 최고위층에서 내려져 전국에 걸쳐 연맹원에게 자행된 집단학살이었다. 경남 진양군 대각면에서 이루어진 학살에 대한 증언은 전쟁초기에 이루어진 학살의 유형을 짐작케 한다.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도연맹원을 소집하여 훈련을 시켰다. 전쟁 후 3~4일 후부터 훈련이 시작되었다. 면에서 한 40~50명이 훈련을 받았다. 2차에 걸쳐 사람들이 죽었다. 1차는 수곡면에서 4~5명되었는데 먼저 잡아가 버렸다. 거물급이라고 생각되던 사람들이었다. 2차는 몇 차례 소집훈련을 한 후 하루는 훈련하던 사람들을 모두 묶었다. 죽은 사람이 40~50명되었다. 명석(진양군 명석면) 근처의 골짜기에 몰아넣고 일제사격을 해 죽었다고 한다(정진상, 1994: 118).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학살된 보도연맹원은 20-25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sup>19)</sup> 보도연맹원에 대한 초기의 집단학살은 그 이후 연쇄 학살의 고리를 형성했다. 곧, 보도연맹에 연루되어 학살된 유가족이 그 이후 진주하는 북한인민군에 힘입어 남한의 공무원, 경찰, 지주계급 등에 대한 보복살인을 자행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 보복학살은 9·28수복 후에 주로 우익과 경찰 등에 의한 역 보복학살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와 더욱 더 동족상잔을 초래한 원인제공을 하였다.

#### 2) 형무소 수감자의 집단 학살

1999년 12월 16일 미국 국립문서기록보존소에서 비밀해제된 한국전쟁 관련 문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1950년 7월 4일에서 6일까지 1800여명에 이르는 대전형무소 정치범이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되었다.<sup>20)</sup> 이 같이 6.25전쟁 초기에 형무소에 있던 좌익 수감자들이 최고위층의 지시에 의하여 대대적으로 학살되었다. 당시 형무소 재감자는 3만 7천 여명이었는데 평택이북 재감자 1만 7천을 제외한 2만 명이 학살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재감자에 미결수는 포함되지 않아 거의 기결수 숫자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결수도 대부분 처형된 것으로 보여 실제 형무소 재소자의 학살은 2만을 훨씬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경우 1402명(김상웅, 1995: 166-167) 대전의 경우 약 3천명이 학살된 것으로 알려졌다.<sup>21)</sup> 부산의 경우 기·미결수를 합하여 약 6천 명이 학살되고 불심검문 등에 체포한 혐의자 등과 함께 처형되어 영도 동삼들 골짜기, 김해 대동면 신어산, 사하구 부평동 삼박골짜기, 송정동 구더포와 광어촌 사이 골짜기에 매장되고, 일부는 오륙도와 영도 앞 바다에 철사로 묶인 채 수장되었다. 이들 시체가 대마도에 밀려와 어장에 걸려 어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정도로 대규모였다(김상웅, 1996: 105-107).

국가보안법 피의자로 재판중인 통일일꾼이었던 손병선이 재판정에서 개진한 모두진술은 민간인 학살의 체험과 통일일꾼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잘 보여 준다.

저의 아버지는 8·15해방 이후 조국의 진정한 자주독립과 통일을 위하여 활동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옥살이를 했으며 출옥 후에는 고향인 충북 영동에서 부산의 산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제가 23

19) 정희상은 30만으로 서증석은 최대 10만으로 보고 있으나(서증석, 1999: 607)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알 수 없다. 정희상은 평택이남의 전원에 해당하는 30만이 모두 학살된 것으로 추정하고, 서증석은 일부 유족회 등에서 밝혀낸 자료를 중심으로 10만 수준으로 주장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학살명령이 대한민국 최고위층에서 내려졌고, 학살이 평택이남의 경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4.19이후 유족회 조사 등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이긴 하지만 관할 지서장 등이 학살을 시행하지 않은 곳도 있고, 일부 도망 등으로 모면한 사람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정희상은 과다추정 서증석은 과소추정이라 볼 수 있다. 20-25만 수준으로 보는 것이 보다 가까운 추정이라고 여겨진다.

20) 발굴된 문건은 주한 미대사관 육군무관 밥 에드워드 중령이 작성해 보고한 ‘한국 정치범들의 처형’(2급 비밀)과 ‘한국 육군 헌병에 의한 처형’(3급 비밀) 등 2건이며 처형 현장을 찍은 사진 18장과 7장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다. 에드워드 중령은 50년 9월 23일 보고한 ‘정치범들의 처형’ 문서에서 1950년 7월 첫째 주 사흘 동안에 걸쳐 대전형무소에 수감중인 정치범 1800명이 집단 처형됐다고 보고했다. 이 문서는 또 “처형 명령은 의심할 바 없이 최고위층에서 내려졌다”고 밝히고 있다(『한겨레』, 2000년 1월 7일).

21) 대전형무소 수감자에 대한 대대군 산내면 골랑골(또는 낭월곡) 학살사건은 7월 2일부터 15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재소자 뿐 아니라 보도연맹원도 동시에 학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대전형무소 산내 학살진상규명위원회, “대전형무소 산내 학살사건 진상 중간보고서” 2000년 7월 8일

살 되던 때에 동대신동의 산 위 저희 마을 옆 초량 공동묘지에는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미 제 G.M.C.트럭이 한차 가득히 부산형무소에서 처형된 사상범들을 싣고 와서 가마니로 덮어놓은 것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이 모든 비극이 해방이후 조국이 분단된 까닭이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반핵평화운동연합, 1992: 2).

이들 외에도 제2전선지역주민, 피난민, 부역혐의자, 공비 및 통비 혐의자, 국민방위군이나 불심검문 또는 가택수색에 의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도 학살의 대상이 되는 불특정 다수민간인, 예비검속에 걸린 사람 등이 좌익빨갱이라는 혐의로 대거 학살되어 그 수는 1백만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좌익에 의한 피학살자는 주로 그들이 분류한 반동분자인데 이들은 주로 친일파, 친미파, 민족반역자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이 밖에도 경찰관, 반공연맹원, 국민회지부장, 군인가족 등을 지칭한다(장미승, 1992: 191). 남한 정부의 공식적 발표에 의하면 이들 우익 피학살자의 숫자는 12만9천이다.

북한지역에서의 피학살자는 북한전역에 걸친 불특정다수 인민들로 미군의 초토화작전에 희생되었고 또 40일 동안 북한을 점령한 시점에서는 주로 노동당이나 정부기관에 종사한 사람과 좌익혐의자였다. 초토화 작전에 학살된 숫자는 수십만에 이를 것으로 보이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40여일 북한을 강점한 동안 남한의 군과 경찰 및 서북청년단 및 공작원에 의해 학살된 숫자는 북한당국의 공식적 발표에 의하면 17만 2천이다.

이들 수백만에 이르는 특수유족 이산가족은 전쟁을 빌미로 한 민간인학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의 이산가족보다 더욱 쓰라린 원한과 분노 속에 이산가족의 고통을 감내하여 왔다. 이제 남한 내에서 전국적으로 40여 곳에 유족회가 조직되고 이들이 전국적인 유족회를 조직하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앞의 이산가족은 생사확인->상봉(방문 면회소)->서신교환->자유왕래->재결합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도가 가능하지만 이들 사별한 유족이산가족은 역사청산의 방도가 최선의 방안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는 전쟁을 빌미로 인간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인 민간인학살이라는 살인죄에 면죄부를 안겨주는 야만의 역사에 종지부를 짓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문제 해결일 것이다.

**6. 결론: 이산가족의 해법은 포괄적, 탈상호주의적, 점진적 방식으로**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이라는 전기를 맞아 국군포로 가족들과 동진호 등 관련가족들은 이들의 송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개인적 차원에서 이런 가족의 요구는 당연하고 또 그들의 맺힌 한은 이해가 충분히 간다. 그러나 개인 수준의 합리적 요구나 당위적 행위가 전체 수준의 합리성과 당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점이 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구나 남북 문제 전반이나 사회전체의 처지와 맥락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접근해야 할 일부 정치계, 퇴역장성 및 언론계 등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들먹이며 막무가내식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곧 장기수를 송환하면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송환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실제로는 반상호주의이고 궤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이끌 위험을 안고 있다.

이산가족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다양한 범주를 가진다. 납북자와 납남자가, 국군포로와 인민군

포로, 납파공작원과 북파공작원과 같이 남북이 각기 주체가 되어 동일범주의 특수이산가족을 발생시켜 왔었다. 이는 등가상대 범주라고 볼 수 있어 이산가족의 인식과 해법에는 이들 등가상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인 요구로 그쳐 형평성을 위배하여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 이제까지 남북정권은 대부분의 특수이산가족에 대한 원인제공, 곧 특수한 목적을 가진 '불법행위'인 납치나 공작원 파견 등을 부인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 이를 부인 또는 확인도 복인도 하지 않는(NCND)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남북 양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분단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북이 서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대부분 파생된 이산가족 문제는 상호주의 원칙 아래 엄격하고도 공개적으로 송환절차를 밟게 되면 남북은 과거 자신의 불법행위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역사적 진실이나 인권의 차원에서는 이 문제의 진상이 밝혀져야겠지만 지금 통일시대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상호주의적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은 실현가능성도 없거나 화해와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갈등을 재발시켜 그나마 진전되는 일부 일반이산가족 문제마저 중단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이산가족 모두를 한 범주 속에 넣어 '분단과 전쟁의 희생자로서 이산가족'으로 설정하고 일괄 해결하는 포괄적, 탈상호주의적, 점진적 방식을 취해야 한다.22)

이러한 바탕 위에 일반 및 특수이산가족의 문제해결은 생사확인 -> 상봉(방문 면회소) -> 서신교환 -> 자유왕래 -> 재결합 등의 차례로 확대해 나가면서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개선과 궤를 같이하여 남북화해와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조건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 특수 유족이산가족의 경우는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개별적이 아닌 집단적), 사죄, 역사기록 등의 역사청산을 그 원형으로 설정하여 이에 가깝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인철, 1992, 『월남 개신교·천주교의 뿌리: 해방후 북한에서의 혁명과 기독교』, 『역사비평』 여름호 (계간 17호)  
 강정구, 1996. "해방 후 월남인의 원남동기와 계급성에 관한 연구" 강정구,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역사비평사,  
 강정구, 1996.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역사비평사,  
 강정구, 1999. "북한식량난과 사회변화", 강정구·법륜역음, 『1999 민족의 희망찾기』 서울: 정토출판  
 강정구, 2000. "한국전쟁과 민족통일: 전쟁의 통일을 넘어 평화와 화해의 통일로"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통권 48호, 2000년 겨울호  
 권태환, 1978, 「인구성장의 추세와 요인」, 이해영·권태환 편, 『한국사회: 인구와 발전』 제1권,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22) 납북자 가족모임 관계자들과 한나라당 등은 납북자는 일반 이산가족과 다르므로 통상의 이산해법 대상이 아니라 송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대한적십자는 "487명의 납북자 중 이제 겨우 한가족이 만났을 뿐"이라며 "불필요하게 복측을 자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면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산가족의 범주에서 점진적인 접근을 견지하고 있다.



김 구, 1992, 「건국실천원 양성소 창립 1주년 기념식에 보낸 치사」, 백범김구사업기념사업협회, 『김구주석 최근 언론집』

김귀옥a, 2000. "남한이 납치한 북한어부, 44년 만에 입열다: 남남어부와 북과공작원의 현대사 증언" 월간 <말> 2000년 11월호

김귀옥b, 2000. "납치 북한인을 공작원 위안부로 이용했다: 북과공작원의 현대사 증언" 월간 <말> 2000년 12월 호

김귀옥, 2001.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를 어떻게 인식해 왔을까" 미발표 원고

김남식, "전쟁 전후 남한에서의 무장 유격투쟁의 전개" 최장집편, 『한국전쟁연구』 태암

김성철(1993), 『역사 앞에서』 창작과 비평

김주환, 1990. "한국전쟁중 북한의 대남한 점령정책" 최장집편, 『한국전쟁연구』 태암

류상영, 1990. "휴전협정의 성립과정과 성격"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한국전쟁의 이해』. 역사비평사.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4,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양상우, 1999. "북한에 투입된 남한 공작원" <통일시론> 통권4호, 1999년 가을호

오연호, 1994. "미 CIA의 92대선 공작과 친CIA 인맥", <월간 말> 1994년 1월호

유의영, 1978, 「인구이동과 도시화」, 이해영·권태환 편, 『한국사회: 인구와 발전』 제1권,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이영신, 1993. 『비밀결사 백의사』 알림문,

이정훈, 2001. "남북첩보전쟁 반세기: 피의 보복전을 부른 공작의 세계" 월간 <신동아> 2001년 1월호

장미승, 1990. "북한의 남한 점령정책."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한국전쟁의 이해』. 역사비평사.

전충립, 1996. 『세월의 언덕 위에서』 한겨레신문사

조은·강정구·신광영, 1992,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조형·박명선, 1985, 「북한출신 월남인의 정착과정을 통해서 본 남북한 사회구조의 변화」, 변형윤 외,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까치

최의철, 2000.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전망"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9권1호, 2000년 여름

최태환·박혜강, 1989. 『젊은 혁명가의 초상』. 공동체.

한호석, 2000. 『평양회담과 연방제 통일의 길』 도서출판 『민』

와다 하루끼(서동만 옮김), 1999. 『한국전쟁』 창작과비평사

커밍스 와 할리데이, 1990.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태암, 1990

2001년 2월 18일 오전 세션

## 한반도의 과거청산

아시아에서의 과거청산, 인권 그리고 정의

김창록 ·

과거청산과 여성인권

이정은 ·

## 아시아에서의 과거청산, 인권 그리고 정의

—한국과 일본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창록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chrkim@hyowon.pusan.ac.kr

### I. '아시아적 가치'로부터 '아시아인들의 가치'로

20세기의 끝에 서서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아시아'를 중심개념으로 하는 담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아시아적 가치'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담론들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강력한 국가와 정치적 권위·교육과 자기개발·근검과 절약·근면과 노동 규율·사회적 조화와 집단지향성·사회적 교양과 지식인의 역할 등을 강조하는 유교를 '아시아적 가치'로 내세우고, 그것을 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연결지우는 '유교 자본주의론'이다.

이와같은 '유교 자본주의론'으로 대표되는 '아시아적 가치론'은, 냉전의 종식에 따르는 아시아에의 증대된 관심과, 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국가들의 '경제적 기적'이라고 하는 일정한 실체를 반영한 것이다. 게다가, 그것은 아시아에서의 경제발전의 문화적 측면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설명적 기능을 하는 것이며, 또한 지난 수세기에 걸친 서양 중심의 사고방식에 대한 일정한 비판의 계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은, '아시아'라는 개념의 지나친 추상성·애매성, 경제발전에서 유교의 영향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 경험적 증거와 인과적 연관의 불명확성 등 그 자체가 내재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sup>1)</sup> 서양에 대한 대자로서의 아시아의 역사 속에 등장한 특정한 문화를 작위적으로 절대가치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문화 중심주의의 표현에 다름아닌 오리엔탈리즘의 문제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까닭에, "'아시아적 가치'라는 폭력적 허구에 의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날조하는 '아시아적 오리엔탈리즘'의 언설"<sup>2)</sup>이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시아의 현실에 대한 자기 비판을 통해 아시아 속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서양과는 다른 아시아가 서양과 유사한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라는 서양적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에서, 애당초 '아시아적'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바로 그 '아시아적 가치'라는 이름 아래, 아시아인들의 인권이 얼마나 오랫동안 무참하게 유린되어 왔으며,<sup>3)</sup> 또 현재도 유린되고 있는가라는 점에 대한 고려의 거의 전적인 결여는 그 연장선상에 위

1) 이에 관해서는 전상인, 「희미한 옛 유교의 그림자 - 아시아적 가치와 동아시아 경제발전 -」, 『전통과 현대』 12호, 2000.7. 참조.

2) 井上達夫, 「リベラル・デモクラシーとアジア的オリエンタリズム」, 今井弘道他編, 『變容するアジアの法と哲學』, 有斐閣, 1999, 73쪽.

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아시아적 가치'가 '아시아인들의 가치'가 될 수는 없다. 모든 실효적인 가치가 그러하듯이, 아시아적 가치도, 그것이 아시아인들에게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지향하는 아시아인들의 삶 속에서, 특히 그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노력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지만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침략과 전쟁의 역사로 얼룩진 아시아의 20세기는 수많은 인권유린 피해자들의 아픔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남기고 있다. 게다가 그 아픔은, 당연히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짐으로써, 새로운 추가적인 아픔을 낳고 또 쌓아가고 있다. 그 결과 개인의 아픔은 단지 개인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적 차원으로, 그리고 국제적(국가간) 갈등의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국가들 사이의 신뢰의 결여는 바로 거기에 커다란 원인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들의 아픔에 대한 '그들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외침이야말로 아시아 국가들의 신뢰회복과 아시아인들의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아시아적 가치를 형성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아시아적 가치는 그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과거청산의 노력 속에서 형성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아시아인들의 가치로서의 아시아적 가치의 형성에 관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생각되는 한국과 일본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의 과거청산과 인권 그리고 정의의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선 한국과 일본에서의 과거청산과 인권에 관한 경험을 간략하게 개괄하고, 그것을 공감적 정의와 법적 정의라는 측면에서 재구성하고, 다시 그것을 토대로 하여 과거청산을 통한 아시아적 가치의 형성이라는 문제를 재검토해 보기로 한다.

## II. 한국과 일본의 경험

### 1. 한국의 경험

한국에서의 과거청산은 우선 35년간의 식민지 지배가 남긴 負의 유산의 청산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대내적으로는 '일제잔재 청산'의 요구로, 대외적으로는 '대일 청산'의 요구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위해 만든 제도들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협력하여 그 제도를 운영한 한국인들, 그리고 그러한 한국인들의 잘못된 의식의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일제잔재 청산'은, 1945년 해방 직후 일본이라는 지배자의 자리를 대체한 미군정이 그 지배의 편의를 위해 식민지기의 인적·제도적 자원을 거의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좌절되었으며, 그 결과 '해방' 후에도 연속된 식민지기의 인적·제도적 자원을 토대로 수립된 권위주의정권들에 의해서도 억압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대일 청산'의 요구도, 일본의 거부에 의해 좌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1965년의 한일간 조약 및 협정과 그 연장선상에 위치한 이후의 한국정부의 대일 소극의 교 속에서 자신의 국가에 의해서도 왜곡되었다.<sup>4)</sup>

3) 이것은, '아시아적 가치'의 일본판인 패전전 일본의 '萬世一系の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그 한국판인 박정희시대의 '충효'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적 민주주의' 아래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

또한 한국에는 해방 이후의 분단과 한국전쟁 과정에서, 그리고 연이은 권위주의정권 아래에서, 한국 및 미국에 의해 자행된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침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청산되어야 할 과거가 있다. 1948년의 제주와 한국전쟁기간 동안의 거창 및 노근리에서의 한국군경 및 미군에 의한 양민(비무장 시민) 학살은 전자의 대표적인 예이며, 1980년의 광주에서의 양민 학살과 1970년대에 서 1980년대에 걸친 '의문사'(국가기관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강하게 추정되지만 그것이 입증되지는 않은 죽음)들은 후자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과거들에 관한 청산의 요구는 사건 발생 당시부터 줄곧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유족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한국에서, 그 요구는 철저히 억압되었으며, 심지어는 그 요구를 입밖에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졌다.

한국에서의 이러한 과거청산의 좌절과 왜곡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권위주의적 지배가 종식되고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그리고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청산되어야 할 과거의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되었다. 자신의 힘으로 권위주의적 지배를 종식시킨 한국인들의 실천은 그 권위주의적 지배기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역사 바로 세우기'에 의해 확산되었다. 한국인들은, 우선 대내적으로는 광주, 거창, 제주의 학살과 '의문사' 문제의 해결을 한국정부에 촉구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일본군'위안부'·징용 등의 문제의 해결을 일본정부에 대해, 그리고 '노근리' 등의 문제의 해결을 미국정부에 대해 촉구하였다. 나아가 한국인들의 과거청산 요구는 한국이 가해자인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에 의한 양민 학살에 관한 청산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한국인들에 의한 이러한 과거청산의 노력은 일정한 결실을 맺었다. '광주'와 관련해서는 전직 대통령 2명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해의 구제와 재발의 방지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거창'·'제주'·'의문사'와 관련해서도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정부가 일정한 자체 조사를 하고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노근리'에 대한 일정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한국정부는 유엔 등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과거청산은 여전히 '현안'이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광주'를 제외한 위의 사례들에 관한 청산이 아직은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을 뿐 배상과 처벌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박정희 기념관의 건립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과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전과 관련한 청산의 노력에 대해서도 참전군인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저항의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대외적인 청산, 그 중에서도 특히 대일 청산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일본은 피해자들의 배상·처벌·역사교육 등의 요구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65년의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정부 또한 극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의 요구는, 일본에서의 소송에 이어 한국에서의 소송<sup>5)</sup>, 그리고 미국에서의 소송<sup>6)</sup>으로 확

4) 이에 관해서는 김창록, 「한국의 법체계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法學研究』(釜山大學校 法科大學·法學研究所) 제38권 제1호, 1997.12. 참조.

5) 2000년 5월 1일 한국인 징용피해자 6명이 미쯔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미불임금 지급 및

산되고 있다.

## 2. 일본의 경험

일본에서 청산되어야 할 과거의 핵심은 패전전의 신권천황제였다. 그것은, 대내적으로는 신권천황제의 억압적 구조에 관한 청산으로, 대외적으로는 신권천황제 아래에서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관한 청산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 중 대내적 청산은, 연합국의 압력에 의해 신권천황제가 상징천황제로 바뀌고, 신권천황제와 관련된 각종의 제도들이 폐지 혹은 개선됨으로써 일정 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권천황제로부터 상징천황제로 바뀌는 과정이 잘 드러내 보여 주듯이, 그 청산은 결코 '단절'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연속'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 것이었다. 상징천황제는, 연합국, 특히 미국의 점령의 편의 때문에 초래된 것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일본인 자체 속의 '단절'의 부재에 기초한 것이었다. 비록 공산당 등에 의한 소수의 '단절'의 움직임이 있기는 했지만, 사회당까지 포함한 대다수의 정당들과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국체의 호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청산되어야 할 과거의 핵심인 천황제는, '신권'으로부터 '상징'으로의 제도상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연속'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천황제를 매개로 일본의 패전 전후도 '실질적으로는 연속'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sup>6)</sup>

이와같은 천황제의 연속을 통한 패전 전후의 연속은 곧 패전 전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따라서 과거에 관한 철저한 청산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청산되어야 할 과거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던 천황 히로히토(裕仁)는 면책되었으며, 그 최고책임자의 면책은 일본인 자신에 의한 어떠한 전범재판이나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편 이와같은 대내적인 청산의 부재는 대외적인 청산의 부재도 초래했다.<sup>8)</sup> 최고책임자인 천황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건재하다는 것은, 그 천황의 이름으로 자행된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관해서도 또한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식민지 한국에서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1965년 한국에 지급한 5억 달러는 결코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자금' 내지는 '독립축하금'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sup>9)</sup> 바로 그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대외적 과거청산은 1990년대에 들어와 다소간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6) 이에 관해서는 한우성, 「끝나지 않은 전쟁 - 미국에서 진행중인 '일본군위안부' 및 징용 소송에 대한 보고서」, 『당대비평』 13, 2000년 겨울호 참조.

7) 이에 관해서는 金昌祿, 「日本에서의 西洋憲法思想의 受容에 관한 研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8. 제7·8장 ; 김창록, 「한국에서 바라 본 천황제」, 『역사비평』 2000년 봄호, 2000.2 참조.

8) 이에 관해서는 栗屋憲太郎他, 『戦争責任・戦後責任』, 朝日新聞社, 1994 참조.

9) 이러한 주장은 시이나 에쓰사부로오(椎名悦三郎) 외상의 아래와 같은 발언에서 출발한다. "새롭게 발족하는 한국에 대해, 축하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잘 자라달라는 뜻에서, 주로 이 경제협력의 문제는 고려되고 있다." 『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條約及び協定に關する特別委員會議錄第十號』, 1965.11.5, 21쪽.

1990년대에 들어와 냉전의 종식을 배경으로 피해자들의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그에 호응한 데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1991년부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스스로 '위안부'였음을 밝히면서 청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서고, 1992년 일본인 연구자에 의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일제의 정부와 군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발견된 이후, 일본정부는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오와비(おわび)와 마음으로부터의 반성'을 거듭 표명해 오고 있다.<sup>10)</sup>

하지만, 이러한 전환은,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한 조건의 정비, 그리고 그것을 위한 대일 비판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성격이 강하며, 그 점에서 청산되어야 할 과거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sup>11)</sup> 그것은 그 이후에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본 각료들의 '망언'이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에 의해 입증된다. 또한 일본정부가 '법적으로는 종결되었다'라는 태도를 관철하면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청산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 III. 과거청산과 공감적 정의

위에서 살펴 본 한국과 일본에서의 과거청산의 경험은, 우선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과거청산이 그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가해진 아픔은 거의 모든 한국인들에 의해 공동 체험된 것이었기 때문에 해방 직후에는 굳이 공감이 필요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좌절되어 온 그 아픔의 청산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조금씩 진전되게 된 것은, 체험을 공유하지 못한 후세대의 한국인들이 피해자들의 외침을 듣고 그 아픔에 공감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이것은 한국의 대내적 과거청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광주'·'제주'·'거창'·'노근리'·'의문사' 등의 문제가 그나마 해결의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권위주의정권들에 의해 오랫동안 억눌려 온 피해자들의 외침이 마침내 울려 퍼지게 됨으로써, 그리고 그 외침에 공감한 한국인들이 실천에 나섬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1990년대 이후 피해자들의 외침에 공감하여, 피해의 사실을 널리 알리고, 피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연구하고, 피해자들의 재판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에 나선 일본인들이 없었다면, 그나마의 변화도 가져올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경험은,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단지 그 아픔의 해소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픔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지는 '공감의 도미노' 내지는 '공감의 연대'를 낳음으로써 보다 많은 아픔의 해결로 이어지고, 나아가 그러한 아픔들을 만들어 내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으로까지 확산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국의 경우, 시간적인 근접성 때문에 가장 먼저 해결된 '광주'의 아픔은, 그것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제주'·'거창'·'노근리'·'의문사'의 아픔에 대한 공감을 자연스럽게 불러 일으켰으며, 나아가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가지지 못했던 '국가에 의한 범

10) 이에 관해서는 김창록 외2,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法學研究』(釜山大學校 法科大學·法學研究所) 제37권 제1호, 1996.12 참조.

11) 이에 관해서는 吉田裕, 『日本人の戦争観』, 岩波書店, 1995 참조.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sup>12)</sup>을 불러 일으켰다. 더우기 한국인들의 그러한 공감은 국경을 넘어 베트남인들의 아픔에까지 확산되었다. 위의 과거들의 청산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에 의해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에 의한 양민 학살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다름 아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그 '부끄러운 역사'의 청산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그 점에서 시사적이라고 할 것이다.<sup>13)</sup>

이러한 '공감의 도미노' 내지는 '공감의 연대'는 일본의 경험 속에서도 발견된다. 일본에서의 과거청산의 진전을 가져온 '외국'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은 곧바로 '일본'의 각 방면에서의 과거의 잘못된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확산되었다. 일본의 과거청산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한 일본인 철학자가, "구 일본제국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의 피해자들"의 "호소"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일본인으로서의 책임", 즉 "전후책임을 확실하게 다하지 못해 온 일본국가의 정치적 양태에 대한 책임"·"일본국가가 전후책임을 확실하게 다하도록 일본국가의 정치적 양태를 바꾸어 갈 책임"·"일본정부가 하여금 전후책임을 다하게 함으로써, 구 제국의 負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기존의 일본국가를 비판적으로 변혁해 갈 책임"에 대한 자각에 이르고, 나아가서는 "상징 천황제 그 자체를 문제삼아야" 하며, "상징천황제로부터도 이탈한다고 하는 선택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까지 다다르고 있는 것은, 그 좋은 예일 것이다.<sup>14)</sup>

한편, 한국과 일본에서의 과거청산의 경험은,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을 위해서는 국가의 올바른 자리매김이 필요하다는 것도 보여 준다. 한국의 경우, 한편으로 식민지기의 국가상실의 경험과 분단이 부과한 통일국가에의 염원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식민지기부터 권위주의정권기를 통해 국가중심의 사고방식이 강요된 결과, 국가는 절대적인 존재로서 개인들 위에 군림해왔다. 그 점에서 한국에서 국가는 오랫동안 '과대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바로 그 과대국가가, 국가도 범죄자일 수 있다는 의식이 싹트는 것을 막아 왔으며, 또한 국가에 의해 초래된 개인의 아픔이 드러나지 못하게 덮어 가림으로써 그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 온 것이다.<sup>15)</sup> 한편, 일본의 경우, 극단적인 국가주의 아래 추진한 전쟁에서의 패배의 결과, 패전 후에는 국가를 내세우는 것이 일종의 터부로서 간주되었다. 그 점에서 일본에서 국가는 오랫동안 '과소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12) 광주의 학살을 국가에 의한 범죄로서 명확하게 자리매김한 것으로, 조용환, 「5·18특별법과 전·노재판의 문제점」, 『역사비평』 1996 봄호 참조.

13) 이에 관해서는 『한겨레21』의 '베트남전 한국군 양민학살'에 관한 캠페인 '부끄러운 역사에 용서를 빌자'(http://www.hani.co.kr/h21/vietnam/vietnam.html) 참조. 또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을 추구하는 한국·일본·대만의 3국 위원회가 1997년 이후 대만·제주·오키나와·광주에서 매년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대만의 '2.28', 일본의 '오키나와', 한국의 '제주4·3'과 '광주' 등의 과거에 대한 청산을 추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4) 高橋哲哉, 『戦後責任論』, 講談社, 1999, 10·51·250쪽. 그리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의해 "몰려서", "피해자"의식, "一國史"적 관점, 여성=평화의 여신으로 보는 본질주의, 그리고 천황·천황제 문제에 대한 관점의 결여"에 의해 규정되어 온 "전후 여성운동"·"전후 여성사연구의 틀"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이르고 있는, 일본인 여성운동 연구자의 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鈴木裕子, 「日本軍性奴隷制問題と天皇の戦争責任」, 池田恵理子他編, 『加害の精神構造と戦後責任』(日本軍性奴隷制を裁く2000年女性國際戰犯法廷の記録 Vol. 2), 2000, 159쪽.

15)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과대국가(권위주의정권)가 대일 외교의 수단으로서 한국인들의 '반일감정'을 이용하고, 때로는 유발하기도 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이용하기도 했다는 사실도 주목되지 않으면 안된다.

과소국가는 국가주의에 대한 자발적인 부정의 결과이기보다는 밖으로부터 가해진 압력의 결과였으며, 그리하여 '과대국가'에의 '동경'을 그 안에 숨기고 있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외견상의 과소국가'였다. 바로 그 외견상의 과소국가가, 한편으로 개인도 "일본국민의 한사람"<sup>16)</sup>으로서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는 것을 막아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도 싹트기 어렵게 하여 국가에 의해 초래된 개인의 아픔을 부차적인 것으로 돌림으로써 그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 온 것이다. 이와같이 양국에서의 '지나치게 큰' 혹은 '지나치게 작은' 국가가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양국인의 공감의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과거청산에 장애가 되어 왔다. 따라서 그러한 장애를 걷어 내고 과거청산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절한' 자리매김이 또한 추구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 IV. 과거청산과 법적 정의

한국과 일본의 경험은,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몫'을 돌려주는 과거청산이 법적으로 추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보여 준다.

법적 청산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선언"<sup>17)</sup>해 달라고 외쳐왔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진상규명·사실인정·사죄·배상·처벌·역사교육이다. 이 중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과 사실인정과 사죄이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가해진 침해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침해의 사실을 가해자가 인정하고, 그에 대해 가해자가 스스로 잘못이었음을 받아 들여 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들의 피해는 그것만으로는 결코 완전히 구제될 수 없다. 그 피해에 상응하는 '그들의 몫'에는 그들의 아픔을 후세에게 전하는 것과 함께, 피해에 대한 배상과 가해자의 처벌이 포함되어야 한다. 피해의 완전한 구제를 위해 법적 청산이 필요한 이유는 우선 여기에 있는 것이다.

법적 청산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없이는 청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한일간의 과거청산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잘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일 양국 정부는 과거청산 문제를 '현실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처리해왔다.<sup>18)</sup> 하지만, 우선 현실적 청산은 그때그때의 불균등한 양국간의 힘관계를 그대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껏해야 문제의 '유보'일 뿐 결코 '청산'이 될 수 없다. 한일간의 과거청산이 1945년 이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그리고 1965년에 양국간에 '기본'조약이 체결되고 난 후에도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종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미봉'에 커다란 원인이 있는 것이다. 나아가 문제를 대충 덮어 둔 채 '종결'을 외치는 양국 정부의 행태는,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강한 배신감을 심어 줌으로써, 문제를 더 악화시켜 오기도 했다.

다음으로 도덕적 청산은, 도덕이 그 성질상 극히 상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 언제

16) 高橋哲哉, 위의 책, 252쪽.

17) 韓國挺身隊問題對策協議會, 「戰爭責任者の處罰を求める告發狀」(2), 『法學セミナー』 480, 1994.12, 35쪽.

18)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김창록, 「한일관계와 과거청산」, 『國際地域問題研究』(부산대학교 국제지역문제연구소) 제17권 제1호, 1999. 3. 참조.

든지 '지나치게 약하다'라거나 '지나치게 강하다'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며, 따라서 언제까지나 '종결'되지 않은 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아가 도덕적 청산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법적으로 유효"였지만,<sup>19)</sup> "식민지 지배의 현실이라는 것을 적시하고, 엄한 반성을 하여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sup>20)</sup>라는 무라야마(村山)류의 '합법부당론'이, 한국인들의 대대적인 반발을 불러 일으켜,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이의제기와 한국국회에서의 결의안 채택으로까지 발전했다는 사실에 의해 입증된다. 또한, 위와같은 입장에 따라 적극 추진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해소하기 위한 배상금이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한 "보상"금<sup>21)</sup>을 지급하려 한 것이, 그 애매성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모욕감을 주어 거센 반발을 샀을 뿐만아니라,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 '부당성'에 대한 인식을 뿌리내리게 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신의 나라"의 국민으로 자리매김하고 그래서 "삼국인(三國人)"을 경계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도심군사훈련을 감행하는 국민으로 자리매김하며 "자학"하는 물구나무선 '자유주의'사관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이와같이 법적 청산은 피해자들의 요구에 최종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과거청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지만, 법적 청산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청산을 둘러싼 문제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 줌으로써, 문제의 해결의 필요성을 보다 확실하게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것은 1965년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관한 양국 정부의 해석을 검토해 보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본조약」은 그 제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already null and void임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한국 정부는, 1910년 조약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협정·의정서 등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무효이며, 'null and void'는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already'는 소급하여 무효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해 왔다. 그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10년의 조약 하나만이 대상이며, 'already null and void'는, 그 조약이 원래는 유효였으나, 대한민국정부가 성립된 1948년 8월 15일에 무효가 되어, 1965년의 조약체결 시점에 있어서 이미 무효가 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다. 한편, 「청구권협정」은, 그 제1조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 3억 달러를 10년간에 걸쳐 무상공여하고 2억 달러를 10년간에 걸쳐 장기차리의 차관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제2조 1항에서 "양체약국은 양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제2조의 청구권의 해결을 위해, 제1조의 자금이 제공된 것이라라고 해석

19) 1995년 10월 5일의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의 무라야마 토미이찌(村山富市) 총리의 발언. (일본 국회의회의록 검색시스템 [http://kokkai.ndl.go.jp/] 참조).

20) 1995년 10월 17일의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무라야마 총리의 발언.

21) 국민기금의 '보상'금을 수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전달된 하시모토 류우타로오(橋本龍太郎) 총리 명의의 편지. 「アジア女性基金から償い金を受け取った元「慰安婦」への總理の手紙」, 大沼保昭, 『東京裁判から戦後責任の思想へ』, 東信堂, 1997, 406쪽.

해왔다. 그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제1조의 자금은 '경제협력자금' 혹은 '독립축하금'이며, 그 자금을 제공하는 부수적인 결과로서 제2조의 청구권의 완전 해결이 인정된 것일 뿐, 양조항간의 법률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해석해 왔다.

요컨대 한국 정부의 법적 논리는 '불법 강점이었다. 따라서 배상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배상을 받았다'라는 것이며, 일본 정부의 법적 논리는 '합법적인 지배였다. 따라서 배상할 것이 없다. 그래서 배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양국 정부의 법적 논리는 그 각각에 있어서는 수미일관된 듯이 보인다. 하지만, 이후의 양국 정부의 조치를 고려에 넣게 되면, 양국 정부의 논리는 바로 파탄에 이르게 된다. 한국 정부가 받은 5억 달러가 '일제의 강점'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그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으면 안될 터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극히 일부를 극히 일부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했을 뿐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배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한국 정부의 법적 논리는 파탄에 이르게 된다. 한편 일본 정부가 배상을 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배상을 하지 않았다면, 배상을 할 사유가 인정된 때에는 배상을 해야 할 터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한국 정부와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과거 한 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sup>22)</sup>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법적으로는 종결되었다'라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논리는 파탄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양국 정부의 법적 논리의 파탄은 양국 정부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담합'을 거듭해 온 결과이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한일간의 과거청산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끝으로 법적 청산은 문제가 되는 과거의 청산이라는 차원을 넘어, 보편적인 법가치에 이룰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 점은 한국에서의 '광주'의 청산이 집단학살에 해당하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률<sup>23)</sup>로 귀결되었다는 데서도 확인이 되지만, 무엇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전시 여성의 인권'이 보편적인 법가치로 발전해 갔다는 사실을 통해 잘 확인할 수 있다. 사실 1991년에 한국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처음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전시 여성의 인권,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는 충분히 주목되지 못한 문제였다. 그러나 1992년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유엔 인권기관에 제기된 이후, 「국제법률가위원회 보고서」,<sup>24)</sup>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 보고서」,<sup>25)</sup> 「게이 맥두갈(Gay McDougal) 보고서」<sup>26)</sup>로 이어지면서, '위안부'에게 가해진 잔학행위가 "노예제,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라고 하는 중대한 국제범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개인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범죄실행자 만이 아니라 지휘책임이 있었던 자까지도 처벌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전시성폭력이 국제법 위반의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22)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1998.10.8.) (http://www.mofat.go.kr/main/top.html - 지역국별관계 - 아태지역 - 관련자료).

23) 법률 제5028호 「憲政秩序破壞犯罪의 公訴時效等에 關한 特例法」(1995.12.21).

24) 國際法學家委員會(ICJ)著 / 自由人權協會(JCLU)·日本の戰爭責任資料センター譯, 『國際法からみた「從軍慰安婦」問題』(원제목 Comfort Women : an unfinished ordeal), 明石書店, 1995.

25) UN. Doc. E/CN. 4/1996/53/Add. 1

26) UN. Doc. E/CN. 4/Sub. w/1998/13

선언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선언을 배경으로 르완다와 유고의 전범법정에서 전시성 폭력이 실제로 처벌되게 된 것이다.<sup>27)</sup> 이것은 법적 과거청산이 단지 과거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 그리고 개별적인 사안에 관한 과거청산이 보편적인 법가치의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이다.<sup>28)</sup>

V. 과거청산으로부터 아시아적 가치로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한국과 일본에서의 과거청산의 경험은,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과거청산이, 공감적 정의와 법적 정의의 추구 속에서, 다시 말해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에서 출발하여, 그 아픔에 상응하는 법적인 대가를 규명·추궁·부담하는 가운데,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그 경험은, 그러한 공감적 정의와 법적 정의가, 단지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온 과거의 청산을 가능하게 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동시에 '공감의 도미노' 내지는 '공감의 연대'를 통해 유사한 다른 아픔으로 공감이 확산될 수 있게 하고, 다시 그 공감이 그 아픔들을 만들어 내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그러한 확산과 발전의 과정을 통해 보편적인 법가치에 이를 수 있게 한다는 것도 보여 준다.

끝으로 그 경험은, 그러한 공감적 정의와 법적 정의가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 문제 속에 놓여 있는 아시아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추구하고 때에만 획득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 준다.

아시아인들이, 과거청산이라는 장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또 연대하여,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그들에게 법적 의미에서의 '그들의 것'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해 갈 때, 공감적으로 합의된 아시아인들의 정의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의야말로 '밖으로부터 주어질'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그래서 함께 꾸려가야 할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아시아인들의 가치'로서의 아시아적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7) 이에 관해서는 게이·J·마크도우-갈, 「戰時·性暴力をどう終わらせるか - 國際法から見た『慰安婦』問題 -」, 『世界』1999年8月號 참조.

28) 2000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의 도쿄(東京)에서 개최된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의 가장 큰 의미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보편적 인권과 보편적 법가치의 문제임을 전세계 시민들이 확인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과거청산과 여성인권

- 한국전쟁과 잊혀진 여성들의 삶 -

◇ 목차 ◇

- I. 문제제기
- II. 전쟁과 여성인권 : 과거청산의 의미
- III. 여성민중의 사회전기
- IV. 전쟁 전·후 여성인권 유린의 실상
  - 1. 전쟁 중 여성학살 : 강간과 성폭력
  - 2. 생업전선에서의 여성
  - 3. 봉건적 사회질서와 여성
- V. 맺으며
- \* 참고문헌

I. 문제제기

한국전쟁은 잊혀져가는 민족의 비극이다. 평화로운 남북관계 조성과정에서 새로운 통일의 상을 제시해야 할 때이므로 전쟁은 오히려 잊혀져야 할 역사적 사건인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이제 우리는 전쟁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다만 전쟁에 대한 특정한 기억의 맥락이 지배적인 기억으로 자리잡으면서 특정 정치·사회집단들의 전쟁기억이 보편성을 획득하고, 그들에 의해 전쟁은 전유되고 독점되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북한괴뢰군의 남침에 의한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극우반공의 관점이 지배적인 전쟁담론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그 속에, 전쟁 전후의 정치적인 비사(秘史)에 대한 언론의 식지않는 관심과 한국전쟁을 겪지 않은 신세대들의 전쟁에 대한 무관심이 혼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휴전선'이 존재하는 '準전쟁'의 실질적 상태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국전쟁'의 기억과 경험은 개개인의 삶 속에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다. 냉전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 고스란히 전쟁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평범한 민중들에게 전쟁은 단지 '기억되는 그 무엇' 이상으로 오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한국전쟁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국제관계의 논의와 정치적 전략의 반공이데올로기 이면에 존재했던,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일반 민중들의 삶과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모두들 침묵하고 있다.

1. 강인철,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창작과 비평제28집 (2000 여름호), 343-345쪽. 강인철은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을 '기억들의 투쟁→기억의 정형화→망각 및 무기억과의 투쟁→지배적 기억의 균열과 위기'라는 중첩적인 과정들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4·3과 노근리를 전쟁에 대한 지배적이고 전형적인 기억들이 균열되기 시작했음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본다(354쪽). 그의 설명방식을 따르면 이 글은 지배적 기억에 대한 도전이다.

‘조국해방’의 호전적 논리 앞에는 민족도 이데올로기도 모르는 무지렁이 ‘인민’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는 없는 것이다<sup>2)</sup>. 특히 그러한 역사적인 현실에서 이중으로 배제되어온 여성의 삶은 누구에 의해서도 말해지지 않는다. 한국전쟁에는 ‘인민군과 국군’, ‘군인과 민간인’은 존재해도 ‘평범한 여성 개인’은 없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전쟁 전후의 평범한 여성들의 삶이다. 시기별로는 전쟁이 벌어지던 당시의 상황과 이후 여성들의 삶을 구분하여 볼 수 있겠으나 주요 초점을 여성 일반이 겪은 전쟁 전·후의 실상에 대해 인권의 관점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중 여성학살은 어떤 유형과 특성을 가지는가. 2) 전쟁을 겪으면서 사회활동 범위가 확대된 여성들의 경제적 삶은 어떠한가. 3) 봉건적인 사회질서는 전쟁이후 여성들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였는가.

이러한 작업에는 방법론적으로 6·25 당시 민간차원의 기록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가 가장 커다란 문제이다. 실질적인 분석에 가장 적절한 자료는 전쟁을 겪은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에게 직접 증언을 받는 것이겠으나 현실적인 여건상 민간인 학살관련단체의 자료집과 전쟁관련 수기, 일기 등에서 수집하였다. 전쟁 이후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전쟁의 기억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소설과 영상집 등 이차자료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여전히 남한 사회에서 전쟁 후 사적인 가족들의 삶은 소설이나 영화와 같은 허구적 형식을 빌지 않고서는 재현되기가 어렵고<sup>3)</sup> 특히 문학은 특별한 역사적·정치적 맥락내에서 이뤄지며 거기에는 일반적인 용어로 말을 하는 특별한 작가가 있기 때문이다<sup>4)</sup>. 또한 남북이산가족 상봉에서 나타난 가족사도 주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글은 주목받지 못하고 흩어져있는 전쟁 당시 여성들의 삶의 고통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정리라는 데에 의미를 둘 수밖에 없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겪어온 일반 민중들 중 특히 여성이 겪어야했던 왜곡된 삶의 내용과 아픔들을 통해 현존하는 여성인권 문제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 II. 전쟁과 여성인권 : 과거청산의 의미

전쟁을 전후하여 여성들이 겪은 실상과 청산되지 못한 인권문제라는 말은 모호하다. 단순화하면

- 2)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24쪽
- 3) 전쟁에 대한 기억과 살아남기를 소설화해온 좌익 2세의 삶에서 이것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이문구, 김원일, 이문열, 김성동은 “아버지는 빨갱이였다”는 이유로 연좌제의 무거운 족쇄 때문에 제도권 내의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대신에 유일한 탈출구로 문학을 선택했다고 한다. 한수영, ‘분단과 전쟁이 낳은 비극적 역사의 아들들’, *역사비평* 제46집 (1999, 봄), 17-19쪽.
- 4) Philip West and Suh Ji-moon, *Remembering the "Forgotten War"*, Maureen and Mike Mansfield Center (2001), 10쪽. 필립 웨스트와 서지문은 잊혀진 한국전쟁의 기억을 참전 군인과 민간인의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다. 참전 군인의 시와 당시의 미술작품,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전쟁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서지문은 박완서, 홍성원, 윤홍길, 김원일, 이문열 등과의 세미나에서 전쟁이 그들의 소설과 삶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Suh Ji-moon, 'The Korean War in the Lives and Thoughts of Several Major Korean Writers', *Remembering the "Forgotten War"*, Maureen and Mike Mansfield Center (2001), 92-109쪽 참조.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모든 역사적 사실이 청산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다. 사실 우리말 큰 사전에도 ‘과거청산’이라는 말은 없다<sup>5)</sup>.

통상적으로 ‘과거청산’이란 구(舊)정권에서 벌어진 권력남용으로 인한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정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sup>6)</sup>. 다시 말하면 과거를 청산하는 데에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 단죄해야 할 대상이 있고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는 전쟁 당시 성을 매개로 한 ‘강제징집’이라는 가해국인 일본정부와 피해자인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다<sup>7)</sup>. 노근리 민간인 학살에는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총을 겨누어 전쟁법을 위반한 미군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간 가족과 이웃들이 있다<sup>8)</sup>. 과거를 청산하는 데에는 적어도 책임소재에 따른 법적인 해결이 가능해야 한다. 거기에는 책임추궁만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가한 피해의 특수성과 사회의 피해, 그리고 사회적 이해관계를 바로잡는 문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전쟁 전후의 여성인권과 과거청산 문제는 이와는 다르다. 단적으로 전쟁으로 인해 일반 여성들이 받는 삶의 고통과 일그러짐에 대해 단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다. 물론 전쟁 당시 여성에 대한 잔학행위를 남성과 국가의 폭력으로 분석하는 글이 대다수이지만<sup>9)</sup> 과거청산의 관점으로는 일반 여성들이 받은 구체적인 폭력문제를 ‘민간인 학살’ 이외의 범주에서 특별하게 다루기가 어렵다.

전쟁 이후 여성들이 겪어온 삶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농촌경제가 지배적인 공동체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어야했던 봉건적인 사회질서의 억압과 생존의 절박함으로 인한 고통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한국사회의 축적된 구조적 모순’과 ‘역사의 질곡’이라는 추상적 현실 앞에서 온전한 과거청산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법적인 책임소재와 뚜렷한 가해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전쟁을 통해 삶의 구조가 왜곡된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narrative)는 존재한다.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인 테오 반 보벤(Theo van

- 5) ‘청산’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서로 간에 채권, 채무로 주고 받을 셈을 닦음 ②회사, 조합, 상점들의 파산 또는 해산할 때에 종래의 법률관계를 마감하려고 행하는 갖가지 절차.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1995), 어문각.
- 6) 박원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1996), 한겨레 신문사, 15쪽.
- 7)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과거청산에 대해서는 김창록,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http://www.humanrights.or.kr> 인권도서관), 이효재, ‘일본군 위안부 해결을 위한 운동의 전개과정’,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아카데미 (1999) 등 참고.
- 8) 노근리 문제와 과거청산에 대해서는 조시현, *노근리 등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위한 의견서* (<http://www.humanrights.or.kr> 인권도서관), 강금실, ‘민간인 학살사건에 관한 법적인 문제점과 해결방향’,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심포지엄 자료집*, 민간인학살 범국민위 (2000) 등 참조.
- 9)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대표적이다. 식민지 여성에 대한 성폭력 이외에 전쟁 전후의 광범위한 성폭력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김성례는 제주 4·3분석에서 대량학살이 정당화되는 국가권력의 논리 구성과 전개과정을 밝히고 있다. ‘빨갱이’로 명명되는 제주도 주민의 인종적 타자성과 성적 타자성이 국가폭력의 구조 안에서 하나로 융합되는 정치기술을 설명한다. 김성례, ‘국가폭력과 여성체함 : 제주 4·3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1999). 그러나 빨갱이의 몸과 여성출산의 열린 몸을 동일시하며 반공국가의 정치적 금기의 색깔(164쪽)로 설명하는 방식이나 남성 증언자의 가부장제 언어의 쾌락(168쪽) 등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게 보인다. 이 밖에도 3회제를 맞는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학술대회’에서 전쟁과 여성폭력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동아시아 평화인권 한국위원회, 동아시아와 근대의 폭력 I·II, 도서출판 삼인(2001) 참고.



Boven)은 희생자의 배상받을 권리를 넓게 해석하고 있는데<sup>10)</sup> 우리의 현실에서는 '사실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가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때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단일한 기억과 시공간 이면의 여성들의 삶,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민중의 '숨겨진 현실'을 드러내어 한국전쟁이 가진 공백의 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현 수준에서의 여성인권 논의이고 과거청산이다. 이것은 '민중의 사회전기'라는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 III. 여성민중의 사회전기

'민중의 사회전기'<sup>11)</sup>는 전쟁으로 인한 한국여성의 삶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민중의 사회전기란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는 불평등 구조의 밑바닥에서 생활하며 도덕적·문화적 가치 척도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이 논의는 복합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하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난과 갈망과 희망의 이야기이고 이것들이 상호 교차하여 생기는 한(恨)의 이야기이다.

민중의 사회전기를 가장 심오한 차원에서 대표하는 인간집단은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여성들이다. 그러나 여성민중의 사회전기는 쉽게 이야기될 수 없다. 근본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는 사회의 기득권자들에 의해 억압되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다. 가난한 여성의 사회전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이야기될 수 없는 심연(深淵)이 존재한다<sup>12)</sup>. 이것을 김용복은 '숨겨진 현실'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의 이론을 빌어 몇가지 자료와 상징적 추리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전쟁을 겪은 일반 여성들의 사회전기를 규명할 수 있다.

①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좌·우 이념의 대립 속에서 일반 민중들은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한다<sup>13)</sup>. 그들이 뚜렷한 이념적 지향을 가졌기 때문이라기보다 냉전 구조하에서의 광기적 국가폭력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10. 그의 배상받을 권리는 크게 금전적인 배상과 비금전적인 배상으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현금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배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대한 진료, 고용, 주택, 교육 등의 배상과 (2)희생자들의 도덕적·사회적·복지, 정의와 평화의 목적에 제공되는 비금전적 배상이다. 비금전적 배상으로는 ①사실 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 ②법해진 침해에 대한 책임의 공개적인 인정, ③책임자 처벌, ④희생자, 그들의 친척과 친구, 증인들의 보호, ⑤희생자들에 대한 기념과 애도표시, ⑥희생자들을 돌보는 기관 설립과 지원, 그들을 돕는 요원의 훈련, ⑦침해의 재발방지 조치로서 보안군에 대한 엄격한 통제, 특히 민간통제 아래 두는 것, 군사법원의 권한 제한, 사법부의 독립 강화, 인권운동가와 법률가 보호, 구금과 등록제도 개선, 보안군과 법집행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포함한다. U.N.Doc. E/CN. 4/Sub. 2/1992/8 (29 July 1992), 22-23쪽. 박원순, 앞의 글(주 6), 16쪽에서 재인용.

11. 김용복, 한국민중의 사회전기, 한길사 (1987), 44-50쪽.  
 12. 이야기(narrative)에 대한 물음은 언제나 이중성을 갖고 있다. 누가 이야기하는가와 누구를 향해 이야기하는가는 듣는 사람의 문제이다. '피해자'의 '증언'을 누가 듣는 것인가. 듣는 귀가 없다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누구를 향해 이야기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했을 때 이야기는 이야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공동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에도 치크로,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 출판사 (2000), 180쪽.  
 13. 전쟁은 1950년에 일어났으나 이미 1948년 남한에서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좌우 이념의 대립이 극심하여 준(準)전쟁상태로 보기도 한다.

② 여성의 경우는 남편의 사상에 따라 더 큰 고통을 받기도 한다.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폭력과 남편에 대한 이념적 적대감이 전쟁시 여성에게 폭력적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여성폭력은 더욱 잔인한 형태를 띤다.

③ 전쟁이 발발하자 여성들은 남편을 대신해서 사회활동을 담당해야 한다. 농촌의 공동체적 가정생활에 익숙한 여성들에게 활동 범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된다.

④ 그러나 전쟁으로 남편과 가족을 잃은 여성들은 생존의 위협에 놓이게 된다. 농촌경제에 익숙해있던 그들이지만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고향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다.

⑤ 특히 빨갱이 가족으로 낙인찍힌 경우에는 사회적 천대를 피해 지역 공동체를 떠나 도시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은 개인적인 가족사를 감추기 위한 하나의 생존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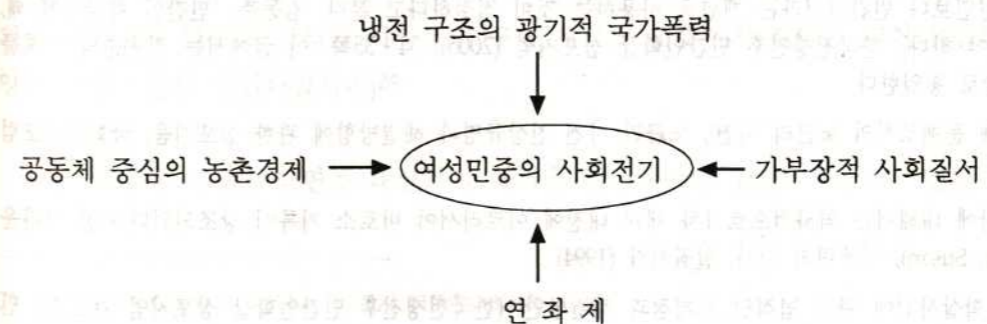
⑥ 그러나 도시로 떠난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찾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행상이나 식모살이, 공장 등에 저임금으로 취업하는 것이다. 전쟁 후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여성들에게 사회는 정당한 기회와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다.

⑦ 전쟁의 폐허 속에 부모를 잃은 젊은 여성과 어린 딸들도 생존의 위협에 놓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살아가기' 위해, 혹은 남성형제들의 사회적 성공을 통해 대리만족하고자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길을 택하기도 한다. 어린 딸들은 남의 집 식모살이로 보내져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진다.

⑧ 위와 같은 이유로 도시로 진출한 여성들은 자식키우기에 어려움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재혼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혼자사는 외로움과 자식들을 키워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이중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며 살아간다.

⑨ 농촌공동체에서 여성들은 시부모를 모시며 수절하는 경우도 많다. 언제 돌아올 지 모르는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게 한 것은 결혼한 여성의 운신의 폭이 좁은 당시 사회의 가부장적 사회질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여성민중의 사회전기는 통합적이며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이다. 남성-여성의 관계에서 생기는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착취의 비인간적 실재는 분석적으로 떼어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 통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가난하고 무력하며 소외된 여성민중의 고난의 세계를 깊이있게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여성민중의 사회전기를 전쟁과 결부시켜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 IV. 전쟁 전·후<sup>14)</sup> 여성인권 유린의 실상

## 1. 전쟁 전후 여성학살 : 강간과 성폭력

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문제<sup>15)</sup>는 1990년대 중반들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나마 노근리 민간인 학살문제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침묵하고 있던 다수 지역의 피해자들이 학살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민간인 학살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고문과 성폭력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여성 인권침해로 따로 제기하지는 않는다. 민간인에 대한 대량학살 사실 자체가 부인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의 인권침해까지 거론하는 것은 문제의 중심이 분산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sup>16)</sup>. 역사학자들 역시 전쟁 당시의 구체적인 강간행위에 대해 애써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역사가들 자신의 가치와 취향때문이기도 하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sup>17)</sup>. 그러나 여성이기에 이중으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성적인 폭력과 억압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또하나의 폭력이다.

민간인 학살 문제는 법적 측면이나 국가간의 정치적인 관계 모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그 이면에는 '인간 존엄성'이라는 절대절명의 가치를 저버린 행동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학살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개별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전쟁 전후에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단위로서 인식하여야 한다<sup>18)</sup>.

먼저, 전쟁 전후 여성학살은 직접 교전<sup>19)</sup>과 관련없는 무고한 부녀자에 대한 학살이라는 점과 성에 기초한 폭력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쟁기간 동안 남녀의 인권침해 양상은 유사하지만 특히 여성은 강간, 성적피해(sexual mutilation), 강요된 매춘 등 성에 기초한 폭력의 대상이 된다<sup>20)</sup>.

14. 전쟁 전후의 시기는 구체적으로 1950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 좌우 이념 대립에 의한 민간인 학살시기를 포함한다. 즉 '공비토벌 작전'으로 이뤄진 이승만 정권의 민간인 학살과 전쟁기간 미군과 인민군에 의한 대량학살이 자행된 시기이다.
15. 강정구는 양민학살을 '아무런 위협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저 좌익, 우익, 부역이라는 집합체의 성원이라는 이유 및 혐의만으로 무고한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로 규정한다. 강정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의 실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심포지엄 (2000), 4쪽. 그러나 김동춘은 전쟁당시 누가 적이고 우리편인가를 알기 위해 주변의 보증을 통해 대한민국에 협력하는 주민들을 양민(良民)으로 분류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이데올로기의 굴레를 용인하는 양민보다 민간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김동춘, '민간인 학살문제 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심포지엄 (2000), 34-35쪽. 이 글에서는 김동춘의 논의를 따라 민간인 학살로 통일한다.
16. 정진성, '인권침해 문제로서의 노근리 사건', 노근리 사건 진상규명과 해결방향에 관한 심포지움, 국회인권포럼 (2000), 28쪽.
17. 전쟁 기간의 강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1차 세계 대전이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록이 강조되었다. 수잔 브라운 밀러(Brownmiller, Susan), 성폭력의 역사, 일월서각 (1994).
18. 강금실, '민간인 학살사건에 관한 법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심포지엄 자료집), 민간인학살 범국위 (2000), 49쪽.
19. 엄밀하게 보면,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 직접적인 이데올로기 싸움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이 포함된다.
20. Astrid Aafjes, 'How War Affects Women', Gender Violence : The Hidden War Crime, Women Law & Development International (1998), 11-12쪽.

마을에서 흥남(興南)서 철수해온 미병(美兵)들이 들어서 여러 가지 불안한 공기를 자아내고 있다. 부흥동과 치일동에서 부녀를 강간한 사건이 생겼고 아랫마을에는 여자를 내어주지 않는다 해서 무고한 백성을 쏘아 죽인 사건이 생겼다. 젊은 여자들은 모두 산중으로 피란가고 있다(김성철, 1950년 12월 28일자 일기)<sup>21)</sup>.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연합군으로 참전한 미군의 폭력으로, 직접 교전이 진행되기 이전인 1940년대 말에는 반공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 '빨갱이 소탕작전'의 일환으로 여성은 학살 대상이 된다. 거기에 여성의 활동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일단 어여쁜 처녀와 여성들은 군인의 성폭력 대상이다. 다음은 제주 4·3 민간인 학살로 동생을 잃은 언니의 증언이다.

당시 친정집에는 군인 3-4명이 임시 주둔했는데 그 중에서 '최상사'라는 놈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동생은 참 예뻐요. 그놈들은 처음에 처녀들을 몇 명 집합시켰다가 동생이 제일 곱다고 생각했는지 덮쳤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안되자 총을 쏜 겁니다. 동생은 배꼽 부근에 총을 맞아 창자가 다 나올 정도로 처참한 모습으로 숨졌습니다(강경옥, 1997년 채록당시 77세<sup>22)</sup>).

젊은 여성을 강간하려고 시도하다 실패해버리자 무참히 살해해버린 행동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성과 이념의 극단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초토화 작전의 무차별성이 드러난다. 여성에 대한 잔인한 살인이 아니라면 생존해 있는 여성들을 성적으로 도구화하여 뇌물과 같이 공납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다음은 1950년 7-8월 경남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양민학살을 하는 데 직접 역할을 한 앞잡이들은 착실한 가정 부인들을 위협해 강제로 몸을 바치게 했는데, 비상시국 대책위원회 간부로 있었던 김모씨는 억울하게 난행을 당한 부녀자들이 현재 충무시에 살고 있다고 증언했다(부산일보, 1960년 5월 23일자 '또하나의 학살, 10년만에 터진 충무 일대의 참사')<sup>23)</sup>.

그들 앞잡이들은 수사관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고는 끌어다 잔인한 고문을 가한 뒤 얼굴이 예쁜 처녀나 부인이 있으면 보내주는 대가로 능욕을 일삼았다. 또한 복천관이라는 요정을 경영하던 배정희라는 사람은 박태진 대위에게 미녀를 공납하고 뇌물을 바치는 등 온갖 아첨을 다하여 박대위를 손아귀에 넣고는 잡혀간 사람들의 구명 브로커 노릇까지 했다는 것이다(한산섬 앞바다에 7백 양민 수장 : 충무 양민학살사건)<sup>24)</sup>

뿐만 아니라 여성은 남편을 대신하여 폭력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전쟁 당시 발생하는 여

21. 김성철, 역사앞에서, 창작과 비평사 (1993), 308쪽.

22. 오금숙,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사례',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1999), 243쪽에서 재인용.

23. 김삼용, 해방후 양민학살사, 가람기획 (1996), 170쪽에서 재인용.

24. 정희상, 이대로 눈을 감을 수 없소, 들베개 (1990), 110-111쪽.

성에 대한 폭력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전시에 여성에 대한 강간은 피해 여성의 육체에 대한 적대행위인 동시에 피해여성의 남편 혹은 아버지에 대한 적대행위일 수도 있다<sup>25)</sup>. 부대원들에게 끌려온 부인은 남편이 있는 곳을 불지 않는다고 추상 같은 고문을 받는다.

온갖 협박과 고문을 동원해도 입을 열지 않자 군인들은 그녀를 완전히 발가벗겼어요. 그리고는 부대 마당가에 서 있는 감나무에다 양다리를 각각 묶어 거꾸로 매달았지요. 그런 상태로 지금 여기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행패를 부리다가 마지막에는 그녀를 반듯하게 눕어놓고 물을 쏟아 흐르는 물이 배를 타고 여자의 하복부로 흘러내리게 하며 그들은 만족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소위 '산부인과 고문'이라고 부르더군요(지심도 육녀봉의 증언 : 거제 양민학살사건)<sup>26)</sup>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한 여성에 대한 폭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잔혹한 방법의 폭력으로 가정 전체를 파괴하기도 하였다.

한 집에서 시어머니, 딸, 며느리가 한 날 한 시에 군인들에게 욕을 본 우리 식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머니는 며느리와 딸을 부둥켜 안고 가만히 있었다. 살아가면서 여자로 태어난 것이 이처럼 한이 된 적은 없었다<sup>27)</sup>.

1950년 9·28 수복 직후에 발생한 함평지역의 학살은 낮이면 대한민국, 밤이면 인민공화국으로 전세가 바뀌던 가운데 무고하게 고통받는 민간인의 삶을 보여준다.

문장에는 5중대 막사가 있었는데 소개된 큰애기(처녀)들은 남아나질 못했어요. 밤마다 큰애기들을 잡아다 욕을 보이고는 아침에 보냈으니까요.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지만 산 사람이 당하는 그것도 못할 노릇이라. 그러니 부모들과 큰애기들은 울고 불고 애간장을 태우다 못해 생각해낸 것이 밤에 양민들끼리 찬물 떠놓고 큰애기 총각 결혼식을 올려버리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결혼해 지금까지 사는 사람이 많아요(5중대가 남긴 40년 파장 : 함평 양민학살사건)<sup>28)</sup>

전쟁의 긴장 상황에서 여성들에 대한 폭력에 못이겨 결혼식을 올리고 50여년을 넘게 살아가는 여인들은 그래도 목숨을 부지하였기에 다행으로 보아야 하는가.

모든 것이 죽임을 향하는 전쟁상황에서 생명을 잉태한 여성들은 또다른 고통을 받아야 했다. 그들은 전쟁 상황에서 자식을 잃고 미쳐버리거나 평생 자식에 대한 한(恨)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 수밖에 없다.

어떤 부인이 가차 지붕마루에서 해산을 하게 되었는데 일행은 이불을 펴서 바람을 가려주노라

25. 수잔 브라운 밀러, 앞의 글 (주17), 56쪽.

26. 정희상, 앞의 글 (주24), 134쪽.

27. 정찬동, 함평양민학살, 시와사람 (1999), 198쪽.

28. 정희상, 앞의 글, 152쪽.

하였으나 엄동설한에 달리는 기차 위이므로 그 추위가 오죽할라고. 산모는 갓낳은 새 생명을 집어서는 차 아래로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 고꾸라져 의식을 잃어버렸다.

어떤 젊은 부인은 아기를 업고 죽을 힘을 다해 기차 지붕 마루로 기어오르긴 하였으나 위낙 손이 푹푹 얼어서 마음대로 아기를 잘 추스르지도 못하였는데 얼마를 가다 젖을 먹이려고 아기를 내려보니 이미 싸느라게 숨죽어 있었으므로 이 가엾은 젊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곧 미쳐버렸다(김성철, 1950년 12월 19일 일기)<sup>29)</sup>.

전쟁 중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강간은 일반화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이면에는 여성에 대한 남성과 국가의 폭력, 남편을 대신한 이념적 적대감이 모두 혼재되어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여성 폭력과 강간은 당사자 개인은 물론 가족 모두에게 고통과 상처로 기억되고 있으며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그 상처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 2. 생업전선에서의 여성

일차적으로 전쟁기간에 한창 때의 남자들은 전쟁터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숨어다니기에 바빴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집안뎌를 꾸리거나 그들을 숨겨주거는 일은 여성이 도맡아야 했다.

이즈음은 무슨 모임이 있으면 부인네가 나서는 것이 버릇처럼 되었다. 다른 목적으로 모였던 회합이 곧잘 쉼기대회로 변하여 그 자리에서 의용군을 뽑아 보내게 되므로 백성들은 이제는 다 눈치를 알아채고 무슨 모임이든지 집회에는 노인이 아니면 여자로 판을 친다... 그 모임이라는 것이 하도 잦아서 가정 부인네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더욱이 양식이 떨어진 가정에선 그 걱정까지 주부가 해야 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다(김성철, 1950년 7월 15일 일기)<sup>30)</sup>.

이런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옷가지나 패물 등을 들고 시장에 가서 양식과 바뀌오는 것인데, 이것마저 '사내는 중로에서 채어 함흥차사(咸興差使)가 되고 마니' 여인네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전쟁 초기 사내가 '뒷방 구석에서 아이나 보아주고 번동번동 낮잠이나 자는' 상황일지라도 여기저기에 팔 물건을 가지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나은 형편이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 남편을 여의고 삶의 터전까지 잃은 여성들은 더 이상 농촌의 지역공동체에서는 살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여성 혼자서는 농업노동을 감당할 수 없기에 먹고살 길이 막막했고 여전히 혈연적·대면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인 지역공동체는 여성을 배척하였다.

남편 없이 집안 일을 꾸려 가기가 너무 힘이 들었다. 다행히 큰동서가 애들을 봐주셨기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남의 집살이도 하고, 절에서도 살았고, 시삼촌댁에서도 신세를 지며 살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구를 원망하지 않으며 체념하고 살아왔다. 이제 와서 세상을 탓할 것도 없고 그때는 전쟁 중이라 모두가 난리통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박인례씨

29. 김성철, 위의 글, 303쪽.

30. 김성철, 앞의 글, 105 - 106쪽.

증언, 당시 28세, 고양 금정굴 양민학살 사건 진상보고서).

당시 친정 집이 있던 마을은 6·25를 겪으면서 쑥대밭이 되었다. 우리집도 피난을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집이 없어 구덩이를 파고 살아왔다. 또 흉년이 자주 들었고 당시 4살이던 큰 아이와 유복자로 태어난 작은 아이, 12식구가 살기 위해서 좌판과 행상 등 안한 일 없이 어렵게 살아왔다(송기순씨 증언, 고양 금정굴 양민학살 사건 진상보고서).

우리 가족을 밀고하였던 김씨는 그 후 우리 집과 밭 1000여 평을 빼앗아갔고 우리 집안은 도저히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끝내 이 사건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우물에 몸을 던져 자살하고 마셨다. 우리 어머니는 일제 치하에서도 직접 만주를 오가며 장사를 하면서 독립군을 지원하셨을 만큼 굳센 분이였다. 그러나 그런 어머니도 아무 잘못도 없이 하루 아침에 생떼같은 자식을 들썩이나 잃고 살던 집과 땅마저 빼앗긴 채 거리로 나앉게 되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이 억울하고도 기막힌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신 것이다(안종금씨 증언, 고양 금정굴 양민학살 사건 진상보고서).

전쟁으로 인해 실질적 가장 노릇<sup>31)</sup>을 해야했던 억척인 어머니들은 한편으로는 체념하며 살아왔고 또 한편으로는 고통속에 극단적인 행동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삶과 더불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누이들은 어떠하였을까. 대학을 졸업한 남성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월급없이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해도 기술을 배울 수 있다면 거기 들어가 일하는 경우가 솔하던 1950년대에 여성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무척이나 한정되어 있었다. 가장 쉽게 들어설 수 있는 길은 몸을 파는 일이었다.

전쟁으로 해서 나는 고아가 됐다. 배가 고팠다. 철든 계집애가 살을 가릴 옷이 없었다. 이것이 내 죄가 될까? 그대서 나는 '안나'라는 갈보가 됐다. 한끼 밥을 먹기 위해서 피를 뽑아 팔 듯, 내 몸뚱아리를 파먹고 스물 여덟을 살아왔다. 주어진 한 생명을 성실히 살아온 죄가 갈보라는 직업에 있다면 그건 결코 내가 져야 할 죄가 아니다. 내게는 죄가 없다. 후회도 뉘우침도 없다. 누구에게 동정도 바라지 않는다. 원망할 대상도 없다. 촛불이 다 타고 마지막 심지가 옆으로 자빠져 피지지 타고 있다. 교회당에서 새벽종소리가 들려온다. 내게는 죄가 없다<sup>32)</sup>.

오영수의 '안나의 유서'를 보면 안나는 피난 도중에 부모를 잃고, 피난지 부산에서 하나 남은 혈육인 동생을 병으로 마저 빼앗긴 후 주인공 명애는 헌옷 팔기에서 시작하여 담배장수, 국밥장수, 다방레지로 전전하다가 급기야 동두천으로 흘러들어가 자궁암으로 죽기까지, 이 작품은 당대 사회

31. 그러나 급변하는 한국현대사에서 여성이 경제적으로 실질적 가장 노릇을 하게 되는 원인을 전쟁으로만 볼 수는 없다. 1960년대 이래 이농(離農)가구의 경우나, 중년을 넘긴 아버지들이 도시에서 변변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였을 때 어린 자식들, 특히 딸들은 전자부품 회사나 방직회사에 취직해서 가계를 이끌어야 했다. 식모나 버스차장, 술집작부 등 자신을 희생해서 오빠, 동생들을 공부시킨 많은 여성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도 묻혀있다.

32. 안나의 유서, 91쪽.

의 저변에서 전후의 굶주림과 철저히 맞서고 있다<sup>33)</sup>.

철든 누이가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모와 가족을 모두 잃은 어린 딸들의 경우에는 혼자 남의 집에서 '식모' 생활을 하게 된다.

누나와 여동생 등 3명이나 삼촌집에 얹혀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눈치가 보였다. 당시 15세난 누나는 함양으로 식모살이를 하러 떠나버렸다. 여동생 또한 9세의 어린나이지만 산청군 생화면으로 식모살이를 떠나 행복하고 단란했던 그들 3남매는 또 한차례 이산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이들은 줄지에 빨갱이 생이별을 한 것이다. 15세난 소년에게 먹여주고 재워줄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집집마다 다니며 사정하기를 여섯 번째, 한마음씨 좋은 할머니의 허락으로 머슴살이를 시작했다(항도일보, 산청양민학살사건).

산청읍 옥산리에 살고 있는 이점순 여인(46, 당시 8세)은 산청양민학살 현장에서 부모를 잃고 언니 오빠와 함께 3남매가 고아가 되었다. 먼 친척집을 떠돌다 9세의 어린나이에 남의 집 소꿉머슴으로, 개똥망태를 걸머지며 전전했다. 당시 논두렁에서 공포에 질려 울고 있는 이여인에게 토벌군은 '총알이 아깝다. 저년들을 호랑이 밥이 되게 놔두라'는 등 포악하기 짝이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그 군인의 얼굴은 지금보아도 바로 기억할 수 있다고 했다. '총한방만 맞았다면 이 원통하고 피맺힌 세월을 살지 않았을텐데...'라며 이 순간에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항도일보, 산청양민학살사건).

이렇듯 전쟁으로 인해 어머니는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부모를 잃은 젊은 여성은 몸을 파는 일로, 혼자남은 딸아이는 식모살이로 전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부담은 '빨갱이 가족'이라는 연좌제이다.

줄지에 아버님과 형님들을 잃고 치안대가 집안 세간들을 모두 실어가도 부역자 가족이라고 제대로 항의 한 번 못하고 가진 것 하나 없이 어머니께서 혼자 어린 저희들을 키우시느라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의 충격으로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두통약을 복용하셔야 했고, 저도 충격으로 청각 장애자가 되어 지금까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가해자들이 부역자 가족이니 빨갱이 가족이니 하고 말을 퍼트리고 다녀 고향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결국 고향을 떠나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 후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념과 연좌제에 묶여 살아가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았지요(서병규씨 증언, 고양 금정굴 양민학살사건 진상보고서).

뒤이어 10월 초순 경 어머니도 연행되었다 풀려나기를 몇차례 반복하면서 손가락을 쥐이는 등의 심한 고문을 당하며 도망간 사촌 형님들의 행방을 밝힐 것을 강요받기도 하였다. ...중략... 어머니

33. 박훈하는 전쟁은 물질적 파괴와 윤리적 정체감까지 완전히 말살해버렸다고 본다. 그는 안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동일한 피해자 집단인 사회에 돌릴 수 없는데, 추상성에 매달리다 보면 문학은 허무적 나락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기지촌 문학의 대부분은 자국의 남성성을 부정하고 '미국'이라는 주둔국의 남성성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박훈하, '기지촌 소설의 존재방식과 이데올로기', 한국 현대문학의 성과 매춘 연구, 태학사(1996), 154-156쪽.

께서는 그때 경찰서에서 너무나 모진 고문을 받은 탓에 후유증이 심각해 일상 생활에서 많은 지장을 받으셨고 우리들 6남매 역시 특별히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빨갱이 가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 무서워 늘 움츠린 마음으로 지내왔다(고준일씨 증언, 고양 금정굴 양민학살사건 진상 보고서).

남편이 빨갱이라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연좌제에 의해서 고통받는 경우는 그 세대에서 그치지 않는다. 남편이 죽고 나서 자식들까지도 '연좌제'에 묶여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결국은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소외감으로 지금까지도 정신이상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sup>34</sup>.

### 3. 봉건적 사회질서와 여성

한국전쟁으로 모든 민중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1950년대 봉건적인 사회분위기에서 특히 여성개인은 커다란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과정에서도 접하게 되는 일반 여성들의 구구절절한 개인사는 전쟁의 참혹한 현실이 여성의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말해준다. 또한 50여 년간 남편을 기다리며 수절해온 할머니가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이혼소송을 낸 사연<sup>35</sup>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은 봉건적인 사회분위기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경제활동의 배제 속에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경험하였고 지금도 그러한 삶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

1, 2차 이산가족 상봉은 여성들의 가슴아픈 가족사를 더욱 잘 보여주고 있다. 단지 여성만이 아니라 북에 두고온 아내와 딸을 못 잊어 혼자 남한에서 막노동으로 외롭게 살고 있는 할아버지의 사연이나 전쟁 후 청상과부로 병든 시대시구를 모두 수발하며 살아왔는데 헤어진 남편은 자식들만 찾는 기구한 가족사들이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전쟁과 분단으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타의견 자의견 이중의 희생에 치른 경우는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sup>36</sup>.

사례 1 : 북측 방문단 이복연(73)씨는 18살에 결혼하여 5년만에 헤어진 아내는 분명 재혼을 해서 당시 한 살, 세 살이던 아이들을 상봉장에서 어떻게 알아볼까 걱정하였다. 그러나 아내 이춘자(70)씨는 50년을 수절하고 홀몸으로 두 아이를 키웠다. 반면 이복연씨는 북에서 새장가를 들어 5남매를 더 두었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 남편 이복연씨는 1945년 결혼한 뒤 상경, 신문지국을 꾸리며 생활했다. 5년후 '6.25'가 나자 남편은 아내와 두 아들을 먼저 고향으로 보냈다. 그리고는 소식이 끊겼다. 이후 이춘자씨는 50년 동안 행상, 다과점 등 안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악착같이 살았다. 이춘자씨는 북쪽 부인에게 줄 선물까지 준비하며 남편이 씨를 잘 뿌려 남북 합쳐 7남매라니 든든하다며 초탈한 모습을 보였다<sup>37</sup>.

34. 조성구, 현장취재 경남 전라지역의 보도연맹원 양민학살, 162쪽.

35. '50년 수절 70대 할머니 생보자 혜택위해 이혼소송', 2001. 1. 27일자 한겨레신문.

36. 1, 2차 남북이산가족들의 구체적인 상봉관계를 조사하여 통계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대한적십자사는 '제3자에게 정보를 누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어 부득이 신문자료를 이용하였다.

37. 이경희·김수정, '북 남편... 남 아내', 중앙일보 2000. 8. 16일자.

사례 2 : 고승남(78) 할머니는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인 8월 16일 아침 기쁜 소식을 들었다. 1950년 전쟁으로 헤어진 남편 민원식(79)씨가 북에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조카에게서 들었기 때문이다. 북에서 재혼해 아들 3형제를 뒀며 며느리도 둘을 보았고 잘 산다는 말에 50년을 수절하고 살아온 할머니는 재혼했다는 소식에 앞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 난단다<sup>38</sup>.

사례 3 : 18세인 1950년 1월 경북 문경의 부잣집에 시집을 가 남편과는 닳새를 함께 지내고 6·25전쟁으로 헤어진 뒤 평생 수절하고 살아온 권오중(68) 할머니가 남편의 생사 확인을 위해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이 머누는 숙소 주위를 맴돌고 있다. 권할머니는 당시 서울 공대 갓 입학한 남편과 닳새를 함께 보냈으나 남편이 공부하러 서울로 올라가고 떨어져 살다 영영 헤어지게 됐다. 그러나 권할머니는 슬하에 피붙이 하나없이 엄한 시대와 친정 때문에 지난 50년간 남편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며 시부모를 모시고 힘든 삶을 보내왔다. 지금까지도 권할머니는 수절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평생을 기다리게 한 남편에 대한 원망만은 지워버릴 수 없다<sup>39</sup>.

사례 4 : 50년 동안 남편을 그리며 수절(守節)해온 한 여인의 한(恨). 이춘애(李春愛·72) 할머니는 북의 남편 고광욱(高光旭·73)씨가 제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자신과 두 자녀의 생사확인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1946년 결혼한 이씨 부부는 당시 전남 광주에서 운수업을 하던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남편 고씨도 전남도청 공무원이어서 집안은 넉넉한 편이었다. 1948년 첫 아들을 낳고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만며느리 생활을 하고 있던 이씨에게 6·25전쟁은 비극의 시작이었다. 남편 고씨는 가족들을 고향인 전남 장성으로 피란보내고 곧 따라가겠다고 했으나 50년이 되었다. 당시 임신 9개월의 만삭이었던 이씨는 피란 생활중인 10월 딸을 낳았지만 남편의 소식은 끝내 없었다. 전쟁은 이씨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남편뿐만 아니라 피란 도중 미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시부모마저 모두 목숨을 잃었다. 전쟁 후 빈털터리가 된 이씨는 어린 남매를 데리고 광주와 서울을 전전하며 구멍가게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나가야 했다<sup>40</sup>.

당연히 재혼을 했을 것이라 생각한 아내는 홀로 50년을 수절하며 자식을 키웠고 겨우 닳새를 함께 산 남편을, 엄한 시대와 친정분위기로, 자식하나 없이 50년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여성들은 외로움과 가난이라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평생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왔다. 당시의 가부장적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러한 사연과 함께 오늘의 현실을 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희생자가 있다.

사례 5 : 북한 촬영감독 하경(74)씨는 50년 전의 아내 김옥진(78)씨를 상봉 마지막날에야 만날 수 있었다. 김씨가 선뜻 전 남편 앞에 나서기를 주저했기 때문. 수절하지 못한 죄책감, 재혼해 낳은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이 겹쳐 혼자 그리움을 삭이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광업진흥공사 사무원이던 하씨는 1945년 당시에는 파격적으로 김씨와 결혼, 사내커플이 되었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부부

38. 연합뉴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잘 살고 있네요', 한겨레신문, 2000. 8. 17일자.

39. 연합뉴스, '반세기 수절, 68세 할머니의 망부가', 한겨레 신문, 2000. 8. 17일자.

40. 이완배, '北 고광욱씨가 찾는 南 아내 이춘애 할머니', 동아일보 2000. 10. 4일자.

는 헤어졌고 남편은 세 아들을 남기고 북으로 가 가정을 꾸렸다. 아내는 10년을 다리다 세 아들을 시집에 맡기고 재혼하였다<sup>41)</sup>.

부부가 똑같이 남과 북에서 가족을 꾸렸지만 아내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의 가족사를 보면 50년간 어린 자식을 키우며 수절해온 아내는 많아도 아내를 그리며 평생 독신으로 산 남편은 드물다. 그러나 새로운 가정을 꾸린 남편의 삶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재혼한 아내의 삶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재혼이 죄가 되어 남과 북에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살고 있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것은 5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 V. 맺으며

‘신세타령’이라는 말이 있다. 남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책망하다가 결국에는 팔자탓으로 돌리는 서술전략은 자신의 현재를 정당화하고 듣는 사람도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sup>42)</sup>. 대부분의 여성들이 쌓인 한(恨)은 그래서 신세타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 남편과 가족을 잃고 힘겹게 살아온 여성들의 이야기는 신세타령이나 안쓰러움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전쟁 전후 여성이기에 더욱 가혹하게 겪은 학살의 내용과 전쟁 이후 여성이 겪은 삶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여성은 전쟁 상황에서 성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살아남은 여성들은 제각각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다. 전쟁으로 남편과 부모를 잃은 어머니들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생존전선에서 굶은 일을 다해가며 힘겹게 살아왔고 누이들은 ‘살아가기’에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 또한 어린 딸들은 남의 집 식모나 수양딸로 보내졌다. 거기에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은 후대의 자식들에게까지 여전히 족쇄로 작용하여 사회적인 제약이 되고 있다.

전쟁을 겪은 다양한 여성들의 문제는 단지 개인사로 축소할 것도 아니고 ‘팔자’라는 숙명론으로 설명할 것도 아니다.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선택의 폭이 좁아서 인고의 세월을 요구했던 여성들의 삶은 여전히 역사의 뒷편에 존재한다. 진정한 과거청산이란 이러한 일반 여성들의 왜곡된 삶의 질곡과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여성인권과 과거청산에 대한 하나의 문제제기이다. 민족상잔의 비극으로만 존재하는 전쟁 이면에 무고하게 죽어간,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다수 여성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 우리는 조명해보아야 한다. 역사의 그늘 속에 갇혀있는 일반 민중들의 삶이 소설 형식을 통해서만 구체화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 거기에서 부터 전쟁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는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도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형성하고 있는 일반 여성들의 삶에 대한 정리가 없다면 전쟁은 그저 잊어버리거나 묻어두어야 단면적인 기억으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41. 강창동, ‘찾아와줘 고맙소... 하경씨’ 부부 막판 상봉’, 한국경제 2000. 8. 18일자.

42. 유철인,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다: 생애이야기의 주제와 서술전략’, 한국문화인류학 (1996 :29-2), 한국문화인류학회, 423-414쪽

## <참고문헌>

- 강금실, 2000, ‘민간인 학살사건에 관한 법적인 문제점과 해결방향’,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심포지엄 자료집』, 민간인학살 범국민위.
- 강인철, 2000,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한국전쟁 50주년에 즈음하여’, 『창작과 비평』 제28집, 창작과 비평사
- 강정구, 2000,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의 실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심포지엄』, 민간인학살 범국민위
- 권명아, 1998, ‘박완서: 자기상실의 ‘근대사’와 여성들의 자기찾기’, 『역사비평』 제45호
- 권영진, 1990, ‘6·25살상 다시 본다’, 『역사비평』 봄호, 역사비평사
- 김귀옥, 1999,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민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동춘(a), 2000, 『전쟁과 사회』, 돌베개
- \_\_\_\_\_(b), 2000, ‘민간인 학살 문제, 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심포지엄』, 민간인학살 범국민위
- 김삼웅, 1996, 『해방후 양민학살사』, 가람기획7
- 김성례, 1999, ‘4·3 항쟁과 여성인권’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 김성철, 1993, 『역사앞에서』, 창작과 비평사
- 김용복, 1987, 『한국민중의 사회전기』, 한길사
- 김종민, 1998, ‘제주 4·3항쟁: 대규모 민중학살의 진상’, 『역사비평』 42호
- 동아시아 평화인권 한국위원회, 2001, 『동아시아와 근대의 폭력 I·II』, 도서출판 삼인
- 박원순, 1996, 『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한겨레 신문사
- 박훈하, 1996, ‘기치존 소설의 존재방식과 이데올로기’ 『한국현대문학의 성과 매춘연구』 대학사.
- 백기완, 1994, ‘내가 겪은 50년대의 서울’, 『문화과학5』 봄호
- 서중석, 1999, 『조봉암과 1950년대-하: 피해대중과 학살의 정치학』, 역사비평사
- 소정자, 1966, 『내가 반역자인가』, 방이문화사
- 우에노 치즈코(저), 이선이(옮김), 1999,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 유철인, 1996,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다: 생애이야기의 주제와 서술전략’, 『한국문화인류학』, 29-2:397-419, 한국문화인류학회
- 이효재, 1999, ‘일본군 위안부 해결을 위한 운동의 전개과정’,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
- 정은용, 1994,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 도서출판 다리
- 정희상, 1990,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소: 6·25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발굴르뽀』, 돌베개
- 정찬동, 1999, 『함평양민학살』, 시와사람
- 한수영, 1999, ‘분단과 전쟁이 낳은 비극적 역사의 아들들’, 『역사비평』 제46집 봄호
- 시사저널, 1995, “문경 양민학살 은폐된 진실 밝혀냈다”, 1995.3.23.
- 오연호, 1994년 7월호, “6·25참전 미군의 충북 영동양민 3백여명 학살 사건”, 『월간 말』
- 캐더린 맥키넨, 조시현 역, 1993(2000) ‘전쟁시의 범죄, 평화시의 범죄’, 『현대사상과 인권』, Philip West and Suh Ji-moon, 2001, Remembering the "Forgotten War", An East Gate Book

Brownmiller, Susan, 1994, 『성폭력의 역사』, 일월서각  
 『Gender Violence: The hidden War Crime』, 1998, Women, Law & Development International  
 고양 금정굴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1999, 『고양금정굴양민학살  
 사건 진상보고서』  
 여수지역사회연구소 편, 1998,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 제1집: 여수지역편』  
 제주 4.3제 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 1999, 『제주 4.3연구』, 역사비평사.  
 채의진 편저, 1995, 『아, 통한 사십육년 : 문경양민학살 백서5판』, 문경양민학살피해자자유족회  
 신문검색 : 한겨레, 동아  
 인터넷 검색 :  
 김동춘 교수 홈페이지 <http://dokim.skhu.ac.kr>  
 한국인권재단 인권도서관 <http://www.humanrights.or.kr>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http://www.genocide.or.kr>

2001년 2월 18일 오전 세션  
**북한의 인권문제**

**북한의 인권 : 안으로부터의 시각**

김근식 ·

**적당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와 북측 식량지원**

정미경 ·

**북한인권문제와 국내의 운동현황**

이원웅 ·

## 북한의 인권 : 안으로부터의 시각<sup>1)</sup>

김근식(아태평화재단 연구위원, 정치학)

### I. 서론

한때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금기의 영역이었다. 남북의 적대상황을 정권유지에 이용하고 이를 정적탄압에 활용했던 군사독재하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주장하고 북한민주화를 강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상황적 조건 때문이었다. 한동안 북한인권을 제기하는 것이 관변이나 어용단체 혹은 수구언론의 전유물이었던 것은 이러한 상황을 역으로 입증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신뢰할만한 정보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자칫 남북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시민단체로 하여금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해 선불리 나설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냉전이 종식된 이후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예전처럼 냉전논리로 해석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국제적 차원의 인권문제로 관심을 끌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와 식량난 악화로 북한주민의 전체 생명권이 우려되고 탈북자들에 의해 북한의 실상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시민사회는 북한인권에 대해 나름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어려움에 처한 북한 인민을 동포애적 관점에서 도우려는 운동에서부터 북한의 인권상황을 전세계에 고발하는 고강도의 대응까지 이제 시민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새롭게 헤쳐나가야 할 하나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과거 북한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가졌던 인사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었다면서 북한체제에 대해 맹비난을 퍼붓는 격세지감의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가 시민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떠오른 지금에도 여전히 여기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보편적 관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토록 요구하는 것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sup>2)</sup> 남한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아직 불충분한 상태에서 북한인권만을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남한중심적 의견도<sup>3)</sup> 존재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아직은 북측을 자극하지 말고 북한사회의 위기극복과 정상화를 위해 북한돕기와 남북화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중론이 있는가 하면<sup>4)</sup> 지금 제기되는 북한인권의 실태는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부정확한 파악이며 따라서 이는 냉전적 대결에 기여하는 반복모략일 뿐이라는 전통적 의견<sup>5)</sup> 또한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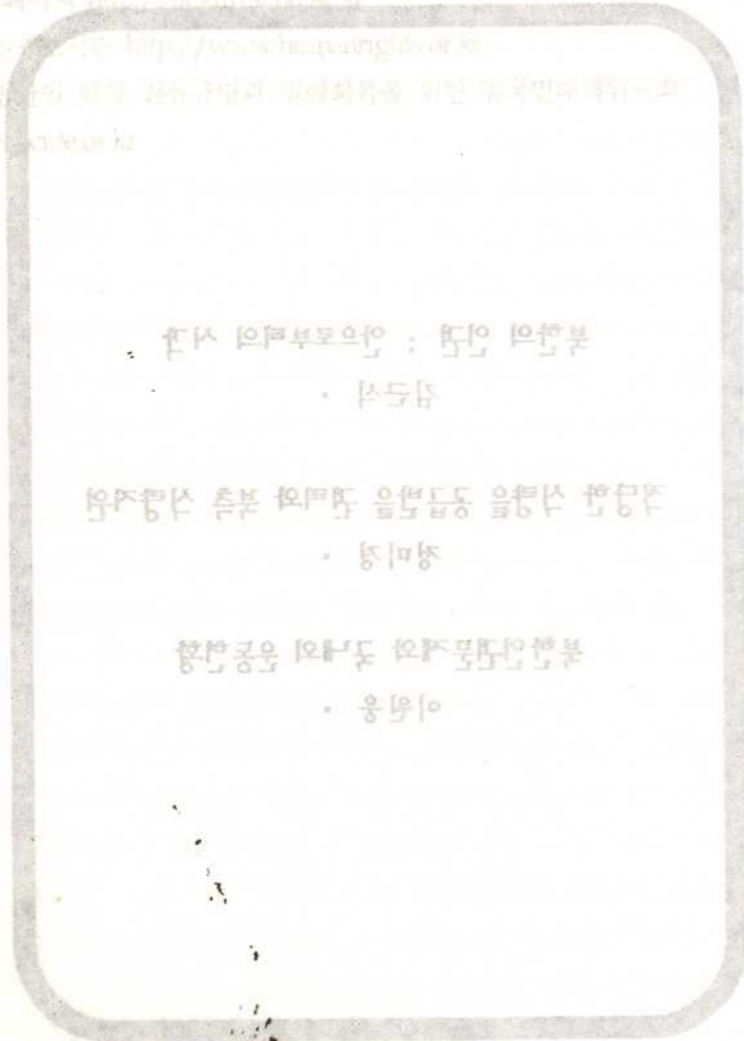
1) 이 논문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이므로 아태평화재단의 공식적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2) 대표적으로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와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북한인권시민연합)의 입장을 들 수 있다.

3) 서준식씨가 이끄는 인권운동사랑방이 이에 가깝다.

4) 북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종교단체와 사회단체들이 모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사)좋은벗들이 대표적이다.

5) 전국연합과 한총련 및 한호석 소장이 이끄는 미국의 통일학연구소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지금에도 이처럼 엇갈리는 입장이 존재하는 것은 여전히 북한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여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고 이 문제가 자칫 남북화해시대의 개막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반북이데올로기와 냉전적 대결을 부추기려는 일부 수구세력에 활용되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sup>6)</sup>

지금껏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 외부의 시각에 근거한 것이었다. 즉 서구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성립된 인간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개념에 근거하여 북한체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서구에서도 현대 인권의 개념을 논의할 때 자유민주주의의 입장과 사회민주주의의 입장이 크게 대별되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한 서구적 관점의 인권개념이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가 현실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외부와 시각과 함께 북한체제 내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인권개념에 대해서도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체제에서 사회주의적 정치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 자신의 잣대와 함께 상대방이 설명하고 있는 잣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서구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 인권문제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 즉 북한의 관점에서 보는 인권문제를 북한의 설명을 중심으로 파악해봄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북한인권문제의 접근방법에 대한 고민해보고자 한다.

## II. 북한인권문제의 현황: 밖으로부터의 시각

### 1. 서구 인권개념의 발전

서구에서 정립된 '인권'은 이른바 절대적 가치이자 보편적 가치로서의 개인의 生得的 권리를 뜻한다. 즉 기독교 원리가 전일적으로 지배하던 서구 중세사회의 神 우위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으로 대체되고 아울러 절대왕정하의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 과정에서 서구의 인권은 발전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서구의 인권개념은 이른바 '자연법' 사상에 근거한 '자연권'(natural rights)으로서의 개인의 天賦的 권리이며 때문에 인권은 양도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으며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로 인식된다.<sup>7)</sup> 중세봉건사회를 지나 자본주의가 태동하고 시민혁명을 거쳐 자유민주주의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인권은 로크의 자연권이 의미하는 바의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에 대한 자연권(natural rights to life, liberty and property)으로 정립된다. 그리고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에 대한 권리선언은 이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함으로써 인간의 자연권을 실정법화한 계기로 작용했다.<sup>8)</sup>

6. 1999년과 2000년에 개최되었던 「북한인권시민연합」 주최의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 반북언론인 조선일보에 의해 후원되고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7. 이같은 인권의 특성에 대해 최성철 교수는 국가를 초월한 초국가적 특성, 보편성, 자연적으로 주어진 天賦性, 불가침성, 不可讓性, 항구성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최성철, '보편적 인권개념으로 본 북한의 인권' 통일연구총 4권 2호 (1995), 133쪽.

이후 서구의 인권개념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으로서의 개인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주권자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른바 '기본권'의 개념으로 헌법을 통해 확립되었다. 그러나 서구의 인권은 사회민주주의의 발흥과 함께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에 치중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이외에 사회적 경제적 재화와 용역 및 기회에의 평등을 보장하며 국가가 이를 위해 적극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이른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추가로 제기되었고 이는 급기야 2차 세계대전 이후 창설된 국제연합에서의 논의를 거쳐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으로 공식화되었다.<sup>9)</sup>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누구의 간섭과 침해를 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이 명시됨으로써 인권은 이제 국제적 차원의 보편 이슈로 발전하였다. 인권보장의 이정표로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이 일반적 원칙을 띤 선언문에 불과하다는 한계는 1966년에 구속력이 있는 법규로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이 제정되고 이후 1976년부터 발효됨으로써 극복되었다. 이제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는 국제법적 구속력에 따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노력하게 된 것이다.<sup>10)</sup> 무엇보다도 자유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무엇을 할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차이는 이후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인권선언에서 다시 재론되기도 했다. 결국 서구의 인권개념은 초기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거쳐 사회주의적 가치의 문제제기에 따라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유럽 내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인권의 보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 외에도 최근에는 서구중심의 인권개념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제3세계 개도국의 '발전권' 문제와 비서방국가의 인권의 특수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인류 보편의 가치로 간주되는 인권개념이 서구 민주주의의 발전과 개인주의의 토양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당연히 상이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가진 비서방국가에서 인권의 개념은 서구의 그것과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11)</sup> 이른바 문화적 상대주의의 입장에서 '아시아적 가치'를 둘러싼 인권의 특수성 논쟁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sup>12)</sup> 예컨대 죄를 범한 미국인에게 싱가포르의 법에 따라 태형이 가해진 것을 두고 미국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 것과 리관유 수상이 서구 전통에서 유래한 인권개념으로 아시아를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반발한 것은 서구중심주의의 인권에 대한 논란이라 할 수 있다.

8. 인권을 서구 민주주의의 발달과정에서 차분히 고찰한 것으로는 이종은, '민주주의와 인권', 계간 사상, 11권 4호 (1999년 겨울), 139-149쪽 참조.

9. 세계인권선언 채택과정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둘러싸고 자연법과 실증주의,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서방국가와 비서방국가 사이의 차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인권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오름 (1995), 51-58쪽 참조.

10. 서구의 시민권 발전을 이른바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으로는 T. H. Marshall,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and Other Essays, (T. H. Marshal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0) 참조.

1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정진성,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21세기의 인권 1 (한국인권재단 편), 한길사 (2000), 93-116쪽 참조.

12. 아시아적 가치와 인권의 상대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계간 사상, 1996년 겨울호 특집으로 실린 「동아시아의 성장과 인권」이라는 주제의 다수의 논문들을 참조. 그리고 이들 논문 일부는 한상진 편, 현대사회와 인권, 나남출판 (1998)에 발췌요약되어 있다.

그러나 서구의 인권개념의 핵심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성립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른바 기본권으로 표현되는 이 권리들은 동서양을 넘어 대개의 경우 동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반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천부인권이라기 보다는 인간이 획득해야 할 권리로 설명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북한 인권에 대한 서구적 관점의 문제 제기 역시 대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오히려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서구의 인권공방에 대한 북한의 대응 역시 사회주의적 가치로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입장과 인권의 상대주의에 입각한 서구 강대국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 2. 북한인권 관련 문제 제기

북한의 인권문제는 과거 남북대결 시기 남한 정부와 관련 단체에 의해 줄기차게 제기되었으나 국제사회에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냉전적 대결상황에서 남북한 정부가 주고받는 일상적인 정치적 공세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83년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AI)의 연례 보고서에 북한인권 문제가 수록되기 시작했고 이후 1988년에 인권단체인 아시아위치와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북한의 인권」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북한의 인권탄압 실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했다.<sup>13)</sup> 연례보고서에 북한인권 실태를 포함시키고 있던 AI는 1989년에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배경설명」을 따로 출판함으로써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시작한 이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에 각각 북한인권과 관련한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 주로는 북송 교포의 인권상황과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 및 탈북자 처형과 공개처형 문제를 제기했다.<sup>14)</sup>

이외에도 헤리티지 재단은 1992년 심포지움 보고서로 「북한의 인권」을 출간했고 국제언론인협회(IPI)도 1995년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 3개항의 대북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한 1994년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의원연맹(APPU) 총회에서도 북한내 인권개선과 억류된 한국인의 조속송환을 촉구하는 대북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다. 미 국무부 역시 매년 초 발간하는 「각국 인권실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수차례 개별적 차원에서 문제제기 되다가 1997년과 1998년에 인권위 산하 '차별 방지소위'에서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한 우려와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남한 정부 역시 1995년 유엔총회에서 당시 공로명 외무장관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당국의 인권보호를 촉구한 바 있다.<sup>15)</sup>

냉전이 종식되고 북한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제적 차원에서의 문제제기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13. 아시아감시위원회·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 송철복 외 역, 북한의 인권, 고려원 (1990).
14. AI의 북한인권관련 특별보고서는 1993년 10월의 「북한: 국제사면위원회의 우려」, 1994년 7월의 「정치범에 관한 새로운 정보」, 1995년 12월의 「북한: 장막 뒤의 인권침해」, 1996년 9월의 「북한/러시아: 추적, 위협, 북한탈출자 및 노동자들의 유린」, 1997년 1월의 「북한 공개처형: 일치된 증언」 등이다. 특히 1994년 보고서를 통해 송호리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명단이 공개되면서 국내에서는 전 수도여고 교사 고상문씨에 대한 송환요구가 쟁점화되기도 했다.
15. 당시 공로명 장관의 발언을 둘러싸고 남북 양측은 두 차례씩 반론을 제기하는 등 열띤 인권논쟁을 벌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도 북한인권 문제를 놓고 활발한 연구조사 활동과 시민단체 차원의 공개적인 인권개선 촉구활동이 전개되었다. 정부산하기관과 대학 등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다양한 책자를 발간하고<sup>16)</sup> 국제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목적으로 한 시민단체가 조직되어 활발한 국내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북한인권에 대한 대표적인 책자로는 통일연구원에서 1996년 이래 해마다 발간하고 있는 「북한인권백서」가 있고 대표적인 시민단체로는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와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북한 민주화네트워크), 「탈북난민보호UN청원운동본부」 등이 있다. 특히 이들 시민단체는 해외의 북한인권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바, 대표적인 해외단체들로는 일본의 「북조선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 「북조선난민구조기금」, 「구출하자 북조선민중을! 긴급행동네트워크」(RENK), 미국의 AEGIS 재단, 프랑스의 동아시아 워치 등이 있다.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내외 단체들은 북한사회의 인권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해서도 大同小異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서구의 인권개념인 이른바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입각한 것이다. 즉 북한인권을 다루고 있는 국내외 책자와 보고서, 그리고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내외 학술회의 결과물 등은 거의 대부분 1966년에 제정된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하여 북한사회의 인권실상을 점검하고 동일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노동관련 권리, 생존권, 사회보장권, 의식주 보장, 건강보호권,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등으로 요약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부분의 북한인권 분석은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들이 완전한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만의 인권침해 사례로 거론되지 않는 반면,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평등권, 언론출판·집회결사·거주이전·사상·종교의 자유, 참정권 등 이른바 '시민적 정치적 권리' 부분의 북한 실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관련하여 공개처형과 정치범 수용소, 거주이전 및 이동의 자유 제한,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선거에서 단독입후보제, 종교의 자유 억압, 성분차별 정책, 탈북자 강제송환 등이 주요한 인권침해 실태로 거론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달리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서구의 인권발달 과정에서 검증된 최소한의 기본권이며 인권의 상대주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세계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인권의 기초로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도 바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가 한결같이 이 시민

16. 최근에 발간된 북한인권 관련 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통일연구원, 북한의 인권실태 (199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한인권 그 실상과 정책과제 (1995); 최성철 편저,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1996); 북한인권문제와 유엔인권제도, 현대사회연구소 (1997); 북한인권의 허와 실, 남북문제연구소 (2000); 김병로, 북한의 인권: 그 실상과 허상, 다나 (1995); 북한의 인권문제와 남북한의 한반도평화전략, 선문대학교 평화사상연구원 (1999); 한국방송공사·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편, 북한의 인권실상과 국제사회의 역할, 한국방송공사 (1995); 이원용, 북한의 인권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현대사회연구소 (1996);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자료집,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 (1999); 제2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자료집,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 (2000); 최성철, 북한인권론,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1998);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민족통일연구원 (1997); 최성철 편, 북한인권의 이해,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5);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을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1999); 최의철, 냉전종식후 국제정치와 인권: 대북인권정책 추진방향모색, 통일연구원 (2000); 김병로, 김정일 정권의 인권정책 변화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5)

적 정치적 권리 부분에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sup>17)</sup> 특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관련한 북한의 대표적인 인권탄압 실태로 언급되는 이슈는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 및 납북자 문제, 탈북난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이다.<sup>18)</sup> AI가 제기하는 북한인권 문제와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의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결의안 내용 그리고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북한의 대표적 인권문제가 바로 여기에 집중되고 있기도 하다. 바로 이같은 '북한적인' 이슈로 인해 북한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인권 부재 국가로 평가되고 '노동당의 절대적 지배하에 있는 독재국가로서 기본적인 인권마저 부정되고 있다'는 낙인이 찍히고 있는 것이다.

### 3. 남겨진 문제들

그러나 국내외에서 제기하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가 정확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한다.

첫째 북한의 인권상황을 둘러싸고 정보와 사실관계에 대해 아직도 전적인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내외의 각종 북한인권 보고서는 탈북자의 증언을 가장 중요한 입증근거로 삼고 있지만<sup>19)</sup> 현지에서의 객관적인 현장조사와 실태파악이 수반되지 않는 탈북자만의 증언은 그것이 비록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왜곡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주민이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살고 있는 체제를 떠났을 경우 그 체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들고 특히 북한과 첨예한 체제대결을 벌이고 있는 남쪽으로 귀순했을 경우 그들 대부분은 북한체제에 대해 사실 이상의 부정적 증언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록 소수지만 의거입북한 남한 사람들이 북측 언론매체에 나와 남한 사정을 언급하는 내용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도 탈북자들의 증언이 과장되었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으로 판명난 경우도 종종 있어왔다.<sup>20)</sup>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에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소설 같은 내용들이 객관적 근거와 신빙성 없이 기술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의 공개처형을 설명하면서 '사형 집행 전에 사형대상자들의 반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팔과 다리를 부러뜨림은 물론 구타하여 실신시키며 입에 재갈을 물려 질질 끌고 나와 간단한 판결문을 읽은 후 바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는 식으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내용을 여과 없이 묘사하고 있다.<sup>21)</sup> AI가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것으로

17.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와 미 국무부의 각국 인권실태 보고서에 실린 북한인권의 실태 역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그 내용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의철, 미국무부의 2000년 북한인권보고서와 통일연구원 2000년 북한인권백서 비교분석, 통일연구원 (2000)을 참조.

18. 탈북난민의 실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좋은벗들 엮음,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정토출판 (1999); 좋은벗들 엮음, 사람답게 살고싶소, 정토출판 (1999); 권혁, 고난의 강행군, 정토출판 (1999); 좋은벗들 엮음,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 정토출판 (2000) 등을 참조.

19. 탈북자들은 국제사회에서도 활발한 증언활동을 벌이고 있다. 1998년 2월 탈북자 강철환과 이순옥은 미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에서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해 증언한 바 있다. 최근에는 탈북자들의 인터뷰가 미국 학술 잡지에 실리기도 했다. Voices from North Korean Gulag, Journal of Democracy, Vol. 9, No. 3 (July 1998), pp. 82-96.

20.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자칭 강성산 총리의 사위라는 강명도씨가 1994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5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국제적 파장을 일으키자 서둘러 안기부에서 번복했던 사례를 들 수 있다.

밝혔던 고상문, 유성근씨 등 납북자가 북한의 TV에 나와 의거입북이었음을 밝혔던 것도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임은 분명하다.

결국 전적으로 신뢰하기 힘든 탈북자의 증언에 기초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서술되고 이것이 국내외의 권위 있는 단체와 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수록됨으로써 이후에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탈북자의 증언 외에 보다 확실한 정보와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 북한에 대한 예단을 갖고 필요이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심지어는 정확치 않은 설명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설명하면서 주관적 판단에 의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인권백서」에서는 북한형법의 반인권성을 설명하면서 유추해석의 인정과 공소시효의 부정, 예비,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것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sup>22)</sup> 그러나 1987년에 개정된 북한형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의 근거는 상당부분 자의적 해석이거나 고의적 왜곡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유추해석을 인정하고 있는 형법 10조는 바로 뒤에 '범죄의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그와 유사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침해대상과 사회관계, 주관적 표징과 범인의 표징의 한계를 넘어 류추할 수 없다'고 한계를 명백히 설정하고 있다.<sup>23)</sup>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도 형법 42조에는 각종 범죄에 대해 명백히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고 단 반국가범죄와 고의적 살인죄에 대해서만 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북한인권백서」에서는 마치 모든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예비,미수범의 기수범과의 동일처벌 역시 형법 15조가 예비,미수범에 대해 기수범과 같은 '조항'을 적용할 뿐 형벌의 양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백서」에는 북한이 형법 46조의 '반동선전선동죄'를 적용하여 사형, 전 재산 몰수, 강제노역 등과 같은 가혹한 처벌을 가할 수 있다고 적고 있으나<sup>24)</sup> 실제 형법 46조는 '공화국을 전

21. 제성호 외, 2000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1999), 19-20쪽. 이외에도 북한인권백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황장엽은 1960년대에 김일성이 '난쟁이들이 종자를 퍼뜨리면 안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두라'고 지시함에 따라 함남 정평군에 난쟁이 수용소가 설치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귀순자 오수룡은 난쟁이인 김기화가 함북지방 산골지역으로 추방당하였다가 거세당한 후 귀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귀순자 정재광도 1978년경 모란봉구역에서 불명의 안전원이 평양에서 추방되지 않기 위해서 16세 가량의 반신불수인 아들을 독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50쪽). "1986년 10월 함북 온성의 12호 관리소에서는 정치범들이 인권탄압에 대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용소내 보위원 가족마을을 습격하여 보위원 가족 수백명을 살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국가안전보위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경비대 1개 대대병력을 출동시켜 봉기가담자를 포함하여 청장년 약 5000여명 이상을 사살하였다"(123쪽).

22. 제성호 외, 북한인권백서 2000, 위의 책, 29-30쪽.

23. 이에 대해 김일수 교수는 북한형법에서의 "유추는 유추가 아니라 해석이고 따라서 종전에는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죄로 보고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때나 형사법에 그 종류와 형태를 전혀 지적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때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일수, 북한 형법의 체계와 특색, 북한법 체계와 특색 (세종연구소 편), 세종연구소 (1994), 217쪽.

24. 2000 북한인권백서, 위의 책, 59쪽.

북, 문란, 약화시키거나 그밖의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도록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인권백서」는 또한 북한 형법 59조에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국가의 산업, 운수, 상업, 화폐유통, 신용제도를 파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적고 있지만<sup>25)</sup> 북한형법에 이같은 규정은 없으며 실제로 형법 59조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횡령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대량 혹은 중요한 재산의 횡령에 대해서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역시 명백한 사실 왜곡인 것이다.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기술하면서 서구에 대한 기준과 북한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잣대의 경우도 북한인권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동일한 상황을 놓고 서구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 이상으로 가혹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결코 객관적인 분석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북한의 인권상황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책자는 북한에도 헌법에나 법률에는 시민적 권리의 일부가 보장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시민적 권리와 실제에서의 온전한 실현여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괴리가 있게 마련이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유독 북한의 경우에 대해서만은 헌법에 시민적 권리들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한 이중잣대라 할 수 있다. 1998년에 개정된 북한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리로서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겠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1992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도 형사소송절차에서 인권보장을 선언하고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 및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책자는 뚜렷한 근거 없이 실제에서 정당한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구금하거나 고문을 자행하는 등 비인간적인 처우가 만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의 법과 현실의 불일치는 외면한 채 북한에 대해서만 그럴 것이라고 추측하는 명백한 이중잣대의 예가 된다.

여성의 지위와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이 여성의 공직참여와 권력기관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현실이지만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최고인민회의에서의 여성비율 20.1%에도 불구하고 혹평을 하고 있고 경제영역에서 북한여성의 참여가 높은 것에 대해서도 여성의 사회진출로 평가하기보다는 노동착취로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인권상황 평가가 탈북자 증언에만 의존하고 자의적 해석과 고의적 왜곡이 존재하며 이중잣대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점은 여전히 사실관계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받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둘째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의 문제점은 서구 인권개념만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서방 국가의 문화적 차이와 조건을 외면한 채 지나치게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중요시하는 사회주의의 특성을 무시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만을 인권의 주요

25. 위의 책, 99쪽.

기준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유교적 전통과 아시아적 문화에 입각한 북한의 독자적인 특성을 서구적 기준으로 비난하는 것 등은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의 대표적인 인권침해로 거론되는 공개처형의 경우 중국의 공개처형, 싱가포르의 태형, 미국의 전기의자 사형 등 문화의 특수성에 따른 예방범죄 차원의 고유한 행형절차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공정한 법절차도 거치지 않은 인민재판식 私刑으로 간주하는 것은 분명 지나친 평가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엄연한 사실들을 서술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왜곡과 과장과 주관적 편견이 포함된다면 자칫 그 사실마저 믿지 못하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우리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지만 북한사회 전체를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엽기적인 일이 벌어지는 이상한 나라로 묘사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명명백백한 사실만을 지적할 때에만 북측의 개선노력을 유도할 수 있으며 오히려 허황되고 잘못된 북한실상을 공격하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공격의 빌미를 줄 뿐이다.

### III. 북한의 관점에서 본 인권: 안으로부터의 시각

#### 1.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

한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이 제기하는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첫째는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로 제기되는 사안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는 '解明과否認'의 방식이다. 대표적으로는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된 사람이나 납북자 등에 대해 외부에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우려를 표명할 경우 북한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적극적인 해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94년 AI의 특별보고서를 통해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명단이 공개되자 북한은 이에 포함된 고상문(1994. 8. 10), 유성근(1994. 8. 11)씨의 기자회견과 납북자로 거명된 7명의 내외신 기자회견을(1994. 8. 17) 통해 이들이 자진해서 입북했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AI가 의문을 제기한 북송교포 시바타 고조씨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도 북한은 그가 간첩죄로 26년 동안 수감되어 있다가 석방되었으나 1990년 3월 교통사고로 친척들과 함께 사망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AI가 문제를 제기한 조호평씨에 대해서도 북한은 그가 1967년 간첩죄로 투옥되어 복역하던 중 1974년 탈옥하여 군함정을 납치해 해외탈출을 시도하다가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부인 및 자녀 3명과 함께 사망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1995년 7월 납북된 것으로 알려진 안승운 목사 역시 북한 TV에 나와 자진입북임을 밝혔고 북한은 적십자사 성명을 통해 납치가 아님을 거듭 주장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일자 북한은 1995년에 조선인권연구협회 명의로 AI의 조사단을 초청하여 사리원교화소를 방문케 하였다. 당시 북한은 AI 조사단에게 북한의 전체 죄수는 800-1000명이며 이들은 3개 교화소에 수용되어 있고 이들 중 정치범 240명은 형산 재교화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탈북자들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sup>26)</sup> 탈북난

26. AI, Amnesty International Delegation Visits North Korea, Discusses Legal Reforms and Prisoner Cases

민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북한은 이들을 비법월경자들과 위법자들로 간주하고 국제법상 난민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sup>27)</sup> 정치적 이유로 피난한 것이 아니라 식량을 얻기 위한 경제적 동기에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의해 송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 나름대로 긍정적 대응을 하는 모습도 보인다. 탈북자 처벌과 관련되어 문제되었던 형법 47조를 1995년 개정했다고 AI에 통보한 것이나<sup>28)</sup> 1997년 유엔인권소위에서의 대북결의한 채택 이후 1998년 개정헌법에 거주여행의 자유를 신설한 점 등은 분명 북한식의 긍정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또 다른 대응은 사회주의적 가치와 북한의 특수성에 입각한 '북한식 인권'을 강조하면서 서방의 개입을 내정간섭으로 간주하고 오히려 서방의 인권실태를 비판하는 방식이다. 서방과 남한의 인권공세에 대해 매년 북한은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특수성, 수령·당·대중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통일되어 있는 독특한 정치체제,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등 인권의 물질적 기초가 완비된 사회 등을 내세워 서구의 인권개념으로 북한을 비난하는 것은 북한체제를 평화적으로 전복시키려는 평화적 이행전략이라 규정하고 역으로 서방국가와 남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공격하곤 했다.<sup>29)</sup> 이런 관점에서 북한은 1997년 유엔 인권소위가 대북인권 개선결의안을 채택하자 주권침해를 이유로 국제인권규약 B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의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sup>30)</sup>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되어 있으며 따라서 인권문제에 대한 서방의 공격은 적반하장 격의 내정간섭이라는 것이다.

## 2. 북한의 인권개념

이처럼 북한은 서방이 제기하는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부인과 해명을 한편으로 하면서 서구중심의 인권개념을 반대하고 사회주의와 북한의 특수성에 입각한 북한식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이 관점에서 오히려 서방국가들을 공격하고 있다. 북한에서 인권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 곧 사람의 자주적 권리'로<sup>31)</sup> 정의되고 '인민이 가져야 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권리'로서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만 철저히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2)</sup> 그리고 실제 북한에서 설명되는 인권개

(1995.5.11).

27.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 '피난민 류출은 있어 본적도 없다', 조선중앙통신, 2000.1.24.

28. 제성호 외, 북한인권백서 2000, 앞의 책, 17쪽.

29. 인권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표명 중 정상희담 이전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인권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남조선에 문제가 있다', 조선중앙통신, 1999.10.11; '인권의 무덤 위에 떠드는 인권타령', 조선중앙통신, 1999.12.2; '용납할 수 없는 인권선언', 조선중앙통신, 1999.11.17; '공화국 압살위한 인권문제 리용회책', 조선중앙통신, 2000.1.18; '미국은 인권 말할 자격 없다', 조선중앙방송 논평, 2000. 2.9; '국가의 자주권 떠난 인권이란 상상할 수 없다', 로동신문, 2000.4.7.

30. 북한은 국제인권규약에 1981년 가입한 바 있다. 1997년 탈퇴선언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는 '인권규약 및 국제법에 의거 허용될 수 없다'고 북한에 통지했다.

31. 조선말대사전 2, 사회과학출판사 (1992), 1696쪽.

32. 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0), 718쪽.

념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서구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가. 집단주의적 가치

우선 북한의 인권개념은 서구와 달리 개인적 자유와 권리보다는 집단적 차원의 인권을 더욱 중요시한다. 서구의 인권이 개인주의의 발전과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북한의 인권은 노동계급의 이익과 사회주의의 건설이라는 집단적 가치 하에서의 개인의 인권을 강조한다. 서구 민주주의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및 정치적 권리 등 개인의 천부적 인권 보장을 획득하기 위해 엄청난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 반해 북한은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으로서의 인민 혹은 노동계급의 인권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즉 민족과 계급과 인민의 자주성이 실현되지 않고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인권이란 있을 수 없으며 국가와 집단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인권은 개인보다 집단주의의 원칙을 더 강조한다. 이에 따라 북한 헌법에는 공민의 권리와 함께 집단의 이익과 집단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즉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하며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고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3)</sup> 전체를 고려하고 조직과 집단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적 가치가 전체인민의 통일과 단결을 해치는 개인적 자유와 권리에 분명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이 대립되고 집단의 리익 위에 개인의 리익을 올려놓는 개인주의가 지배'한다면서 개인주의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부의부, 빈익빈을 낳고 사람들 사이의 대립관계를 가져오며<sup>34)</sup> 따라서 '집단주의의 기본요구는 집단의 리익을 우위에 놓고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일치시키며 집단의 리익속에서 개인의 리익을 실현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된다.<sup>35)</sup> 사회주의사회에서 '개인의 이익은 전적으로 사회의 이익에 의존하며 사회적 이익은 근로자들의 개인적 이익을 담보하는 필수적이며 일차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과 사회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며 개인의 이익은 사회의 이익에 복종시키는 것이 생활원칙'이 되고 있다.<sup>36)</sup> 즉 집단을 떠나서는 개인이 살 수 없는 것이므로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은 명백하며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서 개인은 집단의 이익을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다.<sup>37)</sup>

33. 헌법 63조와 81조. 공민의 권리와 의무가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는 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공민들의 자주적식과 창조적 능력을 높이 발양시킬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라고 설명된다. 량창일, 사회주의헌법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135쪽.

34. 이에 대해서는 김창렬,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고 있는 인권옹호와 그 반동적 본질', 근로자 2호 (1990), 93쪽에 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35.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342쪽.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해설, 인민과학사 (1973), 80-81쪽.

37.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앞의 책, 212-213쪽.

또한 북한의 집단주의적 가치는 개인보다 계급의 이익을 앞세운다. 노동계급의 이익을 실현하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계급성을 견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계급적 이익을 훼손하는 개인적 권리와 자유는 허용될 수 없고 인권문제에서도 계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북한헌법에도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 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sup>38)</sup> 노동계급의 혁명과 건설에 반대하는 적대계급이나 반혁명세력에게 인권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에서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인권문제에서도 계급성을 숨기지 않는다'면서 사회주의 인권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 인권이 아니며 소수의 계급적 원수들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북한의 인권이라고 밝히고 있다.<sup>39)</sup>

북한의 집단주의는 이른바 '수령제'에 의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전체 사회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를 통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있다는 수령론은 북한이 어느 나라보다도 집단적 가치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40)</sup>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수령을 중심으로 한 유일사상체계의 강조야말로 개인에 앞선 집단주의의 선차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육체적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집단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람들은 오직 사회정치적 집단의 한 성원으로 됨으로써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닐 수 있다'고 설명된다.<sup>41)</sup> 이같은 수령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평등의 원리를 기초로 하는 개인주의적 생명관과 달리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가 기초가 되는 집단주의적 생명관이라고 강조된다.<sup>42)</sup> 결국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사회정치적 집단의 최고보수인 수령과 사회정치적 집단의 중추인 노동계급의 당을 중심으로 인민대중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합된 일심단결'로서 이는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이루며 혁명승리의 기본열쇠'가 되는 것으로 설명된다.<sup>43)</sup>

이러한 집단주의적 가치의 우선적 강조로 인해 북한의 인권개념에서는 정치적 다원주의와 다당제가 결코 허용될 수 없다.<sup>44)</sup>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다원주의가 표방하는 사상에서의 자유화, 정치에서의 다당제, 소유에서의 다양화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한 생존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방식'이고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인민대중의 통일을 생명으로

38. 헌법 12조.

39.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노동신문, 1995.6.24.

40.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박영철,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사회정치적 생명체,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참조.

41. 김정일, '주체사상에서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앞의 책, 160쪽.

42.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리경남, '집단주의적 생명관의 기본내용과 그 확립의 기본요구', 철학논문집 19,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 31-65쪽 참조.

43. 고태천,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 근로자 7호 (1991년), 27쪽.

44. 북한의 정치제도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에 토대한 우월한 정치제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체의 사회주의정치제도, 평양출판사 (1992); 리혜청, '우리식 사회주의정치생활의 우월성',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 로작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에 관한 논문집, 사회과학출판사 (1992), 51-78쪽을 참조할 것.

하는 사회이므로 사회주의와 다원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sup>45)</sup> 계급투쟁이 존재하는 민주주의는 계급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부르조아의회제와 부르조아다당제는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라 부르조아독재를 실시하는 도구'이며 서방국가에서 '다당제를 실시하고 이른바 자유선거를 진행한 결과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것은 노동계급의 당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반동적 정당들의 연합'뿐이었다는 것이다.<sup>46)</sup>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 '사회주의를 전체주의, 병영식, 행정명령식이라고 비방하는 모든 반사회주의악선전은 사회주의적 집단주의를 헐뜯고 부르조아개인주의를 찬미하는 것'에 불과하다.<sup>47)</sup>

이같은 북한의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본래적 측면 외에도 혁명과 건설의 과정에서 이른바 제국주의와 반혁명세력과의 투쟁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특히 미국과의 적대적 대결로 '피포위 의식'이 지속되면서 자신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전체 인민의 통일을 최우선의 과제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북한 나름의 역사적 과정과 깊숙히 연관되어 있다.

#### 나. 사회경제적 권리와 문화적 권리의 우위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는 인권을 설명하면서 개인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보다 인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더 우위에 놓는다. 사회주의적 관점에서는 서구 민주주의의 발달을 통해 확보된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및 정치적 권리 등은 이미 전제된 것으로 보고 오히려 서구 자본주의가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는 사회경제적 권리와 문화적 권리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인민에게 의식주를 보장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과 교육 및 의료를 제공하며 질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케 하는 것 자체가 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이라는 것이다.

북한 역시 집단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긴 하지만 이른바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내용들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한 비밀선거,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신소와 청원권, 거주여행의 자유,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및 서신의 비밀 보장 등은 헌법의 각 조항에 수록되어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집단의 이익 속에서 개인의 이익을 실현한다는 집단주의의 원칙에 의해 제한된다. 즉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노동계급의 이익을 훼손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해치면서까지 보장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개념은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는 측면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보다 전체 인민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권리를 더 중요시한다. 즉 노동의 조건 보장, 완전 고용, 휴식에 대한 권리 보장, 무상치료, 무상교육, 무상 주택, 의식주 보장, 문화시설 보장, 남녀평등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 보장이 보다 실질적인 인권보장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사회주의는 인민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자유롭고 풍요로

45.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앞의 책, 434쪽.

46. 김정일,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이다', 김정일선집 10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497-498쪽.

47.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해방은 허용될 수 없다,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21쪽.

은 물질경제생활을 보장해준다고 설명된다.<sup>48)</sup> 북한 체제는 근로인민대중이 경제의 주인으로 되는 경제제도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근로인민대중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책임지고 마련해주며 마음놓고 일하고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책임지고 보장해주며 근로인민대중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사회'라는 것이다.<sup>49)</sup> 또한 근로대중이 경제의 주인, 노동의 주인인 북한의 경제제도는 국가가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들의 희망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자유롭고 안전한 노동생활조건을 책임지고 보장해 준다. 때문에 근로자들은 식의주에 대한 근심걱정이 없으며 국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해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병치료를 받는데 들이는 온갖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놓고 배우고 치료받으며 풍요한 물질생활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sup>50)</sup>

북한의 인민들은 국가로부터 무상이나 다름없는 헐값으로 식량을 공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과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살며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 어린이들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부상당한 영예군인들과 공로자들을 우대함으로써 인민 모두가 물질문화생활에 필요한 온갖 조건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장받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sup>51)</sup>

또한 북한은 인민대중이 정신문화적 재부의 창조자, 향유자로서의 사상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사회라고 설명된다.<sup>52)</sup> 북한체제는 인민대중중심의 사상문화제도에 의해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인류가 이룩한 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습득시키고 인민보건사업과 대중적 체육활동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의 체력을 끊임없이 증진'시키는 사회라는 것이다.<sup>53)</sup> 즉 북한에서는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통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대학졸업 정도의 높은 지식수준을 갖게 하고 풍부한 문화정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인민대중 모두를 건강한 체력의 소유자로 키운다고 강조하고 있다.<sup>54)</sup>

이러한 북한의 인권개념은 자신의 체제가 보다 인권을 보장해주는 우월한 체제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오히려 서방사회가 사회경제적 문화적 측면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인권유린 체제라고 반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즉 인권의 물질적 기초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

48.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기호,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자유롭고 풍요한 경제생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전적 로작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에 관한 논문집, 앞의 책, 79-99쪽 참조.

49. 서재영, '주체의 사회주의경제제도는 인민대중중심의 경제제도', 주체의 사회주의경제제도, 평양출판사 (1993), 17쪽.

50. 림대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경제제도', 주체의 사회주의경제제도, 위의 책, 209-210쪽.

51.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앞의 글, 358쪽.

52.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리현순, '인민대중이 정신문화적 재부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어 누리는 사상문화생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전적 로작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에 관한 논문집, 앞의 책, 100-127쪽 참조.

53. 주정순, '주체의 사상문화제도는 인민대중중심의 사상문화제도', 주체의 사회주의사상문화제도, 평양출판사 (1993), 41-42쪽.

54. 백철, '주체의 문화제도는 인민대중을 문화의 주인으로, 창조자, 향유자로 내세우는 제도', 주체의 사회주의사상문화제도, 위의 책, 116-137쪽.

과 권리는 오히려 가진 자의 자유와 권리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해 사회경제적 문화적 권리의 우위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상에서 인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가장 혹독한 나라는 바로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이 된다.<sup>55)</sup> 즉 '민주주의가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민대중에게 인권은 있을 수 없으며 근로인민대중은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빼앗기고 오직 자본주의 사회에 인권이 있다면 한줌도 못되는 특권계층이 근로대중의 피땀을 짜내어 부귀영화를 누리며 인민들을 억압하고 멸시할 권리가 있을 따름'이다.<sup>56)</sup> 북한의 입장에 따르면 서방의 인권이란 '돈만 있으면 별의별 짓을 다할 수 있는 부자들의 특권'이고 여기서는 '실업자들의 노동할 권리, 무의탁자들과 고아들의 먹고 살 권리 같은 것은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인권의 첫째가는 원수는 인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며,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제국주의자들'이라는 것이다.<sup>57)</sup>

이같은 인권개념을 통해 북한은 사회주의의 인민적 성격과 자본주의의 반인민적 성격이 '인권문제'에서 뚜렷이 나타난다고 반박한다. 즉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로동에 대한 권리로부터 먹고 입고 쓰고 살 권리, 배우며 치료받을 권리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모든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 있는 나라는 세상에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무고한 인민들과 인사들에게 정치테로를 가하고 근로자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생존권마저 유린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이다.<sup>58)</sup>

북한이 바라보는 인권은 이처럼 서구의 인권개념과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방국가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반사회주의적 책동으로서 북한을 왜해시키기 위한 '평화적 이행전략'으로 간주하고 있다.<sup>59)</sup> 또한 1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 참석한 북한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에 인권문제는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인권문제는 '해당 국가가 자기 실정에 맞게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문제'이고 '진정한 인권의 보호증진은 매개 나라와 인민이 선택한 정치경제제도와 법률에 의해 실현되며 나라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서구의 인권과는 다른 북한인권의 상대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sup>60)</sup>

#### 다. 소결

결국 북한은 집단주의적 가치와 사회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인권의 보다 중요한 부분으로 주장하면서 서방국가의 인권문제 제기에도 정면으로 반박하고 서구적 개념의 인권이 결코 보편성을 갖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 인권개념의 특성은 지난 해 미국의 '각국 인권실태

55.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서재영, '자본주의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우월성에 대하여 떠드는 부르조이리론의 반동성', 근로자, 8호 (1996), 91-96쪽; 리봉학, '자본주의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의 반동적인 사회', 근로자, 6호 (1997), 92-99쪽.

56. 김일성저작집 3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536쪽.

57.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11.4.

58.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앞의 글, 350-351쪽.

59. 전인철,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전략은 파산을 면치 못한다', 근로자 11호 (1990년), 85쪽.

60.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144호 (1993.6), 57-58쪽.

보고서」에 대해 북한이 맹비난한 데서도 잘 드러나는 바, '미국이 저들의 인권기준을 놓고 다른 나라들을 제멋대로 평가하면서 오만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참다운 인권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가관리와 사회정치생활에 자유롭게 참가할 뿐 아니라 경제와 문화생활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으로 벌어나가는 데'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는 인권이 고도로 존중되고 있고 오히려 '남의 인권문제에 함부로 끼여들기 좋아하는 미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흑심한 인권불모지, 인권유린지대'라고 주장하였다.<sup>61)</sup> 북한의 시각에서 바라본 인권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 3. 결론에 대신하여: 애북적 인권? 반복적 인권?

어떤 연유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인권은 소중한 것이고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 역시 예외가 될 수 없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적잖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에서이다. 그러나 분단상황이라는 우리의 특수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몇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 사실이다.

첫째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흑여라도 정치적 목적이나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그야말로 북한주민의 보편적 인권 역시 소중한 것이기에 그들의 인권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문제가 본래의 목적인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만에 하나 북한의 인권을 빌미로 하여 우리 사회에 반복의식과 냉전적 대결의식을 고조시키고 남북화해의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면서까지 북한을 목조르려는 시도는 원칙적으로 봉쇄되어 마땅하다.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인권을 내걸면서 속으로는 민족파괴적인 남북대결을 유지하려는 일부의 의도는 분명 인권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것이다. 겉으로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목놓아 외치면서 정작 식량난에 빠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는 눈을 부릅뜨고 반대하는 모순적 처사는 진정으로 북한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소말리아 사태와 고베 지진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면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만은 한사코 말리는 일부 수구언론과 냉전세력의 반복소동을 보면 그들이 제기하는 북한인권문제는 냉전주의적 대결논리를 되살리려는 정치적 의도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북한주민의 인권이 소중한다면 정작 기본적 생존권의 해결을 위한 대북 지원에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된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조건을 걸어 반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권은 명분일 뿐 사실은 남북대결을 고조시키려는 냉전논리의 정치적 술수에 다름아닌 것이다.

둘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철저히 객관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는 명백한 사실 이외에도 상당부분 과장과 왜곡 그리고 주관적 편견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체제에 대한 예단을 가진 채로 오로지 서구의 인권관점에서만 북한을 재단하는 것은 자칫 북한의 인권현실에 대해 필요이상의 부정적 평가를 내리게 만든다. 한 사회의 인권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밖의 관점과 함께 그들

61. 외무성 대변인, '미국은 남의 나라 인권간섭에 열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2000.3.1.

자신이 설명하고 주장하는 바의 안의 관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서방의 입장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맹공격하던 한 신문이 미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요구에 대해서는 한국의 현실과 조건을 무시한 지나친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은<sup>62)</sup> 객관적 균형성마저 상실한 이중잣대의 전형적 사례에 불과하다. 입북자의 북한에서의 기자회견 내용은 조작된 것이라고 쉽게 치부하면서 탈북자의 증언만을 토대로 북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분명 이중잣대이고 우리 정부가 우리의 인권현실을 공식발표하는 것에는 수긍하면서도 북한 정부가 외국의 인권탄압 우려에 대해 해명과 부인을 하는 것은 무조건 믿지 않으려는 태도 역시 이중잣대임에는 틀림없다. 물론 우리와 다른 북한체제의 폐쇄성을 감안하면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객관성을 상실한 채 이중잣대에만 익숙한 우리의 대북관점이 결과적으로는 근거없는 우리의 반복의식을 고쳐치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인권문제 역시 이런 관점에서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사회의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인권상황의 점진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식일 수 있다는 점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절대적 기준을 충족하는 인권 보장은 하루아침에 실현되지 않았고 또 그렇게 실현될 수도 없다. 서구의 경우에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고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문제 역시 반복의식만을 고취하고 냉전적 남북대결만을 강화하는 것으로서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이제는 북한체제의 안정과 사회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정권이 불안정하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국가안보와 인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보면<sup>63)</sup> 북한체제의 안정이 오히려 인권 향상의 조건이 될 수 있다.<sup>64)</sup>

이는 결국 북한인권의 향상을 위해서도 지금 시기 필요한 것은 남북간 평화와 화해와 협력의 증대이며 이를 통해 북한이 경제를 회생시키고 체제를 안정시켜 스스로 변화와 발전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시기 남북화해의 진작과 상호신뢰의 회복이 과거 냉전적 대결과 상호불신보다 정당한 방향인 것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제 반복적 관점의 인권이 아니라 애북적 관점의 인권이 필요한 때다.

62. 미국과 국가보안법, 조선일보, 1994년 2월 26일자 사설. 여기에서 조선일보는 '고전적 의미의 내정간섭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 나라의 관리가 다른 나라의 국내법에 관해 공개적으로 그 폐지를 운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국가보안법이 한국인권의 결정적인 커다란 장애요소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그가 진정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북한의 인권부터 먼저 거론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훈수까지 하고 있다.

63. Denny Roy, 'The Security-Human Rights Nexus in North Korea',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XI, No. 1 (Winter/Spring, 1997), pp. 1-19.

64. 동서 대결상황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인권향상을 이끌어낸 성공적 사례로 알려진 1975년의 헬싱키 협정의 경우도 인권문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인정과 안보충족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민족통일연구원 (1997), 38-40쪽.



# 적당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와 북측 식량지원<sup>1)</sup>

정미경(사단법인 한아봉사회 국제부장)

작성일 2000년 12월 30일

## 목 차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 II 국제인권의 구조와 식량지원구조
    - 1. 국제인권의 구조(The Int'l Human Rights System)
    - 2. 적당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와 굶주림에서 벗어날 권리(발전권)
    - 3. 국제 긴급 식량 지원
  - III. 경제난과 북한식량지원 현황
    - 1. 경제난의 원인 분석
    - 2. 식량지원의 필요성
    - 3. 직접 식량지원
    - 4. 간접 식량지원
    - 5. 국내의 지원 단체 현황
  - IV. 결론
- 도표  
참고도서

1980년대 말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인한 영향은 1990년대 초 동구권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패로 인한 빈곤과 정부의 재정결핍은 복지 정책을 진행시킬 수 없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련과 중국의 원조에 의존했던 경제활동이 원조의 중단으로 사회주의 위성국가였던 나라들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북측<sup>2)</su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하 북측이라고 표기함)도 사회주의 위성국가로서 원조를 받았으나, 원조의 중단과 서방세계와의 오랜 단절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북측의 경제난과 최근 몇 년간의 식량난의 근본적인 요소에는 구조적인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

1) 본 원고는 초고(first draft)로서 수정·보안이 필요하므로 복사나 인용하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명칭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통속적으로 남한·북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민족적인 정서에서의 호칭이며, 이를 극복하는 최소의 범위 내에서 북측·남측이라고 써주는 것을 예외로 하고 있다.

으며 또한 장기적인 농업정책의 실패를 주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사회주의 지원 국으로부터 원조가 급격히 감소한 후에 북측은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농업정책을 시도하였으나, 단선적이면서 획일화된 당의 농업 정책이 도리고 국토를 황폐화시키는데 커다란 구실을 하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사회에 북측의 빈곤 실태가 알려지게 되었으며, 인도주의적인 원칙에 의거한 국제식량기구(유엔 산하 기구:FAO, WFP와 비정부국제기구포함)의 식량지원이 전개되었다. 세계인권선언에는 '적당한 식량을 먹을 권리'<sup>3)</sup>가 있고, 또한 유엔인권위원회 가맹국들은 사람은 누구나 굶주림에서 벗어날 기본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다<sup>4)</sup>. 북측은 유엔인권위원회의 준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제규약에 의하여 한 국가로서 긴급 식량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세계식량기구(WFP)의 통계에 의하면 세계에서 긴급식량지원 받고 있는 나라 중에 방글라데시가 제1위이며 북측은 제2위에 해당된다<도표1><sup>5)</sup>. 최근 자료에 의하면 1995년 이래 올해의 수확량이 양호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식량이 채워진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발제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2장은 국제 인권 구조와 적당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고, 제3장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자료에 의거하여 북측의 식량지원 현황을 직·간접적인 국제기구의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논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 결론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지원의 필요와 미래지향적인 제안으로 이 발제를 마치고자 한다.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북측의 경제적 문제의 식량난은 하루 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이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북측이 1995년 국제사회에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구조적인 문제를 제시하기보다는 자연재해의 원인을 들고 있다. 경제난의 실질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1989년도 이후 양극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사회주의 선진국들의 원조 중단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3) 세계인권선언문 제25조 1항: 모든 사람은 충분한 음식, 의복, 주거, 의료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사회는 실업, 질병, 심신장애, 노령 등에 의해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의무를 지고 있다. 특히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규약) 제11조 제2항: 가맹국은 사람이 누구나 굶주림에서 벗어날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단독으로는 물론 국제 협력을 통해 다음을 이룩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식량의 생산·보존·분배의 방법을 개선한다. 개선의 방법으로는 기술적 및 과학적 지식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 영양 원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는 것, 천연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 또는 개혁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나. 식량의 수입국과 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수요와 관련하여 세계의 식량 공급품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5) W.F.P. and Global Food Aid Shipments by Country and Region 1996-1999.

수 있다. 90년도의 GNP 추계로 본 경제성장을 보면 -3.7%이었으며 98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외채 현황은 1989년 6억7천8백만불에서 1999년도에는 12억불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GNP는 1990년도 231억불에서 1999년도에는 158억불로 감소하였다. 일인당(GNI) 국민소득은 1989년도 1,146불에서 1999년도 714불로 감소하였다(도표2). 그러나 1999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6.2%로 증가하였는데, <도표2> 이는 식량지원 등 외부의 지원에 의한 성장이며, 내부의 변화에 의한 것은 아니다.

식량부족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 지형적인 농토의 부족, 두 번째는 농업 정책의 문제와 세 번째는 생산체제의 부적당함을 들 수 있다. 지형적으로 전 국토의 80% 이상이 산지이고, 위도와 해발 고도가 남측보다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실제 농토의 부족은 당연한 현상이다. 농업정책의 부재는 주체 농법에 의한 무리하게 다락밭 건설의 시도와 밀식재배를 들 수 있다. 사회주의 선진국의 원조와 수입이 중단된 이후 북측 정부는 다락밭 건설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1990년대에는 모든 국토가 벌거숭이가 되어버렸으며, 이로 인해 자연재해를 자연스럽게 유발하였다. 또한 토양과 토질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인 재배 방식을 강요하고, 집단농장식 생산체제로 인한 노동 생산성에 대한 동기부여의 결여이다. 벌거숭이 산은 자연적으로 수분저장 구조를 파괴하여, 다락밭에 필요한 물을 공급할 저수지의 건조현상으로 나타나고, 이는 다시 파종시기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지 못함으로 파종시기가 늦어지고 곧 수확량이 절반이상으로 감소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식량 부족량도 1990년도 이전에 매년 150-200만 톤이었고 대부분 사회주의 선진국에서 원조와 수입에 의존하였는데, 사회주의 선진국의 붕괴로 인한 원조의 중단과 외채상환 능력의 하락으로 인한 신용 경색의 원인으로 수출입 교역이 중단되고, 반복적인 자연재해로 인하여 식량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식량 부족 현상을 살펴보면 1995/96 180만톤, 1996/97 230만톤, 1997/98 190만톤, 1998/99 140만톤, 1999/00 130만톤으로 평균 부족량은 174만톤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0)</sup>.

식량부족과 영양 상태의 관계성은 필연적인 문제로 적당한 양의 식량이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에너지와 영양소 섭취가 결핍되고 이로 인한 영유아 사망률의 증가, 아동 성장 지연, 인지 기능 저하

6) 국정원, 한국은행 북한 경제 동향  
7) 한국은행 북한 GNP 추계 자료; 한국은행의 북한 GNP 추계방식의 문제점은 북측에서는 계획경제체제이므로 시장논리에 의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아 한국은행의 북측의 GNP를 추계할 때 200여 북측 주요품목의 생산실적에 남측 가격과 부가가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측 경상 GNP가 남측 가격과 환율변동에 따라 증감하는 문제가 있다.  
8) 화전농업방식으로 산을 개간하여 농업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북측에는 연료 부족으로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벌채가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한 환경파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있다.  
9) 1인 하루 배급량을 607g으로 계산할 때 성인기준 영양권장량인 2,100kcal에 해당되는 것으로 1998/99년도의 생산량 332만톤을 감안할 때의 추정치.  
10) Robert Bartton, 북한 실정보고회, 자료, www.hanah.or.kr 자료실

로 인한 학습능력저하, 만성 대사성 질환에 대한 유병률과 사망률 증가 그리고 노동 생산성의 감소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악순환을 들 수 있다.

1994년 이후 4년 동안의 사망률이 2%로 증가 된 것으로 추정되고, 연간 40-50만명에 해당되며, 우리민족돕기불교운동본부가 1995년8월부터 1998년 5월까지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수가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하여서 영유아, 아동, 노인 사망자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식량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 현상은 세계인권선언 및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적당한 식량을 공급할 기본권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감안할 때 적당한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모든 인류사회의 공동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 2. 연구의 방법과 한계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경제적인 상황을 생산과 공급의 법칙에 의하여 통계치를 내고 생산량이 결정된다. 또한 이러한 통계 결과를 통해서 한 사회 혹은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측정하여 정책을 펼친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는 생산과 공급의 법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여 공급하고, 공급량이 부족할 때에는 국민들에게 인내심을 요구하는 체제이다. 국민의 진정한 필요를 공급하는 체제가 아니고, 일정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다른 양상의 방법론을 개발하지 않으면 연구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연구 방식에 익숙한 연구자들에게는 지역 조사 및 환경 조사를 통해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이 자료를 근거로 한 측정치를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구가가 자유롭게 왕래하고 조사할 수 있는 조건이 북측에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할 때, 이 연구의 한계가 있으며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북측에 식량지원 활동을 위해 현지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 및 모니터 보고서 그리고 현황 보고서를 종합하여 이 연구를 진행 시켰다. 또한 장기간 동안 현장에서 활동한 국제기구 활동가들의 인터뷰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자료제공 단체와 개인 그리고 자료의 한계에 대하여는 주석을 통해서 명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 관한 적절한 연구 방법론과 새로운 분석의 틀이 부재한 가운데 임의의 서술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계 자료는 여러 단체에 의하여 임의로 만들어진 측정치이다. 한국은행, 국가정보원, 통일부, 미국의 CIA, 세계식량계획기구, 세계농업식량기구, 세계아동기금, 비정부기구와 민간시민단체 등 이들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자료가 모두 일률적이지 못하고, 조사 방법에 있어서 북측 정부가 개방한 지역 내에서의 활동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양을 중심으로한 서부지역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고 있는 위기의 지역은 평양 중심의 서부 지역 외의 지역이 더 심각한 실정이다.<sup>11)</sup>

11) 로버트 바튼(Robert Bartton), 북한 실정보고회, 기독교보 2001. 1, 12, 연합공보 2001, 1, 20

이 연구에서도 위 기구들의 2차 자료들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가에 의하여 최대한으로 그 한계를 벗어나려고 노력은 하였다는 것을 명기한다.

## II 국제인권의 구조와 식량지원구조

### 1. 국제인권의 구조(The Int'l Human Rights System)

1996년 11월 13일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과 영양을 공급받음으로써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세계에는 800만명 가량의 저개발국 국민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유엔은 지난 1948년도 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 보편적인 원칙에 의하여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였다. 또한 세계인권선언과 두 개의 국제협약 즉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을 1966년에 공포하였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의 세 가지 요소는 다시 시민과 정치적 권리에 연계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적 권리에겐 생존권에 대한 기준을 세계인권선언 제25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규약)제11조,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12)에 제시하고 있다. 이 권리에 의하여 모든 인간은 기본적인 생존 수준 즉 적당한 식량, 영양 공급, 의복, 주택 그리고 필요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필요한 기구를 조직하여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메카니즘 속에서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인 식량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 2. 적당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와 굶주림에서 벗어날 권리(발전권)

세계인권선언 제25조 1항,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대한 국제협약 제11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 27조에 의거하여 모든 사람은 적당한 식량과 영양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한

1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아도양육비의 회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굶주림(기아)으로부터 벗어날 권리가 있다. 적당한 식량과 영양의 공급은 모든 경제·사회적 권리의 기본이며 모든 사람이 인류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또한 인간 권리에 대한 원칙으로 향하는 인도자이기도 하다.

적당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에 대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적당한 양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유효한) 식량이라는 것은 국가, 지역 시장 그리고 가정에서 취득할 수 있는 일반적이며, 문화적으로 한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의미한다. 또한 유효한 식량의 공급은 필수 영양 즉 양적인 에너지와 질적인 영양요소 그리고 비타민과 기타 요소 등 미시적인 것과 적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식량의 안전성(유독한 요소와 오염된 것으로부터의 자유 함) 그리고 좋은 질(맛과 섬유성)을 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이 전세계에서 각국의 국내법과 행정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법적, 국가의 정치·문화적으로 보편화하기 위하여 전지구적으로 이 일을 실행하고 모니터 할 목적으로 필요한 기구를 설립하였다. 세계농업식량기구와 이와 유사한 기구들의 설립은 적당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한 국가가 국제 사회의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에 가입된 국가는 본 규약 제2조13)에 명시된 의무를 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되어 있다.

세계식량계획기구(World Food Program)은 유엔산하의 기구로서 국제적인 기아퇴치 사업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기구로서 긴급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전 세계는 전쟁, 내전으로 인하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부족 및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처해 있으며, 정신적 육체적인 억압을 받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 파괴와 자연재해로 인한 생존권의 침해로 인한 긴급 사태의 발생은 전지구적인 책임의 문제가 되었고, 세계식량계획기구가 전세계적으로 개발과 인도주의적인 긴급 구호에 사용한 비용을 비교하여 보면 긴급 구호 비용이 1970년대 33,877,000불에서 1997년 703,366,000불로 약 20배가량이 증가한 추세이고, 반면 개발비용은 감소하였다. 이를 상호 비교하여 보았을 때 긴급 구호비로 지출된 것이 1971년도 전체비용의 12%이었는데 1997년에는 68%를 차지하고 있다. <도표 3 - 4> 인도주의적인 긴급구호비의 증가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유하고 있으나, 대체로 전지구적인 문제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세계식량계획기구의 1인 하루 식량 권고량은 600 -800g 이고, 유엔의 최소영양권장량(생존가능한 계선)은 458g의 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준하여 이디오피아, 르완다 난민 최저 배급량은 600g으로

1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제2조 : 1) 각 가맹국은 자기 나라 가용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단독으로 또는 국제적인 원조와 협력, 특히 경제적 및 기술적인 원조와 협력을 통해, 입법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2) 가맹국은 이 협약에서 선포된 권리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가문, 기타의 신분에 기인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행사될 것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개발도상국은 인권 및 자국경제를 적절하게 고려하는 가운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경제적 권리를 비자국민에게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다

하고 있다.

아동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제27조에는 아동이 적당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를 말하고 있다. 식량부족과 영양실조로 인한 영유아의 사망률 증가와 성장 감소현상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공동의 책임이 있으며 유엔 아동기금은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 3. 국제 긴급 식량 지원

국제 긴급 식량 지원이라는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그 외의 국제규약에 의거하여 실행되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의미한다. 인도주의적인 개입은 보호와 원조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전쟁이나 내전 그리고 자연재해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모든 억압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인도주의적 개입에서의 보호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인도주의적인 개입이 순수한 인간의 생존과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인도주의적인 개입을 사용하여 왔고, 특히 보호라는 명목을 많이 남용하였다. 인도주의적인 원조는 여기에서 물질적인 원조를 통하여 생존을 연장시키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행위로 한정하고자 한다<sup>14)</sup>.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인 개입에서의 식량지원, 의료, 주택 및 의복 지원 및 농업개발 지원 등은 원조 분야에 해당하며, 식량지원은 생존을 연장하는 1차원적인 원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긴급성을 요하는 활동 중의 하나이다. 국제 긴급 식량지원의 형태는 유엔 산하의 기구, 각국 정부의 인도주의적인 지원 그리고 비정부기구에 의한 긴급 지원으로 나누고 있다.

## III. 북한식량지원 현황

### 1. 경제난의 원인 분석

위에서 여러 차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경제난과 식량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는 1989년 이후에 모두 붕괴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대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문제이다. 즉 계획 경제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국가, 예를 들어 중국 그리고 그 위성국가였던 베트남과 라오스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들 국가는 중국이 1978년말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할 때 함께 개혁·개방에 동참하는데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과 베트남의 잠재적인 영향 하에 있었던, 캄보디아와 인접하였던 라오스도 1980년대 중반부터 개혁·개방

14) 원조나 지원을 사회 발전의 형태에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식량 지원은 1차적인 단계로 단순히 생존을 연장하기 위한 지원을 의미한다.

정책으로 대외 투자 유치등 적극적인 시장경제활동에 참여하였다. 북측은 비록 지역적으로 중국에 인접해 있지만, 구 소련의 체제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즉 구 소련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를 경험하면서도 양극 체제라는 정치적·군사적인 대립의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 경제개혁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런 소련의 위성국가로서 북측도 중공업 우선정책이라는 경제적인 구조로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는 북측이 무기 수출국가로 알려진 것으로 이미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무기 수출로 얻은 외화로 농산물을 수입하였고, 대외원조로 국민들의 식생활을 유지하였다. 북측의 폐쇄성과 서구 선진국들이 사회주의 국가에 가했던 경제체제 조치는 북측으로 하여금 쉽게 세계의 변화 속으로 뛰어들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 및 근접국가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경제난의 근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중국의 변화는 1978년 말 사회주의 시장경제 즉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개방 정책을 계획하였다. 이는 1970년대 초반까지 진행했던 중공업 우선 정책이 다른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분배의 불균형적인 한계와 또한 사회보장 제도로 인한 노동 생산성의 저하 그리고 비용부담이 높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한 가운데 시도되었다. 개혁·개방 정책은 농촌의 가족 및 집단농장제도의 개혁부터 시작하여서 산업분야로 확대하였고, 1990년대에는 외자투자유치 및 대외시장개방까지 성공적인 개혁 개방을 이루었다. 중국은 1980년부터 1991년간에 국민총생산량과 1인당 국민 총생산이 9.7% 와 7.8%로 각각 성장률을 가져왔고, 농업, 공업 그리고 서비스업의 연평균 성장율이 각각 5.7%, 11% 그리고 11.2%로 성장하여<sup>15)</sup>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성공을 알려 주었다.

베트남의 1980년대 초 시도한 도이모이 정책도 중국의 개방·개혁 정책의 영향 하에 이루어졌으며 1987년도 이후 사회주의 선진국가의 원조가 끊기면서 대외 외자 유치 등의 지구책을 실시하였다. 중국이 신속하게 변화를 시도하는 동안 구 소련의 경제가 서서히 붕괴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었고, 1990년대 초에 결국 총체적인 붕괴를 하였다.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개방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 북측은 여전히 남측과의 정치적·군사적인 대치에 소비적인 활동에만 치우쳐 있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1998년까지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유지해야 하는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사회주의 체제의 건설에 동기부여가 되었던 강성대국이나 적화통일을 쉽게 던져 버릴 수 없었던 북측은 변화의 시기를 놓치고 말았으며, 1989년 이후 대외 원조의 중단은 경제난으로 다가왔다.

위에서 보았듯이 결국 북측의 경제난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변화와 주변국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하지 못한 결과이다.

### 2. 식량지원의 필요성

역사적으로 북측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로서, 기초사회보장제도와 구조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으며, 보편적이고 자유롭게 22만 5천명의 인구에게 식량이 분배소를 통해서 제공되

15)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238-241, 1993

고 있었다<sup>16)</sup>. 전통적인 경제 구조의 해체(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국민총생산(GDP)의 감소와 1990년대 중반 자연재해(홍수와 가뭄)로 인한 질적, 양적인 영향은 기초사회보장제도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사회적인 필요의 공급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개발과 발전을 위한 기술력, 인력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지식의 결핍까지 동반하게 됨으로써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기능의 마비는 사회 전체에 기본적인 생존에 위협을 가져 왔다.

식량부족 현상은 북측이 남측보다 지형적으로 높고, 파종시기가 짧아 농업 생산량이 높지 않은 원인으로 1990년대 이전부터 지속된 것으로 보며, 그 부족분은 대부분 사회주의 선진국들(중국, 구 소련)의 원조와 수입에 의존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sup>17)</sup>. 1990년 이후 사회주의 선진국의 원조 중단 그리고 수입 중단과 더불어 농업생산량의 감소는 기본적으로 부족분에 더한 식량 고갈 현상을 가지고 왔다. 농업생산량의 감소 원인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요인을 들 수가 있는데, 내적인 요인으로는 농업정책의 부재와 노동 생산 의욕의 저하로 볼 수 있다. 농업정책의 실패로는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다락밭 정책의 결정적인 실패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장기적인 환경 파괴로 인하여 재해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노동 생산 의욕의 저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가져오는 고질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에서 농민들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보상보다는 집단적인 보상이 우선됨으로 인하여 노동 생산성의 저조현상을 가져오는 것이다.

외적인 요인으로 자연재해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북측으로 하여금 세계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한 것이다. 1995년 8월 - 9월의 수해로 인해 전체 228개 시·군에서 145개 시·군이 피해를 입었으며 36만 ha의 경작지가 피해를 입었고, 1996년에도 117개 시·군에서 피해가 발생하였고 35만 8천 ha의 경작지가 유실되었다. 1997년에는 가뭄으로 인하여 파종의 결정적인 시기에 물 부족으로 농업생산량에 영향을 미쳤으며, 1999년과 2000년에도 태풍과 홍수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지형적으로 일년에 1모작만을 하고 있는데 파종시기를 놓치게 되어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북측은 최근 식량부족으로 인한 에너지와 영양 결핍현상이 표면화되면서 영유아 사망률 및 사망률이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영양 결핍으로 인한 성장부진 현상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유엔 아동기금의 보고에 의하면 북측의 아동사망률은 1960년대 1,000명당 85명이 사망하였고, 1990년 9.2명이었는데 1998년에는 23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은 1990년 1,000명당 30명이었는데 1996년 55명으로 증가하였다<sup>18)</sup>. 대부분 사망의 원인은 내분비·영양 및 대사 질환,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이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었다. 성장장애는 1998년 22%의 영아가 2.5Kg 이하의 체중으로 태어났고, 7살 이하의 62%의 아동이 성장장애와 16%가 쇠약한 상태이다<sup>19)</sup>. 영양상태가 불량해서 오는 질병에 대한 유병률 특히 감염성 질환에 대한 이환율과 사망률이 증가 현상이 나타나

16) 유엔 아동기금 “母子를 위한 인도주의적 요청” 보고서, 2001년 1월 - 12월, pp.1

17) Marcus Noland(미국, 국제경제연구소), 북한의 기근 해소를 위한 제안, “구소련이 북한 원조를 중단한 이후, 중국은 북한에 50만 톤의 식량을 무상으로 원조하였으며, 추가적으로 20-30만 톤의 식량을 계속 지원해 주었다.”, 1998

18) UNICEF, A Humanitarian Appeal for Children and Women, Jan. - Dec. 2001, p.1.

19) See, UNICEF, 2001 report, p.2

며, 성장을 위한 영양 요구량이 높은 영유아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외에 결핵 환자의 증가, 소아마비, 홍역, 장티푸스, 간염 등 다른 감염성 질환에도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위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하여 볼 때, 북측의 식량지원은 인도주의적인 원조와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지원이기도 하다. 인간이 평등하게 살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한 인간의 권리는 곧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사회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아동의 조기 사망 및 유병률의 증가는 미래에 전체 사회가 지불해야 할 경제·사회적 대가가 높을 뿐 아니라, 한 나라의 장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더욱이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 후에 지불해야 할 사회적인 대가를 미리 지불하는 것으로서 북측의 식량지원이 필요하다. 인도주의적인 원조에 정치적인 역학 관계를 함유하고 있다면, 인도주의적인 원조가 될 수가 없다. 현재는 북측이 배고파서 우는 아이와 같은 형편이고, 전지구적인 사회의 변화에 당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수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 2. 직접(긴급) 식량지원

여기에서 논하고 있는 직접적인 식량지원이라는 것은 생명 연장을 위한 에너지와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시간적으로 긴급한 지원을 의미한다. 1995년 북측의 긴급지원요청을 받은 남측과 국제사회는 식량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통일원 인도지원국의 한국 정부의 분야별 지원 실적 통계자료에 의하면 일반 구호, 농업복구, 보건 의료로 구분하고 일반 구호내에 식량 지원은 95년 6월 전체지원 23,225만불 중에 식량 지원이 23,200만불을 차지하고 있으며<도표5>, 민간차원의 식량지원도 96년 155만불, 97년2,056만불, 98년2,085만불(비료, 비닐 포함), 99년1,863만불(의료, 비료포함) 그리고 2000년에 3,513만불(의료포함)로 증가하고 있다<도표6>. 국제사회의 지원도 1995년에는 식량지원을 우선 순위로 하였다.<도표7>

국제사회의 지원은 유엔 산하기구 및 각국 정부 그리고 민간 단체들의 지원이 있었으며, 1995년에서 1997년까지는 대부분이 직접적인 식량지원이었다. 국제사회의 식량지원과 동시에 사회 조사를 실시하여 영양 상태 및 농업생산량 등의 통계화 하여 필요한 식량과 구호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초기 2년-3년<sup>20)</sup>(2차 지원)은 직접 식량지원에 집중 투자하고 부분적인 의료와 의복 등이 지원되고, 제3년 차인 1998년부터는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이 긴급구호사업에서 개발 사업으로의 전환기를 맞이하며, 식량과 더불어 필수품 및 예방 치료를 위한 의료품이 식량과 더불어 지원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 분야에 지원이 시작되었다.

식량의 직접지원은 비록 일정기간 지속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응급조처에 불과하다. 현재 북측은 자연 환경의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가 식량이 부족으로 환경복구 사업을 위해 심겨진 나무를 성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채되고 이렇게 지속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직접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제 사회는 3년간의 지원을 마쳤고, 북측의 구조적인 문제<sup>21)</sup>와 기타

20) 1년 기한을 1차 지원으로 본다.

21) Robert Barton(전Mercy Crop 현장책임자) 인터뷰 자료: “폐쇄사회의 특징으로 지원 단체들의 활동 범위를 제

원인을 들어서 식량지원에 참여하던 민간단체와 정부지원 단체들이 철수한 상태이다. 단체들의 식량 지원분이 급감함으로써 식량 부족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도표8> 부족한 식량에 대한 직접지원의 몫은 남측과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담당하게 되었는데, 2000/01에 필요한 식량을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50만와 60만톤을 대출형식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세계식량계획기구와 세계농업식량기구를 통한 지원 및 민간단체들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양은 예년과 같이 부족액을 초과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지원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응급처치 효과로서 특히 식량난으로 인한 어린이 영양부족으로 인한 성장장애를 방지할 수 있으며, 면역층을 강화하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즉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성공적인 기회를 말하는 것이다. 직접지원의 한계는 임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민족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조에 의존하다보면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는 자립적인 의지를 자연스럽게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다. 즉 “거저 근성”을 키우는 결과는 노동 생산성의 저해를 가져온다. 이는 세계적인 지원 단체들의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고민 중에 는, 적당한 지원의 수준을 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3년간의 응급처치 기간이 끝나면 전면적인 개발의 단계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이 개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비정부기구와 민간단체의 역할이다.

3. 간접 식량지원

간접지원 방식은 개발 중심의 지원을 의미한다. 직접 지원시기에 실행되는 영양 상태, 식량생산량과 부족량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하여 근본적인 문제의 접근 방식으로 필요한 분야의 개발이다. 북측은 198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 선진국의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그 중에서 다락밭(화전)개간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연 환경의 파괴를 가져왔다. 즉 산의 나무를 벌목하여 연료로 사용하고, 밭을 개간하여 자체 식량 수급 정책을 폈다. 그러나 나무를 잃은 많은 산들은 강수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므로써 여름철에 소량의 비에도 쉽게 토양이 밀려 내려와 농토를 유실하는 피해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농업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식량문제와 함께 동반하고 있는 문제로는 에너지, 농업 생산, 공공위생과 의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여성 및 사회적 소외 약자<sup>22)</sup>의 문제 등, 기타 간접자본시설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지형적으로 위도가 높아 겨울철의 난방과 에너지 문제는 환경 파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기초 산업 시설 작동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의 문제도 심각하여 이 분야의 지원이 심각한 상태이다. 그리고 식량 수급에서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간접지원은 장기적인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직접 식량지원과 동시에

13) 한하였고, 적당하고 필요한 평가를 할 수 없었으며, 지원지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북측 정부와 협력자가 지나치게 주체사상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원 지역을 임의로 선택하여 방문할 수 없으면, 영양공급 실태와 식량 지원량에 필요한 자료 수집이 불가능하다”

22) 국제기구의 식량지원은 아동, 청소년, 여성을 우선순위로 지원하고, 노년층은 여기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이루어져야할 지원이다. 간접지원은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는 경제·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으로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1995년 6월부터 97년 12월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식량과 의료 분야의 지원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1997년 이후에는 농업개발과 의료 분야 그리고 교육 및 기타 간접 자본시설의 투자 및 지원이 급증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기구와 민간단체 지원의 감소 공백, 옥수수 개량 사업, 수경재배 사업 등과 더불어 비정부기구들의 창고 및 저장시설 복구, 저수지 복구사업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무심기 사업은 이미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귀에 익숙한 것들이다.

현장 활동가들의 증언에 의하면<sup>23)</sup>, 에너지 문제가 최근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평양부근이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전기를 공급받고 있으며, 이는 또한 특수 계층에 한해서 공급되는 것이고, 일반국민들에게는 거의 공급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산업시설도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폐쇄 상태이다. 산업시설의 폐쇄는 기초 공산품의 생산이 중단되었고, 공장 노동자들은 실업 등의 도미노 현상으로 인한 궁핍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 난방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은 벌목을 하여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어서 환경파괴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식량 문제와 에너지 문제 및 기타 역학관계에 있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은 개발로서 비정부기구나 민간단체 역할이라면 에너지 문제와 같은 대규모의 집중 투자가 필요하며 각국 정부나, 아시아개발은행 혹은 세계은행이 개입하여야 해결 될 수 있는 것이다. 초기 4자 회담 당시에도 경수로 개발은 이러한 에너지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농업용수의 공급이었으나, 경수로 사업이 정치적인 원인에 의하여 지원 중단으로 난항을 겪고 있고, 각국 정부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들은 정치적인 협상이 전제되어 있어 많은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

4. 국내의 지원 단체 현황

북측에 식량을 직접 지원하고 있거나 참여했던 단체에는 유엔 기구와 국제적십자사는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비정부기구(Americares, 유진벨, 카리타스, Mercy Corps, Interaction, 조총련, ADRA, CARE, MSF, German Agro Action, NRC, VIVA 등), 개별 국가 지원은 1995년 9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일본, 중국, 대만, 미국, EU, 스위스, 이태리, 베트남, 러시아. 1998년에 중국, EU, 스위스,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호주, 러시아, 1999년에는 EU, 미국, 스위스, 중국 등이다. <도표9>

국내지원은 정부 지원과 민간 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민간 지원은 다시 독자 창구와 한국적십자사 창구가 있다. 독자 창구는 현재 13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한국적십자사 창구를 이용하여 지원하는 단체는 13차에 걸쳐 16개 단체가 참여하였다.<도표10>

23) 북측에 장기체류하면서 활동한 활동가들의 인터뷰 자료에 근거함